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2018. 9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2018. 9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2018.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이동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승래 한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명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8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유 찬

요 약

I. 심층평가의 개요

제도의 배경

- 심층평가 대상인 3개 특례제도(이하 ‘평가대상 특례제도’)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분야 지원의 일환으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립된 조합임
 - 농업회사법인은 농촌지역의 생산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설립됨
 - 결국 평가대상 특례제도는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세금감면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어민의 후생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한편, 평가대상 특례제도를 통해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재무 투명성 강화의 효과도 기대함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를 상당부분 인정함으로써 비농업인들의 농업회사 투자를 유도함
 -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을 통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업계에서 보다 투명한 회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함

제도 운용 현황

- 평가대상 특례제도는 각각 해당 법인의 법인세, 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어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평가대상 특례제도들은 모두 20년 이상 유지되었으며, 그동안 수차례 감면범위의 조정과 일몰연장을 거쳐 지금에 이룸

- 영농조합법인(1989년)과 농업회사법인(1995년)에 대한 특례제도가 먼저 도입되었고, 그 후 영어조합법인(1997년)에 대해서도 특례제도가 도입됨
- 3개 평가대상 특례제도 가운데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3개 평가대상 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순서임
 -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최근 10년('17, '18년 전망치 포함) 평균 조세지출 규모는 261억원 수준이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24억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109억원가량임
- 평가대상 특례제도 각각의 조세지출액은 300억원 미만이나 합산 시에는 500억원 내외의 규모임
 -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5년부터는 45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세목별로 조세지출 규모를 나누어 보면 평균적으로 법인세가 80% 이상 차지하고, 소득세는 2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쟁점과 평가내용

- 평가대상 특례제도의 도입목적은 고려할 때 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쟁점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 제도의 정책목적상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사항은 평가대상 특례제도가 개인사업자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유인을 가지는가 하는 사항임
 - 다음으로, 평가대상 특례제도가 궁극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소득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임
- 이 외에도 평가대상 특례제도 간 과세 형평성도 주된 논의대상임

-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감면수준이 다른 것에 대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사이의 과세 형평성이 제기되어 왔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허용한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특례 제도가 농업인이나 농업에 도움이 되기보다 비농업인의 감세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
- 평가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개 분야로 구성됨
- 제도 현황과악 및 쟁점 정리
 - 제도의 타당성 분석
 - 제도의 효과성 분석
 - 향후 정책방향

II. 해외 유사제도 운용 사례

- 각국에서 이러한 다양한 법적 형태들이 농업경영체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는 농업구조, 사회주의체제 경험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르고, 이때 조세제도는 농업경영자들이 어떠한 법적 형태를 선택하는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 EU 국가들의 농업경영체 중 법인의 점유비율은 나라별로 차이가 크지만 평균농지규모가 클수록 법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경영체 중 법인의 비율에 비해서 농용지에서 법인이 점유하는 비중이 높음
- 즉, 법인경영체들은 자연인 경영체에 비해서 그 규모가 큼
- EU 국가들을 볼 때, 농업경영이 대규모화 되는 것과 농업경영체 중 법인 형태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 그러므로 법인 형태의 농업경영체가 성립하고 유지되는 데에 제도적 장애를 없애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도 경영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확대를 꾀하는 농업생산자들이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임

일본

-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법인경영체 숫자를 5만개로 증가시킨다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법인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
 - 각종 세제, 금융상의 혜택뿐 아니라 ‘농업경영력향상지원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법인화를 촉진하고 있음(2017년 총예산 6억 6,800만엔)
 -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법인화를 통해서 경영관리를 고도화하고, 경영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음
 - 법인화 추진체제 정비, 법인화 경비지원, 농업경영 향상촉진 등의 사업을 행함

- 농사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특례와 농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를 제공함
 - 법인세 특례: 조합원에 대한 종사분량배분(從事分量配分)을 손비(損費)처리함
 - 농용지구역(農用地区域) 내의 농지를 지역 내의 의욕이 있는 농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에서 특별공제를 인정해 줌

독일

- 독일의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 분포를 보면 동서독 간에 차이가 확연함
 - 동독지역에서는 구 사회주의의 유산으로 대형경영체들이 일반적인 가운데, 개별경영체의 숫자가 가장 많지만 농용지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며, 반면 인적회사와 사법상(私法上)의 법인의 숫자상 비중이 각각 13~15% 정도에 달하고, 특히 후자가 농용지의 50%를 점하고 있음
 - 서독지역에서는 개별경영체의 숫자와 농용지 점유율이 매우 높지만, 인적회사가 경영체 중 9%, 농용지 중 17%를 점하여, 평균적 경지면적이 개별경영체의 두 배임

- 독일에서는 농업관련 조합, 회사 등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로 법인세 및 영업세 특례가 있음
 - 농림업경영체에 대해서 특정 서비스만을 행하는 협동조합(Erwerbs-und Wirtschaftsgenossenschaft)은 법인세를 면제받음(「법인세법」 제5조 1. 14항)

- 농업 또는 임업생산 활동만을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농업생산 생산협업체 (Produktionszusammenschluss)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설립 당해 연도와 그 후 9년 동안 연간 15,0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음(동법 제25조)
- 농림업 경영체에 대한 서비스, 조합원이 생산한 농림산품을 가공 및 판매(Verwertung) 하는 일에 집중하는 협동조합은 영업세를 면제받음(영업세법 제5조 1. 14항)
 - 인적회사(GbR, KG, OHG) 및 협동조합은 공동 축산(gemeinschaftliche Tierhaltung)을 하는 경우에 영업세를 면제받음(동법 제3조)
 - 농업 또는 임업생산 활동만을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농용지나 농용지의 이용에 필요한 건물을 양도한(überlassen) 경우에, 영업세를 면제받음(동법 제3조)

영국

- 영국의 농업경영체 규모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크지만, 법적 형태 중 법인의 비율은 2016년 기준 3% 수준이며 대부분의 경영체는 사적 파트너십 형태로 조직되어 있음
 - 전체 경영체 숫자가 2005년 28만 6천개에서 2016년 18만 5천개로 감소하는 가운데 법인의 숫자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서 전체 경영체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4%에 비해서 2016년 2.97%로 감소하였음
 - 법인은 농용지, 생산액, 고용자 등 측면에서 개인보다 크지만, 특히 농용지가 2016년 기준으로 개인경영체에 비해서 3배 이상으로 큼
 - 영국은 생산요소 부존 면에서 법인과 개인의 격차가 독일이나 일본만큼 크지는 않지만, 역시 토지집약도가 높은 분야에서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에서는 농어업 관련 법인에 대한 별도의 특례제도는 찾지 못하였음
 - 농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농업생산자들에게 중요한 제도로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가 있음
 - 농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으로 다년간에 걸친 소득 균분(averaging relief) 과세가 있으나 이는 법인에 대한 별도의 혜택은 아님

프랑스

- 프랑스의 경우, 2015년도 매출액 기준 전 세계 상위 협동조합 10개 중 4개가 프랑스 기관일 정도로 협동조합이 발달한 국가임
 - 2016년 기준 약 22,500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2,750만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고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프랑스 전체 근로자의 약 5.5%에 해당함
 - 여기에서 언급하는 협동조합은 농어업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님

- 협동조합이 벌어들인 수익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협동조합이 개인 회사의 형태인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의 형태인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를 면제함

- 협동조합에 투자한 자에 대한 세제혜택 중 일부만이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프랑스 세법 중 유동자산의 소득에 대한 면세 관련 항목에서 농업 관련 상호신용기관과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 지분에 투자한 금액 자체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특례만을 조세지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한편, 농업 관련 상호신용기관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채권 또는 지분의 투자를 통해 얻게 된 자본소득금액은 과세소득 산정 시 산입하지 않음
 - 또한, 농민이 관련 협동조합에서 다년생인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구입한 경우 해당액에 대하여 연간 소득공제 한도 27,000유로 내에서 5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우리와 같이 소득세법상 작물재배를 비과세로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 형태를 취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비법인 농업경영체에 비해서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별도의 특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그러나 각국의 일반 경제정책 또는 농업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농업법인 또는 농업관련 협동조합에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Ⅲ. 타당성 평가

정부 개입의 정당성

- 농어업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와 그에 따른 구조적인 노동공급 부족으로 해당 산업의 저생산 구조가 고착화됨
 -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구조적인 노동공급 부족, 저생산성 구조가 농어촌 지역 생산기반 구조의 일반적인 특성임
 - 인구 감소가 인당 생산면적의 확대로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소규모 영세농어업 방식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현대식 장비를 이용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커서 산업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여건임

- 시장 인프라(market infrastructure)의 미성숙으로 인해 시장의 불비성, 즉 시장 불완전성(imperfect market)이 존재함
 - 전근대적인 소규모 농어업 생산·유통구조의 성숙도 미흡 및 선진화 부진
 - 복잡한 유통 구조와 경로 등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로 채널이 미성숙되어 농어촌 지역발전이 미흡한 실정

- 또한, 농어업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결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경로 채널 미성숙의 배경에는 말단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의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성과 정보력의 차이 등이 존재함
 - 생산자의 유통 경험이나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여 이를 활용한 유통단계의 높은 마진이 지속됨
 -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가 모두 사회적으로 극대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종합해 볼 때, 농어업부문은 현재 ‘시장의 실패’ 영역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며, ‘시장의 실패’ 현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부 개입을 통한 ‘시장의 실패’ 해소가 정당화된다고 판단됨
- 이런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현대화를 지원하는 정부 개입(촉매제, 또는 조세지원 등)이 필요함

지원수단의 적절성

- 조세특례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지원정책으로 규제정책에 비해 비효율성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됨
-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지원정책)을 크게 경제적 유인과 규제로 구분할 경우, 조세특례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지원정책에 해당
 - 조세특례제도는 정책대상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제약조건을 조정하여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대상자들이 행태를 변화하도록 경제적 유인 제공
 - 한편, 규제정책에는 인허가 제도나 쿼터제, 배분·배급제 등이 있으며, 자원배분의 원칙(한계효용=한계비용)이 실제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초래

- 비농어가 또는 비농·비어부문 법인들보다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농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실효세부담률이 낮아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농어촌과 비농어촌 모두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동일한 환경하에서만 성립하는 논리로 볼 수 있음

- 조세특례제도는 세금을 납부할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많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한계기업인 실정을 감안할 때, 농어업인 입장에서는 조세지출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이 더 절박한 상황
- 농업법인은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다양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2016년 신고기준 법인세 감면을 신청한 농어업법인은 영농조합 3,221개, 농업회사 1,179개, 영어조합 472개로 영업이익이 난 법인 중 영농조합은 69.8%, 농업회사는 33.9%만이 해당됨

지원규모의 적정성

- 농업인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 규모의 경제를 위한 법인전환을 유도하려면 농어민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 부담이 최소한 불변하거나 개인소득세 수준 이하이어야 전환유인이 존재함(수평적 과세형평)
 - 이미 개인의 농·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있으므로 법인도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비과세혜택이 보장되어야 함(조세상의 무차별)
 - 법인전환에 의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크다면 개인소득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법인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수도 있음

- 수평적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볼 때,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및 부업소득에 대한 감면기준이 개인보다 낮은 수준
 - 기타 작물재배업소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이나 영농조합에서는 조합원 1인당 수입금액 6억원까지만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도 개인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지만, 영농조합에서는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 그러나 평균의 관점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도가 무조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현행 조세특례제도상의 영농조합법인의 감면한도가 수입이 동질적인 농업인들에게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한도보다 더 불리하지만 이질적인 농업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감면한도 기준 자체가 달라 개인사업자나 영농조합법인과 직접비교는 곤란함
 - 다만, 2016년 기준 농업회사의 법인당 농업인 출자자가 평균 6.3명이라는 점에서 기타 작물재배업소득의 감면한도는 농업인 출자자당 약 8억원의 수입금액 수준이라 볼 수 있어 평균적으로 영농조합보다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감면조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수준과 동일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 농업회사법인은 그 설립조건상 농업인의 참여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감면한도 수준보다 감면혜택의 제공 자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
 - 현행 설립요건에는 농업인의 출자율이 10% 이상이거나 출자금이 8억원 이상이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비농업인 위주의 법인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함
 - 이에 따라 대규모 농업회사법인일수록 농업인의 참여가 거의 없더라도 농업법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 한편,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혜택은 영농조합법인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감면혜택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형평성은 명확하지 않음
 - 어업생산과 달리 농업생산에 대한 차별적인 세제혜택이 형평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 그러나 농업은 사유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데 반해 어업은 공유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등 산업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농조합법인의 감면혜택이 낮다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조특법 개정과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인 8년 이상 자기경작 조건과 대등한 조건(현물출자 전 자경 기간과 현물출자 후 양도 시까지의 기간 합산으로 8년 이상) 전체

유사중복성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개별 세법에 의한 다른 조세지출 제도나, 재정사업과도 유사중복성 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판단됨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특례제도 중에서는 중복된 사례가 없었으며, 설령 존재하여도 「조특법」상의 중복지원 배제의 원칙 때문에 중복지원을 받는 구조는 아님
 - 「조특법」상의 제도 이외에의 조세지출제도에서도 농어업법인을 별도로 지원하여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와 중복성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찾지 못하였음
 -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과 가장 관련이 큰 재정사업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보이나, 지원내용을 감안할 때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와 중복 이슈는 없다고 판단됨

IV. 효과성 평가

법인 및 농어민 소득에 대한 효과

-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대비 농가·어가의 소득비중 변화추이(가구 총소득 기준)를 보면, 모든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농어가보다 농어가의 총소득이 낮으며 특히 농가와 비농어가의 총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2009~2010년 기간 이전에는 농가소득이 어가소득보다 높았으나 동 기간을 경계로 역전되기 시작
 -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농어가의 총소득 평균 수준은 2000년대 초에는 도시간구의 약 80% 수준이었다가 2000년대 중반 9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최근에는 70%대로 크게 하락
 - 어가소득 수준은 2010년 경 다소 등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간구 대비 소득비율이, 2000년대 초 60%대 후반에서 최근 70%대 중·후반~8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시현

- (가구소득 결정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비농어가)와 농가경제조사(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어가) 원시자료를 합쳐(pooling) 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소득은 대체로 농가 또는 어가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비농어가)보다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추정
 - 여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가 여부의 차이로 인한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는 가구당 평균 300만~400만원 수준(2003년 및 2008년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추정
 - 다만, 2015년의 경우에는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양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농가소득에 미친 효과를 모의실험으로 추정한 결과, 조세감면액은 농가 가구당 평균 49,589원으로 추정
 - 농가경제조사자료의 농가 가구 수,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규모 추정액을 이용하여 조세감면액이 모두 농가에 배분된다는 전제하에 추정

- 소득계층별로는, 농가 1분위가 가구당 평균 4,338원, 4분위 20,344원, 7분위 38,661원, 9분위 59,085원으로 증가하다가 10분위는 229,249원으로 급격히 증가
 - 전반적으로 농가 내부적으로는 소득계층이 상승할수록 조세감면액이 누적적으로 확대되는 경향
 - 이는 저소득농가에 비해 고소득농가가 상대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에 관여하면서 취득하는 금전적 세금경감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함
 - 소득세 등의 누진과세 체계를 감안할 때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세 한계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경감액도 누적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추정

- 농가와 어가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경감 제도는 공히 소기의 성과, 즉 소득증대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
 - 농가와 어가의 내부적 계층별 형평성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증대효과가 누적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생
 - 다만, 소득증대 절대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소득격차의 확대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소득증대 효과를 농가 기준에서 전 가구(도시가구 및 1인 가구 포함) 기준으로 확대하여 추정할 경우, 가구당 평균수혜금액은 2,314원 수준
 - 농가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분류하였을 때보다 전 가구 대상으로 분류할 때 10분위의 수혜비중이 일부 완화
 - 농가 대상 10분위 46.2% → 전 가구 대상 10분위 37.7%

- 조세특례제도로 인한 지니계수의 변화는 매우 작은 수준이나 농가만을 놓고 보면 소폭 상승하고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보면 미세하게 감소
 - 농업부문 내에서는 감면제도로 소득격차가 미미하게 확대
 - 그러나 전체 가구에서 농업부문은 주로 중·저소득 구간에 더 집중되어 있어 전체 가구에서의 소득격차는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로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결과를 보임

경제적 파급효과 및 재분배 효과

- (일반균형모형 분석) Harberger-Shoven-Whalley형 일반균형모형 체계를 이용하여 각 산업의 전후방효과를 반영한 소득계층별 소비자별 후생변화를 분석
 - 농어업부문의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에 따른 업종별 세부담 체계의 변화는 기업의 생산행위와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직간접 파급효과를 발생시킴
 - 2015년 기준으로 농어업부문의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제도가 없는 기준상태의 균형을 먼저 계산하고, 이러한 제도 시행에 따른 새로운 균형을 계산하여 이를 서로 비교하여 경제주체별로 경제적 효율 변화나 소득재분배 등 소득계층별 파급효과를 추정함

- 일반균형모형 분석결과, 직간접 파급효과를 포함한 소득분위별 후생 증가를 살펴보면 2015년 연간기준으로 소득 1분위 약 1.04만원, 소득 5분위 4.6만원, 소득 10분위 21.7만원으로 전체 평균 약 6.7만원 정도의 혜택 예상
 - 소득계층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여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세혜택의 귀착효과를 소득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U자형으로 저소득층에서는 누진적, 중산층에서는 비례적으로 작용하여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이나 고소득층에서는 다소 역진적임

- (실효세율 변화) 조세특례제도로 인해 농어업부문의 법인세가 감면됨으로써 해당부문의 세부담률도 변화
 - 농림어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조세특례제도가 없었다면 18.3% 수준이었을 것이나 조세특례제도로 인하여 11.9%까지 6%p 이상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 전 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에서는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0.02%p 감소하는 수준에 머무름

V.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 종합적으로 볼 때, 조세특례제도의 시행은 ‘시장의 실패’가 유지되는 한 당분간 계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동 지원정책은 당분간 지속될 필요성이 인정됨
 - 농어가의 고령화 및 소규모 영세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지원이 계속될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

- 정책 시행기간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영농·영어가의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여 시장의 실패 현상이 수면 아래로 축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위의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인구고령화와 장수화 경향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동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비슷한 상황에 있는 영어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정책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타당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한 내용으로는 제도의 유지가 적절할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제도의 내용 중 일부는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가장 큰 부분은 감면혜택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수준과 농업회사의 농업인 출자비율에 따른 차등지원이 대표적으로 논의할 만한 주제로 판단됨

-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감면범위는 정책입안자의 정책목적에 따라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음
 -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혜택이 감소하는 사례를 아예 배제하고자 한다면 영농조합의 소득별 감면한도를 조정하여 개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음
 - 반면, 대규모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 소규모 경작을 하는 농업인과 결합하여 조합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한다면 현재 방식의 감면한도 설정이 더 적절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68조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농업인의 출자 참여율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비농업인의 출자율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일반 유통업체와 실질적인 차이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인의 출자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세제혜택을 제공하거나, 농업인의 출자율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의 차등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실제 제도를 개정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제한을 지금의 수준으로 완화한 것은 비농업인의 농업에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차등적 세제혜택을 적용할 출자 기준을 얼마로 정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우회적으로 출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차등적 세제혜택을 새로 적용하여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목 차

I. 심층평가의 개요	23
1. 조세특례제도의 배경과 목적	25
2. 제도 운용 현황	28
3. 주요 쟁점과 평가내용	39
II. 해외 유사제도 운용 사례	45
1. 외국의 농업경영체 중 법인의 중요성	47
2. 일본	49
3. 독일	58
4. 영국	70
5. 프랑스	73
6. 시사점	76
III. 타당성 평가	79
1. 정부 개입의 정당성	81
2. 지원수단의 적절성	88
3. 지원규모의 적정성	93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96
IV. 효과성 평가	99
1. 법인 및 농어민 소득에 대한 효과	101
2. 경제적 파급효과 및 재분배 효과	125

V.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151
1. 종합평가결과	153
2.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158
참고문헌	161

표 목 차

<표 I-1> 세목별 법인별 세금 감면한도	30
<표 I-2> 평가대상 특례제도들의 주요 연혁	31
<표 I-3> 「조특법」 제66조 신설 및 개정연혁	32
<표 I-4> 「조특령」 제63조 신설 및 개정연혁	33
<표 I-5> 「조특법」 제67조 신설 및 개정연혁	34
<표 I-6> 「조특령」 제64조 신설 및 개정연혁	35
<표 I-7> 「조특법」 제68조 신설 및 개정연혁	36
<표 I-8> 「조특령」 제65조 신설 및 개정연혁	37
<표 I-9>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지출 규모	38
<표 I-10>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지출 규모	38
<표 I-1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지출 규모	38
<표 II-1> EU 및 일본의 농업경영체 숫자 및 농용지 중 법인의 점유비율	48
<표 II-2> 일본의 농업법인의 종류	50
<표 II-3> 일본의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 분포	51
<표 II-4> 일본의 논벼(水田) 개별경영과 조직법인경영의 개황 비교(표본 경영체) ...	52
<표 II-5> 일본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제도 개관	53
<표 II-6> 일본의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54
<표 II-7>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 지원 조세감면 대상 신규취득설비	57
<표 II-8> 취득가액 규모별 감가상각방식	57
<표 II-9> 독일의 중요 회사조직 형태	60
<표 II-10> 독일의 ‘농업적’ 축산 허용 두수	61
<표 II-11> 독일의 유한회사와 민법상 조합의 세부담 예시(2014년 현재)	62
<표 II-12> 독일의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 분포	63
<표 II-13> 독일의 주업농과 법인 비교(2016/1017)	65
<표 II-14> 독일의 농업 관련 조세특례	66

<표 II-15> 독일의 소득세액 결정세액	67
<표 II-16> 영국의 농업경영체 숫자와 경영규모	70
<표 II-17> 영국의 소득세 세율체계	71
<표 II-18> 영국의 배당소득 세율(배당소득 공제 초과분)	72
<표 II-19> 영국의 연간투자공제 한도액	73
<표 II-20>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에의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추이	76
<표 III-1> 농업법인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법인 수	86
<표 III-2> 사업자별 농업활동 소득세 감면범위	93
<표 III-3>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개요	97
<표 IV-1> 농가, 어가 및 비농어가(2인 이상 도시가구)의 총소득·가구주 연령· 가구원 수 분포 비교	106
<표 IV-2> 전체 가구(농가+어가+비농어가) 대상 소득결정식 회귀분석 결과(OLS) ...	116
<표 IV-3> 농가, 어가, 비농가의 적자가구 비율 추이	117
<표 IV-4> 전체 가구(농가+어가+비농어가) 대상 소비함수 회귀분석 결과(OLS)	119
<표 IV-5> 총소득 및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농가 기준)	120
<표 IV-6> 총소득 및 영어조합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어가 기준)	122
<표 IV-7> 총소득 분포 및 영농조합·농업회사·영어조합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전 가구 기준)	123
<표 IV-8>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 조세 감면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5년 지니계수	124
<표 IV-9> 조세지출 현황	126
<표 IV-10>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128
<표 IV-11> 법인세율의 변화	130
<표 IV-12> 기업 업태별 법인세 현황 및 세부담 분포	146
<표 IV-13> 업태별 법인세 부담: 일반기업 vs 중소기업	147
<표 IV-14> 농어업부문 법인세 조세특례의 업종별 실효세율 변화	148
<표 IV-15> 농어업부문 법인세 조세특례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149

그림 목 차

[그림 I-1] 3개 조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39
[그림 II-1] EU 국가 농업경영체 평균 농용지 규모와 법인 비율	49
[그림 III-1] 연령별 농가호수 추이	81
[그림 III-2]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비중 추이	82
[그림 III-3] 가구소득 추이	83
[그림 III-4] 2000년대 농업법인 추이	84
[그림 III-5] 농업법인의 규모화 추이	85
[그림 III-6] 농업법인의 영업실적 추이	86
[그림 III-7] 농업법인 영업이익 분포(2016년 기준)	86
[그림 IV-1] 비농어가·농가·어가 총소득 변화추이	103
[그림 IV-2] 비농어가 대비 농·어가의 소득상 대비	104
[그림 IV-3] 농가·어가·비농어가의 가구당 (총)소득 평균 변화추이	107
[그림 IV-4] 소득 10분위별 농가·어가·비농어가의 가구당 평균 (총)소득 비교(2015년)	107
[그림 IV-5] 농가·어가·비농어가의 가구주 연령 변화추이 비교	109
[그림 IV-6] 소득분위별 농가·어가·비농어가의 가구주 평균연령 비교(2015년)	110
[그림 IV-7] 농가·어가·비농어가의 평균 가구규모(가구원 수) 변화추이 비교	111
[그림 IV-8] 법인과세 결정 과정	132
[그림 IV-9] 법인과세 감면의 경제적 파급 효과	134
[그림 IV-10] 부분요소세의 귀착이론과 실증분석의 필요성	137
[그림 IV-11] 업종별 법인세 현황	147
[그림 IV-12] 농어업부문 법인세 조세특례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그래프	150

I. 심층평가의 개요



I. 심층평가의 개요

1. 조세특례제도의 배경과 목적

- 본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3개 특례조항(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대상으로 함
 - 「조특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농업인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조합원의 배당소득세, 어업인의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조특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출자자의 배당소득세, 농업인의 농업회사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 심층평가 대상인 3개 특례제도(이하 ‘평가대상 특례제도’)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분야 지원의 일환으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육성을 지원함
 - 영농·영어조합법인은 농어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립한 조합임
 - 특히, 쌀 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경제의 현실을 감안하고, 한·칠레 FTA, DDA 협상 등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고자 도입됨(윤충식 외, 2017, p. 876)
 - 농업회사법인은 농촌지역의 생산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위하여 설립됨
 - 결국 평가대상 특례제도는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세금감면의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농어민의 후생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 한편, 평가대상 특례제도를 통해 농어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및 재무 투명성 강화의 효과도 기대함

-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를 상당부분 인정함으로써 비농업인들의 농업회사 투자를 유도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1999년에는 총출자액의 1/2로, 2004년에는 총출자액의 3/4으로, 2012년에는 총출자액의 90/100으로 완화함¹⁾
- 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을 통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업계에서 보다 투명한 회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게 함
 - 기존 농어업계는 개인사업자 위주로 경영이 이루어져 사실상 회계라는 개념조차도 인식 부족
 - 법인화를 통해 회계처리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농어업 업계의 재무여건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구분

-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
 -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름
 -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 영어조합법인은 협업적 수산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 어업인 또는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
 - 어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름
 -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

1) 2012년 5월 관련규정 개정으로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총출자액의 90/100, 총출자액이 80억원 초과 시에는 총출자액에서 8억원을 제외한 금액까지로 한도를 완화함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가 설립한 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이며,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는 출자한도 내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음
-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는 농업회사법인을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 중 하나로 설립할 수 있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농업인” 정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초지 또는 부동산(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면서 4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를 의미함
 - 시는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함
 - 구는 자치구인 구를 의미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정의된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함(「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제도 운용 현황

가. 과세특례 내용

□ 평가대상 특례제도는 각각 해당 법인의 법인세, 법인 출자자(조합원)의 배당소득세, 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어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영농조합법인 및 그 조합원(「조특법」 제66조)

○ (사업소득) 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전액 및 기타 소득의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아래 산식에 따른 한도까지 법인세 면제

$$\text{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times \{6\text{억원} \times \text{조합원 수} \times (\text{사업연도 월수} - 12) \div \text{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

- 그 밖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당 연간 1,200만원까지 법인세 면제
- 세금감면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에 준조합원은 포함되지 않음

○ (배당소득) 조합원의 배당소득은 해당 배당소득이 발생한 소득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며, 한도 초과분은 5% 저율과세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그 밖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경우, 그 배당소득 중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한도를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 농업인이 농지 및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자경하였던 기간과 현물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 시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함
 - 기간 조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69조) 조건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된 것임
- 영어조합법인 및 그 조합원(「조특법」 제67조)
- (사업소득)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 1인당 1,200만원 한도로 면제
 - 세금감면의 기준이 되는 조합원에 준조합원은 포함되지 아니함
 - (배당소득) 조합원의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인당 1,200만원까지 비과세함
 - 한도를 초과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로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양도소득)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어업인은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해당 어업용 토지를 어업에 4년 이상 직접 사용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자영기간은 현물출자 전 자영기간과 현물출자 후 보유기간의 합이 8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 및 그 출자자(「조특법」 제68조)
- (사업소득) 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의 전액 및 기타 소득의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아래 산식에 따른 한도까지 법인세 면제

$\text{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times \{50\text{억원} \times \text{사업연도 개월 수} \div 12\} \div \text{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
--

- 그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

<표 1 -1> 세목별 법인별 세금 감면한도

법인세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소득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6억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금액} - 그 밖의 소득금액: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영어조합법인	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수/12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소득 전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그 밖의 소득금액: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양도소득세	
영농조합법인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현물출자 시 전액 감면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농업회사법인	농업인이 농지·초지를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배당소득세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1,200만원 한도 - 한도초과 배당소득은 5% 저율과세
영어조합법인	1,200만원 한도 비과세, 한도초과 배당소득은 5% 저율과세
농업회사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 - 그 밖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14%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자료: 저자 정리

- 그 외의 소득 중 감면대상 소득에는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③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이 해당됨
- 그 외의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방식은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준용함

나. 제도 연혁

- 평가대상 특례제도들은 모두 20년 이상 유지되었으며, 그동안 수차례 감면범위의 조정과 일몰연장을 거쳐 지금에 이룸

〈표 1-2〉 평가대상 특례제도들의 주요 연혁

연도	주요 사항
1989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 법인세: (작물재배업) 비과세, (그 외 소득) 조합원당 386만원까지 비과세 - 배당소득세: 386만원까지 비과세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분 전액 면제(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정)
1990	○ 영농조합법인 비과세한도 확대: 386만 → 500만원
1995	○ 영농조합법인 비과세한도 확대: 500만 → 1,200만원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 법인세: (작물재배업) 비과세 (그 외 소득) 5년간 50% 감면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분 전액 면제(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정)
1997	○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 법인세: 조합원당 1,200만원까지 비과세 - 배당소득세: 1,200만원까지 비과세 - 양도소득세: 현물출자분 전액 면제(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추정)
2006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규정 신설 - 농업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2014	○ 식량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전환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 - (농업회사법인) 수입금액 50억원 이하
2018	○ 일몰기한 도래: 2018년 12월 31일

자료: 저자 정리

- 영농조합법인(1989년)과 농업회사법인(1995년)에 대한 특례제도가 먼저 도입되었고, 그 후 영어조합법인(1997년)에 대해서도 특례제도가 도입됨
 - 농업분야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 뒤 수산업분야에 대한 과세특례가 뒤따라 도입됨

□ 각 조세특례제도별 법령의 변천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됨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66조, 「조특령」 제63조)
 - 동 제도는 1989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감면한도 조정과 일몰연장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의 연혁은 <표 1-3>과 <표 1-4>에 요약·정리함

<표 1-3> 「조특법」 제66조 신설 및 개정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89.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작물재배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농지소득으로 규정 -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득 및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방위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지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전액,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 일부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해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 면제 -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면제받은 자가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추징
199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세목에서 방위세 및 교육세 삭제
199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으로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1998.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일몰기한 설정: 2003년 12월 31일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0.12.29.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개정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을 농지에서 「초지법」에 의한 초지로 개정함
2003.12.30.	○ 일몰기한 연장: 2006년 12월 31일
2006.12.30.	○ 일몰기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2010.1.1.	○ 일몰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
2013.1.1.	○ 일몰기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2014.1.1.	○ 식량작물재배업 외 작물재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전환 ○ 양도소득세 사후관리규정 추가 - 초지 및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주식지분의 100분의 50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추정
2015.12.15.	○ 일몰기한 연장: 2018년 12월 31일
2016.12.20.	○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추가 -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는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농지 또는 초지 이외의 환지(換地)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전액 양도소득세 감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표 I -4> 「조특령」 제63조 신설 및 개정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89.12.30.	○ 「이자상당가산액」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5) - “이자상당가산액”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율을 적용함
1990.6.22.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로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3조의5) -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추가 (386만원×조합원 수×사업연도 월 수/12) - 배당소득세 비과세 설정: 386만원까지
1990.12.31.	○ 배당소득세 비과세 한도 확대 - 386만원 → 500만원
1993.12.31.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으로 개정(「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1995.12.30.	○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 - 조합원당 1,200만원
1998.12.28.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3조)
2014.1.1.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한도 -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67조, 「조특령」 제64조)
 - 동 제도는 1997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로 신설되었으며, 감면요건 추가 등의 제도정비와 수차례의 일몰연장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의 연혁은 <표 I-5>와 <표 I-6>에 요약·정리함

<표 I-5> 「조특법」 제67조 신설 및 개정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7.1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 면제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 해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 어업인이 영어조합법인에 어업용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자가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양도소득세 추정
1998.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일몰기한 설정: 2003년 12월 31일
2003.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06년 12월 31일
2006.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
20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5년 12월 31일
2015.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2018년 12월 31일
2016.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조합법인에 출자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어업용 토지 이외의 환지(換地)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전액 양도소득세 감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표 I -6> 「조특령」 제64조 신설 및 개정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7.12.24.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 등」 신설(「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의2), 1997.12.31. - 법인세 비과세 한도 설정(1,200만원 × 조합원 수 × 사업연도 월 수/12) - 배당소득세 비과세 한도 설정(과세기간별로 1,200만원)
1998.12.28.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으로 이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2008.2.22.	○ 어업인에 대한 요건 강화 -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자 중 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
2015.2.3.	○ 어업인에 대한 요건 완화(해당 토지 등으로부터의 거리) - 20킬로미터 → 30킬로미터
2016.2.5.	○ 어업인에 대한 요건 추가 - 4년 이상 어업 종사한 자 ○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자영기간 요건 신설 - 현물출자 전 자영기간과 현물출자 후 보유기간의 합이 8년 이상일 것 -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의 자영기간 계산 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 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영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영기간 통산 - 총급여 및 사업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영기간에서 제외
2017.2.7.	○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 산식 신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특법」 제68조, 「조특령」 제65조)
- 동 제도는 1995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에서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이후 과세특례 대상의 추가 및 일몰기한이 수차례 연장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04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혜택을 추가하였으며, 2006년에는 배당소득 감면제도를 신설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의 연혁은 <표 I-7> 과 <표 I-8>에 요약·정리함

〈표 I -7〉 「조특법」 제68조 신설 및 개정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1995.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3조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신설 ○ 내용: ①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농지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지소득 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의 50% 감면, ② 농업인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시기: 1996.1.1. 이후
1998.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전면 개정 시 구법 제53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로 이관하고 일몰기한 2003.12.31. 신설
2003.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 일몰기한: 2003.12.31. → 2006.12.31.
200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생산업, 축산업, 임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 추가 ○ 적용시기: 2005.1.1. 이후
2006.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출자자 배당소득 감면 규정 신설 - 농업소득: 배당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배제 ○ 일몰기한 연장 및 면제대상 소득 범위 명확화 - 일몰기한: 2006.12.31. → 2009.12.31. - 감면대상 농업소득 외의 소득을 「농업·농촌기본법」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명확화 ○ 적용시기: 2007.1.1. 이후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 일몰기한: 2009.12.31. → 2012.12.31.
201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과세특례(14% 분리과세 대상) 명확화 - 농업소득 또는 감면대상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경우 동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 ○ 적용시기: 2012.1.1. 이후
20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 일몰기한: 2012.12.31. → 2015.12.31.
201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을 출자일로 부터 3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적용시기: 2014.1.1. 이후
2015.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 일몰기한: 2015.12.31. → 2018.12.31.
2016.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 초지가 주거지역 등 편입 시 감면 범위 합리화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처분 전 농지·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편입일 또는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표 I -8〉 「조특령」 제65조 신설 및 개정연혁

연도	주요 변경사항
2007.2.28.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계산 산식 추가 →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금액 ÷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
2012.2.2.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계산 산식 개정 1.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2. 농업소득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농업소득금액 + 농업소득외 소득금액 + 기타농업소득외 소득금액)
2014.2.21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계산 산식 신설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50억원 × (사업연도 개월 수 ÷ 12)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계산 산식 개정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2017.2.7.	○ 농지 또는 초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일까지 발생한 소득 계산 산식 신설 →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정리

다. 조세지출 규모

- 3개 평가대상 특례제도 가운데에서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조세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3개 평가대상 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순서임
-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최근 10년('17, '18년 전망치 포함) 평균 조세지출 규모는 261억원 수준임
 - 다른 특례제도의 경우 최근 10년 평균 조세지출 규모는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24억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 109억원가량임

<표 I -9>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망)	'18년 (전망)
소득세	58	49.4	14	156	32	65	125	105	37	21
법인세	174	200	201	197	194	193	192	200	198	196
합계	232	249.4	215	353	226	258	317	305	235	217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 -10>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망)	'18년 (전망)
소득세	6	3	1	4	8	4	8	4	5	6
법인세	13	15	18	19	19	20	21	22	23	24
합계	19	18	19	23	27	24	29	26	28	30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 -1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의 조세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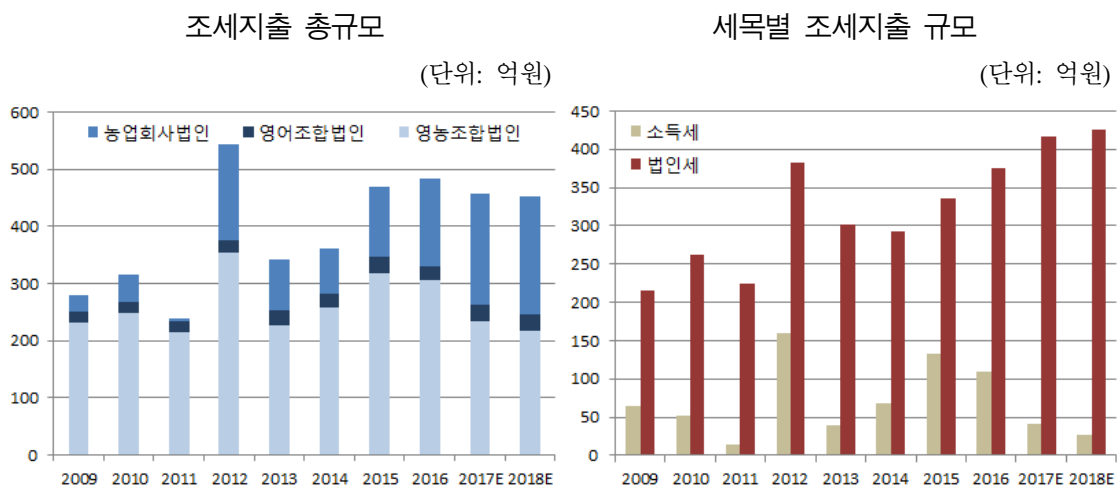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전망)	'18년 (전망)
소득세	-	-	-	-	-	-	-	-	-	-
법인세	28	48	5	167	88	79	123	153	195	206
합계	28	48	5	167	88	79	123	153	195	206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평가대상 특례제도 각각의 조세지출액은 300억원 미만이나 합산 시에는 500억원 내외의 규모임
-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15년부터는 45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 세목별로 조세지출 규모를 나누어 보면 평균적으로 법인세가 80% 이상 차지하고, 소득세는 20%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 -1] 3개 조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추이



자료: 대한민국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를 기초자료로 저자 작성

3. 주요 쟁점과 평가내용

가. 주요 쟁점사항

- 금년 말(2018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된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감면제도의 유지 여부 및 개선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는 3개 조항 모두 20년 이상 지속된 제도로 그동안 여러 차례의 일몰연장을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음
 - 3개 제도 모두 지금까지 수차례 일몰연장되었기에 동 제도의 도입 논리와 일몰연장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임

- 비록 개별 조항의 조세지출액은 300억원에 이르지 않아 의무심층평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농어민 소득지원을 위한 법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유사성을 고려하여 3개 조항을 합산할 경우 그 조세지출액이 300억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평가를 통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3개 특례제도를 하나의 임의심층평가 대상으로 하여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살펴봄
- 평가대상 특례제도의 도입목적은 고려할 때 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쟁점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임
- 평가대상 특례제도는 농어업의 협업적·기업적 경영 활성화를 통하여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82: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과 직결된 정책임
 - 제도의 정책목적상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쟁점사항은 평가대상 특례제도가 개인사업자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법인으로 전환할 유인을 가지는가 하는 사항임
 - 평가대상 특례제도가 소규모 개인 농가 단위 경작행태를 중규모 이상의 규모화와 집단 경작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협업적·기업적 경영이 가능하게 될 것임
 - 다음으로는, 평가대상 특례제도가 궁극적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소득안정에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임
 - 아무리 협업적·기업적 경영으로 유도하였더라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농어민의 소득증대로 귀결되지 않는다면 제도를 유지할 명분은 크지 않을 것임
 - 따라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소득증대 또는 소득안정이라는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사항이 될 것임
- 이 외에도 평가대상 특례제도 간 과세 형평성도 주된 논의대상임
-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감면수준이 다른 것에 대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사이의 과세 형평성이 제기되어 왔음
 - 농업과 어업의 산업 특성 차이로 인하여 동일한 기준의 세금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수산업계에서는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감면규모가 작은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음²⁾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허용한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특례 제도가 농업인이나 농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비농업인의 감세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특례제도가 농업과 농업인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나. 평가내용

- 평가내용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개의 분야로 구성됨
 - 제도 현황파악 및 쟁점 정리
 - 제도의 타당성 분석
 - 제도의 효과성 분석
 - 향후 정책방향
- 제도 현황파악 및 쟁점정리에서는 평가대상 특례제도의 내용과 연혁, 그리고 주요 쟁점을 정리함
 - 본고의 제 1 장이 여기에 해당함
- 제도의 타당성 분석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해당 지원사항의 필요성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 (정부의 개입 정당성) 먼저, 각 법인의 이익이 확대되는 것이 정부가 개입해야 할 정도로 사회적인 편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
 - 정책대상인 법인들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 정당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음
 - 하나는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인가 하는 측면임
 - 다른 하나는 농어민 소득 증대의 수단으로 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정당인가 하는 측면임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한도 기준은 작물재배업 종류와 그 여부에 따르고 있어, 이러한 기준을 농업 이외의 업종에는 적용하기 어려움

- (지원수단의 적절성) 다음으로, 각 법인의 이익 증대를 위한 정부 개입이 정당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 정책판단인지에 대하여 평가해야 할 것임
 - 지원정책과 규제정책 중 어떤 것이 더 적절한지 살펴봄
 -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 평가함
 - 세제지원 이외에도 다른 지원수단이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적절한 수단일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원규모의 적정성) 또한, 지원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때 지원규모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감면의 수준 및 대상, 범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적절한 지원수준에 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유사중복성) 한편, 여타 지원제도와 유사성 내지 중복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중복되는 지원항목에 대하여는 통폐합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효과성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동 특례조항들이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임
- 각 법인들이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법인의 영업활동이 활성화되면 농어민의 생산물 판매가 확대되면서 농어민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
 - 둘째, 각 법인의 조합원(주주)으로서 법인의 세후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이나 현물출자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농어민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음³⁾
 - 제도의 효과 여부에 있어 핵심은 동 제도를 통하여 실제로 농어민의 추가소득이 발생했는지 여부임
 - 제도의 유무에 상관없이 각 법인을 통해 발생한 농어민 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얼마나 유발되었는지(소득유발효과)를 식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효과성 분석의 내용임

3) 이 경우, 배당소득은 지속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으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일회성 소득임

- 다만, 실제 분석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수혜자와 비수혜자 미시자료가 충분치 않아 이상적인 식별은 이루어지지 않고 가용자료 수준에서 법인으로의 전환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지를 보여줌

□ 효과성 분석의 일환으로 재분배 효과와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효과 등을 추가로 살펴봄

- 재분배 효과는 미시모의실험과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함
 - 미시모의실험에서는 평가대상 특례제도의 적용으로 인한 농가소득 수준별 소득증대효과를 비교하고 이를 전 가구로 확대하여 그 효과를 계층별로 비교분석함
 - 일반균형모형에서는 평가대상 특례제도로 인한 농업부문의 세금감면이 여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며, 직간접 파급효과를 반영한 모형결과로 소득분위별 혜택분포를 파악함
-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효과 분석은 농어업 부문의 세부담이 평가대상 특례제도가 없었다면 어느 정도이었을지 계산하여 제도의 유무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를 파악함

□ 향후 정책방향은 현황·타당성·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언함

Ⅱ. 해외 유사제도 운용 사례



II. 해외 유사제도 운용 사례

- 세계적으로 볼 때 농업부문은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경영이 지배적이지만 각종 조합 또는 법인 형태의 경영체들도 존재함

- 각국에서 이러한 다양한 법적 형태들이 농업경영체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농업구조, 사회주의체제 경험 여부에 따라서 서로 다르고, 이때 조세제도는 농업경영자들이 어떠한 법적 형태를 선택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침
 - 예를 들어 Edmark and Gordon(2013)은 스웨덴의 농업인들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법적 형태 선택에 조세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 고소득층 농가의 경우에는 농가의 법적 형태에 따른 조세상의 유불리(有不利)가 농업경영체를 개별 농가(sole proprietor) 형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주주(小數株主)지배기업(closely held corporation) 형태로 할 것인지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 이러한 인식하에 이 장에서는 외국의 농업경영체 중 법인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EU 국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임

- 또한 일본, 독일, 그리고 영국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농업에 대해서 개별 경영 및 그 외의 조직화된 경영체들에 대해서 세제상의 어떤 특례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볼 것임

1. 외국의 농업경영체 중 법인의 중요성

- EU 국가들의 농업경영체 중 법인의 점유비율은 나라별로 차이가 크지만 평균농지규모가 클수록 법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표 II-1>과 [그림 II-1] 참조)

- 구 사회주의권 중 일부 국가(체코,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그리고 서부유럽 국가 중 일부 국가(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에서 법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표 II-1>의 통계는 상법상의 회사 형태를 가진 법인만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4) 경영체가 ‘조합’ 형태를 가진 경영체까지 포함시킨다면, ‘비개인’ 경영체의 수는 더 많을 것임

<표 II -1> EU 및 일본의 농업경영체 숫자 및 농용지 중 법인의 점유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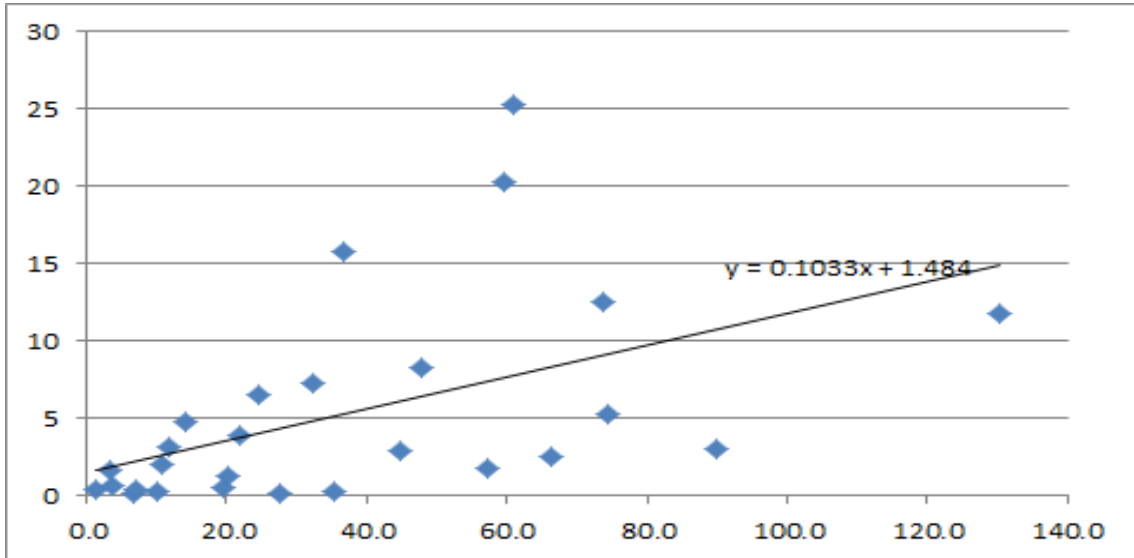
국가	경영체(개)			농용지(ha)			평균농지규모		
	전체	법인	법인 비율 (%)	전체	법인	법인 비율 (%)	자연인 (A)	법인 (B)	B/A
벨기에	36,890	5,820	15.8	1,354,250	236,590	17.5	36.0	40.7	1.1
불가리아	202,720	7,770	3.8	4,468,500	2,060,760	46.1	8.8	265.2	30.2
체코	26,530	3,120	11.8	3,455,410	2,415,720	69.9	44.4	774.3	17.4
덴마크	35,050	1,830	5.2	2,614,600	222,580	8.5	72.0	121.6	1.7
독일	264,810	4,670	1.8	15,166,860	2,371,300	15.6	43.0	507.8	11.8
에스토니아	16,700	3,390	20.3	995,100	645,600	64.9	26.3	190.4	7.3
아일랜드	137,560	420	0.3	4,883,650	36,580	0.7	35.3	87.1	2.5
그리스	684,950	650	0.1	4,553,830	13,740	0.3	4.6	21.1	4.6
스페인	945,020	61,020	6.5	23,229,750	5,691,080	24.5	18.3	93.3	5.1
프랑스	456,520	115,610	25.3	27,814,160	10,685,000	38.4	33.7	92.4	2.7
크로아티아	134,460	4,180	3.1	1,562,980	280,400	17.9	7.7	67.1	8.7
이탈리아	-	-	-	-	-	-	-	-	-
사이프러스	34,940	570	1.6	111,930	16,930	15.1	2.8	29.7	10.7
라트비아	69,930	130	0.2	1,930,880	19,760	1.0	25.0	152.0	6.1
리투아니아	150,320	860	0.6	2,924,600	394,800	13.5	16.9	459.1	27.2
룩셈부르크	1,970	50	2.5	130,650	780	0.6	62.5	15.6	0.2
헝가리	430,000	8,720	2.0	4,670,560	1,945,920	41.7	6.5	223.2	34.5
말타	9,210	40	0.4	11,120	180	1.6	1.2	4.5	3.8
네덜란드	55,680	4,080	7.3	1,796,260	115,370	6.4	32.6	28.3	0.9
오스트리아	132,500	1,670	1.3	2,669,750	81,810	3.1	18.7	49.0	2.6
폴란드	1,410,700	4,080	0.3	14,405,650	1,180,700	8.2	9.4	289.4	30.9
포르투갈	258,980	12,200	4.7	3,641,690	1,254,460	34.4	9.2	102.8	11.1
루마니아	3,422,030	23,310	0.7	12,502,540	4,090,220	32.7	2.0	175.5	86.0
슬로베니아	69,900	230	0.3	488,400	25,530	5.2	6.6	111.0	16.7
슬로바키아	25,660	3,200	12.5	1,889,820	1,516,020	80.2	16.6	473.8	28.5
핀란드	49,710	1,450	2.9	2,233,080	95,560	4.3	42.9	65.9	1.5
스웨덴	62,940	5,220	8.3	3,012,640	716,210	23.8	39.8	137.2	3.4
영국	185,060	5,500	3.0	16,673,270	1,366,580	8.2	79.0	248.5	3.1
일본	1,377,266	27,101	2.0						

자료: Eurostat, 일본은 2015년 센서스5)

4) 예컨대 독일의 경우 국가통계(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와 비교하면 민법상의 조합 등 ‘인적회사(Personengesellschaft)’는 제외된 것으로 보임

[그림 II -1] EU 국가 농업경영체 평균 농용지 규모와 법인 비율

(단위: ha, %)



- 경영체 중 법인의 비율에 비해서 농용지에서 법인이 점유하는 비중이 높음
 - 즉, 법인경영체들은 자연인 경영체에 비해서 그 규모가 큼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농업경영이 대규모화되는 것과 농업경영체 중 법인 형태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
 - 그러므로 법인 형태의 농업경영체가 성립하고 유지되는 데 제도적 장애를 없애는 것은 외국에 비해서 아직도 경영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 확대를 꾀하는 농업생산자들이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임

2. 일본

가. 일본의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와 그 현황

- 일본에서 농업법인이란 법인 형태로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총칭하며, 농업조합법인과 회사법인의 두 종류로 나누어짐

5) 일본 총무성 통계국,

<https://www.e-stat.go.jp/stat-search/files?page=1&layout=datalist&toukei=00500209&tstat=000001032920&cycle=7&year=20150&month=0&tclass1=000001077437&tclass2=000001077396&tclass3=000001085297>

- 이중 농업조합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된 조합형 법인으로서 농업생산활동의 협업화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조합원 생산물의 운반, 가공, 저장을 행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농업조합법인은 그 성격상 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중간 형태라 하여 ‘중간법인’이라고 불리기도 함
- 반면, 회사법인은 회사법에 규정된 네 가지 회사형태 즉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단, 주식 양도제한이 있는 회사에 한함), 그리고 합동회사의 형태를 취한 법인임
- 다른 측면에서 농업법인은 농지 권리취득 유무에 따라서 ‘농업생산법인’과 ‘일반농업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짐
 - 농업생산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성립하는 농사조합법인 중에서 ‘농업경영을 행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이른바 2호 법인)과 회사법인 4가지 종류가 해당함

<표 II -2> 일본의 농업법인의 종류

농업 법인	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식양도 제한회사에 한함)	농지법 제2조 규정	농업생산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동회사		
	농사조합법인 (농협법 72조 8)	농업경영을 행하는 법인 (2호 법인)		
공동이용시설등의 설치등을 행하는 법인 (1호 법인)				

자료: 야마구치현 지역 농업 전략 추진 협의회⁶⁾

- 일본에서는 농업경영체 중 가족경영체의 비중이 압도적이지만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조직경영체의 숫자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일본 농업통계상 ‘조직경영체’는 농업경영체 중에서 세대(世帯)단위가 아닌 형태로 사업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법인형태를 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⁷⁾

6) 야마구치현 지역 농업 전략 추진 협의회, <http://y-ninaite.jp/ninaite/qa/qa-06>

7) 후쿠이현 지방정부, http://www.pref.fukui.lg.jp/doc/toukei-jouhou/af-census/2015afc_d/fil/kaisetsu.pdf

- 가족경영체의 숫자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5년간 30만개가 소멸할 정도로 빨리 감소하고 있는 반면, 조직경영체의 숫자는 3만 1천개에서 3만 3천개로 증가하여 그 비중이 1.8%에서 2.5%로 증가하였음
- 그 중에서도 법인경영체, 특히 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가 이외 농업사업체의 증가가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가 이외의 판매목적 농업사업체의 증가는 약 6,300개이고 조직경영체 중 법인경영체 증가는 약 5,800개이므로 조직경영체 중에서 판매목적 농업사업체가 아닌 법인경영체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조직경영체 중 법인경영체 증가가 5,800개인데 조직경영체 전체의 증가는 약 3,000개에 불과하므로 조직경영체 중에서도 법인이 아닌 형태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 -3〉 일본의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 분포

(단위: 개, %)

	농업경영체 전체	가족경영체		조직경영체		
			법인경영	법인경영		농가이외 농업사업체 (판매목적)
2010	1,679,084	1,648,076	4,558	31,008	17,069	12,511
(비율)	100.0	98.2	0.3	1.8	1.0	0.7
2015	1,377,266	1,344,287	4,323	32,979	22,778	18,857
(비율)	100.0	97.6	0.3	2.4	1.7	1.4

- 개별경영체와 조직법인경영체 생산요소부존을 논벼 경영체를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보면 후자는 인력, 경지, 자본 모든 측면에서 훨씬 크지만 특히 경지 면에서 더욱 큼
- 출자자는 평균 23명으로 개별경영의 농업경영관여자 약 2명에 비해 10배 이상이지만 농업종사자 수는 15.49명, 전업환산 농업종사자의 수는 4.5명임
- 경영경지면적은 36.66ha로 개별경영의 2.36ha에 비해서 15.5배나 됨
- 출자액은 770만엔으로 개별경영의 220만엔에 비해서 3.5배 수준임
- 이상을 보면 독일의 경우(다음 절에서 소개)와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조직법인 경영은 토지집약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넓은 면적을 경작하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 -4> 일본의 논벼(水田) 개별경영과 조직법인경영의 개황 비교(표본 경영체)

개별경영(2016)		조직법인경영	
농업경영관여자(명)	1.94	출자자(명)	23(그 중 주업농가 2)
		전업환산 농업종사자(명)	4.5(그 중 구성원 2.6)
		농업종사자(명)	15.49
경영경지면적(ha)	2.36	경영경지면적(ha)	36.66
농업고정자산(천엔)	2,264	출자액(천엔)	7,690
농업소득(천엔)	626		
농업조수익	2,658		
농업경영비	2,032		

자료: 일본농림수산성⁸⁾

- 일본 정부는 2023년까지 법인경영체 숫자를 5만개로 증가시킨다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서 법인 형성을 지원하고 있음⁹⁾
 - 아래에서 설명하는 각종 세제, 금융상의 혜택 이외에 ‘농업경영력향상지원사업’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법인화를 촉진하고 있음(2017년 총예산 6억 6,800만엔)
 -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법인화를 통해서 경영관리를 고도화하고, 경영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고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취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음
 - 법인화 추진체제 정비, 법인화 경비지원, 농업경영 향상촉진 등의 사업을 행함
 - 광역자치단체 단계에서 법인화, 경영승계, 경영개선에 관한 전문가(세무사, 중소기업진단전문가 등)를 파견하여 세미나, 연수회 등을 개최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함
 - 집락경영(集落經營) 또는 복수의 개별경영이 법인화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 정액(定額)을 지원함(40만엔)
 - 농업법인 경제계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중개를 강화하고 농업법인 내 피용인들의 커리어 발전을 지원함

8)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tokei/kouhyou/kensaku/bunya3.html>, 검색일자: 2018.8.8

9)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kobetu_ninaite/n_seido/attach/pdf/seido_houzin-2.pdf, 검색일자: 2018.8.13

나. 농업인에 대한 일반적 조세특례

□ 일본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세목에 걸쳐서 농업에 대한 특례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표 II -5> 일본의 농업관련 조세감면 제도 개관

정책대상	시책명
인정농업자 등의 농지 취득, 농기계구입 등 설비투자 지원	-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준비금 제도 “소득세·법인세”
농업자가 이용하는 연료	- 농업에 사용하는 경유 거래세 면제 “경유 거래세” - 농업용 A중유의 석유석탄세의 면제 및 환급 “석유석탄세” - 농림 어업용 경유의 지구 온난화 대책 세금 환급(농림어업자 대상) - 농림 어업용 경유의 지구 온난화 대책 세금 환급(판매자 대상)
청색신고 특례조치	- 청색신고의 특례 “소득세·법인세”
농지보유	-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고정자산세 특례 “고정자산세” - 농지 보유 과세 강화·완화 “고정자산세”
농지 증여, 상속	- 납세유예제도 “증여세·상속세”
농지취득	- 농지를 취득한 경우 등록 면허세의 특례 “등록 면허세” - 농지를 취득한 경우 부동산 취득세의 특례 “부동산 취득세”
농지양도	- 농지를 양도한 경우의 특별공제 “소득세·법인세”
농업자에 대한 사업세, 사업소세	- 특정 사업용 자산의 환매·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소득세·법인세”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 중소기업 경영강화법에 따른 인정계획에 기초해서 기계장비 등을 도입한 경우에 대한 특례 “소득세, 법인세, 고정자산세” - 160만엔 이상의 농업 기계를 취득한 경우 등의 특례(중소기업 등 투자 촉진 세제) “소득세·법인세” - 상업·서비스업 및 농림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의 경영 개선을 위한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조치(상업·서비스업·농림 수산업 활성화 세제) “소득세·법인세” - 국고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등의 압축 금액의 손금 산입 특례 “소득세·법인세” - 소액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 가액의 손금 산입 특례 “소득세·법인세” - 공동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을 취득한 경우의 특례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사업소세”
기타 농업경영 안정발전 지원	- 농업신용기금협회의 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세율 경감 “등록 면허세” - 농사조합법인이 분배하는 종사분량(從事分量)배당 등의 특례 “법인세” -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설비 관련 특례 “고정자산세”

자료: 이태호 외(2016) 관련 부분을 업데이트 함¹⁰⁾

□ 소득세 개요¹¹⁾

- 일본의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그 발생 형태에 따라서 10종류¹²⁾로 분류하고 있으며, 농업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것으로 정의됨
- 우리 소득세처럼 작물재배에서 얻은 소득을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 퇴직소득, 산림소득, 이자소득은 별도로 과세되고 나머지 소득은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음(단, 양도소득과 일시소득은 50%만이 합산됨)
- 누진세율 체계는 다음과 같음

<표 II -6> 일본의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단위: 만엔, %)

구간	~195	195~330	330~695	695~900	900~1,800	1800~4,000	4,000~
한계세율	5	10	20	23	33	40	45

자료: 일본 재무성¹³⁾

□ 법인세 개요¹⁴⁾

- 법인세는 법인이 기업 활동을 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되며, 법인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것임
- 세율은 23.2%를 기본세율로 하되 중소기업(자본금 1억엔 이하)에 대해서는 800만엔 이하 소득 부분에 대해서 19%의 세율을 적용하며(법인세법 제66조 2), 현재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15%를 적용하고 있음(조특법 제42조 3의 2)
- 농업협동조합을 포함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19%가 원칙이며(법인세법 제66조 3), 현재 조세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15%를 적용하고 있음(조특법 제42조 3의 2)
 - 단, 대규모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10억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함(조특법 제68조)¹⁵⁾

10) 일본 농림수산업성, <http://www.maff.go.jp/aid/zeisei/nou/>, 검색일자: 2018.8.12.

11)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1.htm

12)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급여소득, 양도소득, 일시소득, 잡소득, 산림소득, 퇴직소득 등

13)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income/b02.htm

14)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tax_policy/summary/corporation/index.htm

15) 수입의 절반 이상이 물품판매에서 발생하고, 구성원 숫자가 50만명 이상이며, 물품공급 규모가 1천억엔 이상(조특법 제68조)

□ 농업인을 포함한 소사업자 투자에 대한 법인세 특례¹⁶⁾

- 농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주, 자본금 1억엔 이하 법인 등이 콤바인, 트랙터 등 신품 기계 등을 구입한 경우에, 통상적 감가상각에 더하여 30%를 특별상각하거나, 취득액의 7%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2019년 3월 31일까지)
 - 이 특례는 청색신고자, 즉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서 장부를 비치하고 일정수준의 기장을 하는 신고자에게 적용됨
 - 특별상각은 당년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에 계상할 수 있음
 - 소득공제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의 20%를 한도로 하며 한도 초과액은 다음해에 공제처리 가능함
 -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색신고자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기계는 대당 160만엔, 공구는 대당 30만엔 이상이면서 합계 120만엔 이상, 소프트웨어는 합계 70만엔 이상이어야 함
- 중소기업 경영 강화 세제 또는 상업·서비스업·농림 수산업 활성화 세제를 통해서 이루어짐

□ 사업세, 사업소세(事業所稅) 특례¹⁷⁾

- 사업세: 농업자(개인, 농사조합법인으로 농지소유자격 법인)에 대해서 사업세를 비과세함
- 사업소세: 농업자가 직접생산에 이용하는 일정한 시설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 제도

- 경영소득안정대책 등으로 받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농업용 자본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임
 - 대상이 되는 정부지원금은 발작물에 대한 직접지불교부금, 쌀과 발작물의 수입감소영향완화대책 교부금, 그리고 논(水田)활용 직접지불교부금 등임
 - 이상은 우리나라의 쌀소득보전직불제 중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그리고 발작물 직접지불금 등과 유사함
- 정부지원을 농업경영개선계획 등에 따라서 농업경영기반강화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액을 개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법인의 경우에는 손비 처리함

16)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aid/zeisei/nou/attach/pdf/index-10.pdf>

17)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aid/zeisei/nou/pdf/jigyozei_28.pdf

- 또한 이렇게 전년도까지 적립한 준비금을 이용하거나 그해에 받은 지원금을 그대로 농용지, 농업용 건물, 기계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압축기장’을 할 수 있게 함
 - 압축기장이란 취득한 농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帳簿價額)을 일정액까지 감액하여 그 감소분을 필요경비(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임
-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이 가능할 정도의 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을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른바 ‘청색신고’를 하고 있어야 함

□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에 따른 신규취득설비 관련 고정자산세 및 법인세 감면

- 세제 감면의 대상은 자본금 1억엔 이하의 법인, 상시고용 종업원이 1천명 이하인 개인사업주로서 ‘경영력 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함¹⁸⁾
 - 업종면에서는 농림어업자, 수산양식업자와 음식료품 제조업자, 목재제조업자, 음식료품 도소매업자, 그리고 음식점 등이 대상임
 - 단, 농사조합법인,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삼림조합은 대상이 되지 않음
 - 대규모 법인(자본금 1억엔 초과 등)으로부터 일정비율 이상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이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농정국(地方農政局) 등에 노동생산성 목표, 경영력 향상 방안을 담은 계획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함
-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서 고정자산세를 3년간 반액으로 감면 받음
 - 고정자산세액은 원래 자산의 평가액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정해짐
- 또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관련하여 설비를 즉시 상각처리하거나 취득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음
 - 단, 자본금이 3천만엔 이상 1억엔 이하인 법인은 7% 세액공제가 적용됨
-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설비와 최저액수는 <표 II-7>과 바와 같음

18) 이 법에 따른 지원정책은 조세감면 이외에 금융지원도 있으며, 후자는 자본금 10억엔 이하 또는 상근 종업원 2천명 이하의 기업 또는 개인에게 적용된다.

〈표 II -7〉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 지원 조세감면 대상 신규취득설비

설비종류	최저액수(1대당 만엔)	설비 모델 출시로부터 최대 경과연수(년)
기계장비	160	10
기구비품, 공구	30	기구비품 6, 공구 5
건물부속설비	60	14
소프트웨어	70	5

□ 소액상각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특례

- 농업자등이 30만엔 미만의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을 일괄하여 전액 필요경비(손비) 처리할 수 있음
 - 단, 이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필요경비 산입총액은 감가상각자산의 합계는 연 300만엔을 넘을 수 없음
 - 청색신고자만이 대상이 됨

〈표 II -8〉 취득가액 규모별 감가상각방식

취득가액(만엔)	상각방법		
	법정상각	3년간 일괄상각	전액 즉시 상각
10 미만	불가능(법인은 가능)	불가능(법인은 가능)	가능
10 이상 20 미만	가능	가능	가능(청색신고 필요) ¹⁾
20 이상 30 미만	가능	불가능	가능(청색신고 필요) ¹⁾
30 이상	가능	불가능	불가능

주: 1) 연간 300만엔 한도

다. 농사조합법인 관련 특례

□ 법인세 특례¹⁹⁾

- 조합원에 대한 종사분량배분(從事分量配分)을 손비(損費)처리함
 - 종사분량배분은 이용분량배당 및 출자배당과 더불어 농사종사법인이 잉여금을 배당하는 방법 중의 하나임

19)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j/aid/zeisei/nou/attach/pdf/index-16.pdf>, 農事組合法人が分配する從事分量配当等の特例《法人税》

- 그러나 농사조합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에 대한 종사분량배분은 급여, 임금, 상여금과 같이 손비처리함
- 세율은 일반세율 23.2%와 달리 19%로 하고, 800만엔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함(2019년 3월말까지)

□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특례²⁰⁾

- 농용지구역(農用地区域) 내의 농지를 지역 내의 의욕이 있는 농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농지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결정에서 특별공제를 인정해 줌
- 800만엔 특별공제와 1,500만엔 특별공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음
 - 기초자치단체(市町村)의 권고, 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조정 또는 지역 농업위원회의 알선에 따라 양도한 경우, 농지중간관리기구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에 양도한 경우,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농용지이용집적계획에 따라서 양도한 경우에 800만엔의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기초한 매입협약에 따라서 농지중간관리기구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에 양도한 경우에는 1,500만엔의 양도소득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이때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 기초한 매입협약이란 농지를 양도하려는 농가(법인)가 농업위원회에 양도에 관해서 농업위원회의 알선을 받겠다는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서 농업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매입협약 토지를 요청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이 양도희망농가와 농지중간관리기구 또는 농지이용집적원활화단체에 매입협약을 할 것을 통지하여 일어나는 협의를 말함

3. 독일

가. 독일 농업경영체의 법적 형태들과 유형별 중요성

- 독일법과 EU법에 따라서 독일 농업경영체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형태로는 개인경영(Einzelunternehmen) 이외에 다양한 회사형태(Gesellschaftsform)이 있으며 크게 인적회사와 법인으로 나누어짐(Rüdiger W. & Ester-Maria P., 2014, p. 7)

²⁰⁾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태호 외(2016) 참조

- 인적회사에는 민법상의 조합(GbR), 합명회사(OHG), 합자회사(KG) 등이 있음
 - 법인에는 자본회사, 협동조합(e.G.), 협회, 재단 등이 있음
 - 자본회사에는 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등이 있음
 - 그 외에 혼합형태로서 GmbH & Still²¹⁾, GmbH & Co.GbR, GmbH & Co.KG 등이 있음
- 이들 법적 형태별 주요 특징은 <표 II-9>와 같이 요약 가능함
- 인적회사들은 사원 모두, 또는 그 일부가 무한책임을 지며, 자본회사들은 사원들이 지분만큼의 유한책임을 짐
 - 인적회사들은 2인 이상의 사원이 필요하고 자본회사 중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1인부터 조직이 가능하고 협동조합은 최소 3인이 필요함
- 다양한 법적 형태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기준으로 Rüdiger W. & Ester-Maria P.(2014)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조직의 기본조건
 - 부채에 대한 책임관계
 - 자금융통 가능성
 - 해산신청 의무
 - 지분의 이전 가능성
 - 상속법 및 회사법상의 안정성 확보방안
 - 업무대표 및 감독권
 - 이익 및 손실참여
 - 석명제출, 검사, 공개 원칙
 - 일회적 또는 반복적 비용, 계약변경
 - 조세부담
 - 지원정책

21) 유한회사(GmbH) 중에서 암묵사원(stille Gesellschafter)을 둔 경우를 말한다. 암묵사원의 출자분은 회사의 자기자본으로 처리되며, 암묵사원은 보통 이윤에는 참여하지만 손실과 기업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Rüdiger W. & Ester-Maria P.(2014) 및 wikipedia.de 'GmbH & Still' 항목(접속일: 2018.9.16))

<표 II -9> 독일의 중요 회사조직 형태

형태	인적회사				자본회사		
	민법상 조합(GbR)	합명회사 (OHG)	합자회사 (KG)	GmbH & Co.KG	유한회사 (GmbH)	주식회사 (AG)	등록조합 (e.G.)
회사 규약	2인 이상 사원간 자유롭게	2인 이상 사원간 자유롭게	2인 이상 사원간 자유롭게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KG계약은 자유롭고, GmbH 계약은 공증필요, 최소 2인 이상	정관, 공증등록 필요. 1인부터	정관, 공증등록 필요. 1인부터	정관, 최소 3인
등기	불필요	상업등기 A	상업등기 A	KG: 상업등기A GmbH: 상업등기 B	상업등기 B	상업등기 B	협동조합 등기
부채에 대한 책임	회사자산과 개인자산으로	회사자산과 개인자산으로	회사자산으로 하되 무한책임 사원은 개인자산까지	GmbH는 전체 자산으로 책임지는 무한책임사원	최소 25,000 유로의 기초자본 (예외: 기업 회사(Unter nehmerge llschaft)는 최소 1유로)	최소 50,000 유로의 기초자본	정관상 정해진 각 조합원의 지분
대표	전 사원 공동	회사원이 단독대표	무한책임 사원 단독대표	GmbH가 무한책임 사원으로 단독대표	대표	이사회	이사회 (조합원 20명부터는 최소 2명)
사원의 권리, 의무	의결, 이윤참여 지분이전에는 다른 사원 동의 필요	의결, 이윤참여 지분이전에는 다른 사원 동의 필요	의결, 이윤참여	의결, 이윤참여	기본출자 의무, 표결 및 이익참여권, 대표선임, 지분탈퇴를 위해서는 공증 증명 필요	출자의무, 표결 및 이익참여권, 감독이사 선임, 주식양도는 자유	지분출자 의무, 표결 및 이익참여권, 이사 선임, 배당금 요구권
감독 이사회					임의 감독이사회	최소 3인으로 구성되는 법정 감독이사 회가 감사, 통제권, 총회소집 권을 가짐	조합원 21인 규모부터 3인 이상의 의무적 감독 이사회를 둠

자료: Dammholz(2011), p. 20

- 이 중 조세부담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함
 - 인적회사는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
 - 개별경영체는 소득세를 부담함
 - 법인세는 법인 즉 자본회사와 협동조합만, 협회, 재단 등이 부담함
 - 인적회사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 회사의 이윤은 단일체로 계산되어서 사원의 지분에 따라서 개인에게 귀속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 소득세의 경우 농림업 소득은 아래에 서술하는 특별대우를 받는데 단, 축산의 경우 ‘농업적 축산’과 ‘영업적 축산(gewerbliche Produktion)’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특별대우가 주어짐
 - 농업적 축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농용지당 가축두수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표 II -10〉 독일의 ‘농업적’ 축산 허용 두수

농용지 규모 구간	면적당 한계적 허용두수(VE/ha)	구간 상한에서의 최대 허용두수	구간 상한에서의 면적당 최대 평균두수(VE/ha)
~20	10	200	10
20~30	7	270	9
30~50	6	390	7.8
50~100	3	540	5.4
100~	1.5	.	.

자료: Rüdiger W. & Ester-Maria P.(2014)

- 영업세는 영업체(Gewerbe)를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경영조직이 영업체인지 여부는 그 법적 형태에 따라서 정해지거나 그 활동에 따라서 정해짐(Rüdiger W. & Ester-Maria P., 2014, p. 47)
 - 법적 형태가 자본회사이거나 협동조합이면 그 활동과 무관하게 영업체로 간주됨
 - 인적회사가 농림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영업적 농림업이 아닌 한 영업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 경영체의 법적 형태에 따라서 아래의 예가 보여주듯이 세부담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음

<표 II - 11> 독일의 유한회사와 민법상 조합의 세부담 예시(2014년 현재)

(단위: 유로)

	유한회사(GmbH)	민법상 조합(GbR)
1. 회사 단계 세부담		
세전 이익	100,000	100,000
영업세		
$100,000 \times 3.5\% \times 400\%$	14,000	
$(100,000 - 24,500) \times 3.5\% \times 400\%$		10,570
법인세(15%)	15,000	
통일연대세(법인세 × 15%)	825	
영업세+법인세+통일연대세	29,825	10,570
2. 사원 단계 세부담		
배당가능이익	70,175	100,000
소득세		
GmbH 사원에 대한 Abgeltungsteuer $(70,175 \times 25\%)$	17,544	
GbR 사원에 대한 개인소득세 $(100,000 \times 42\%)$		42,000
영업세 상쇄 $(100,000 - 24,500) \times 3.5\% \times 3.8$		-10,041
통일연대세 $(17,544 \times 5.5\%)$ $(42,000 - 10,041) \times 5.5\%$	965	1,758
소득세+통일연대세	18,509	33,717
3. 지분참여로 인한 세부담 총계		
회사단계	29,825	10,570
사원단계	18,509	33,717
총부담	48,334	44,287

자료: Rüdiger W, & Ester-Maria P.(2014)

□ 독일의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 분포를 보면 동서독 간에 차이가 확연함

- 동독지역에서는 구 사회주의의 유산으로 대형경영체들이 일반적인 가운데, 개별경영체의 숫자가 가장 많지만 농용지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며, 반면 인적회사와 사법상(私法上)의 법인의 숫자상 비중이 각각 13~15% 정도에 달하고, 특히 후자가 농용지의 50%를 점하고 있음
- 서독지역에서는 개별경영체의 숫자와 농용지 점유율이 매우 높지만, 인적회사가 경영체 숫자 중 9%, 농용지 중 17%를 점하여, 평균적 경지면적이 개별경영체의 두 배임

<표 II -12> 독일의 농업경영체 법적 형태 분포

법적형태	2010년					2016년				
	경영체		농용지		평균 경지 규모 (ha)	경영체		농용지		평균 경지 규모 (ha)
	수	비율 (%)	1000ha	비율 (%)		수	비율 (%)	1000ha	비율 (%)	
동독										
개별경영	17,723	72.5	1,463.7	26.4	83	17,624	71.5	1,518.4	27.5	86
인적회사	3,204	13.1	1,236.8	22.3	386	3,366	13.6	1,231.7	22.3	366
그 중										
GbR	2,412	9.9	780.8	14.1	324	2,425	9.8	732.7	13.3	302
OHG	10	0.0	6.3	0.1	631	17	0.1	10.1	0.2	594
Kom	232	0.9	124.9	2.3	538	255	1.0	129.2	2.3	507
기타	550	2.2	324.8	5.9	590	669	2.7	359.7	6.5	538
私法上 법인	3,484	14.2	2,840.5	51.2	815	3,626	14.7	2,764.8	50.1	762
그 중										
등록조합	983	4.0	1,381.2	24.9	1,405	925	3.8	1,275.0	23.1	1,378
유한회사	2,246	9.2	1,359.3	24.5	605	2,455	10.0	1,392.7	25.2	567
주식회사	82	0.3	89.3	1.6	1,089	77	0.3	86.7	1.6	1,126
기타	173	0.7	9.4	0.2	54	169	0.7	10.4	0.2	62
公法上 법인	44	0.2	6.1	0.1	138	44	0.2	5.2	0.1	118
합계	24,455	100	5,547.2	100	227	24,660	100	5,520.0	100	224
서독										
개별경영	254,465	93.0	9,601.8	86.3	38	225,880	90.4	9,144.7	82.3	40
인적회사	17,704	6.5	1,422.6	12.8	80	22,247	8.9	1,855.1	16.7	83
그 중										
GbR	15,107	5.5	1,291.0	11.6	85	18,769	7.5	1,666.4	15.0	89
OHG	67	0.0	2.3	0.0	35	75	0.0	3.4	0.0	45
Kom	748	0.3	75.0	0.7	100	1,821	0.7	109.8	1.0	60
기타	1,782	0.7	54.3	0.5	30	1,582	0.6	75.5	0.7	48
私法上 법인	1,110	0.4	69.9	0.6	63	1,434	0.6	81.5	0.7	57
그 중										
등록조합	84	0.0	6.5	0.1	77	102	0.0	6.9	0.1	68
유한회사	582	0.2	25.6	0.2	44	820	0.3	34.0	0.3	41
주식회사	29	0.0	7.2	0.1	249	30	0.0	6.4	0.1	213
기타	415	0.2	30.6	0.3	74	482	0.2	34.2	0.3	71
公法上 법인	397	0.1	37.8	0.3	95	349	0.1	33.0	0.3	95
합계	273,676	100	11,132.1	100	41	249,910	100	11,114.4	100	44

주: GbR=민법상의 조합, OHG=합명회사와 유사함, Kom=합자회사와 유사함
 자료: BMEL,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17

- 특히 서독지역에서는 인적회사의 절대 숫자와 그것이 전체 경영체 숫자 및 농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
 - 전체 경영체의 숫자가 2010년 27만 4천개에서 2016년 25만개로 감소하는 가운데 인적회사의 숫자는 1만 7,700개에서 2만 2,200개로 증가하였음
 - 이것은 개별경영의 숫자가 25만 4천개에서 22만 6천개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임
 - 경영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기간 6.5%에서 8.9%로 농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서 16.7%로 증가하였음
 - 동독에서와는 달리 서독에서는 인적회사들의 평균 농용지 규모(2016년 83ha)가 사법상의 법인들(57ha)에 비해서 더 크다는 특징이 있음
 - 인적회사들 중에서는 민법상의 조합이 경영체 숫자 면에서나 농용지 점유 측면에서나 압도적으로 중요한 형태임

- 독일 연방농림부가 보고하고 있는 표본농가의 부기(簿記)결과에 입각해서 동독지역 내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영체들과 주업경영체(Haupterwerbsbetrieb)(개별경영체와 인적회사)의 생산요소부존과 자산, 경영결과, 조세부담을 비교해보면 양자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줌
 - 동독지역 법인은 절대적인 요소부존 규모가 크면서 특히 토지중심 생산에 특화되어 있고 부채비율이 높음
 - 2016/2017년 기준 경지면적은 주업농의 13배, 노동력은 약 10배, 자산규모는 약 7배임
 - 주업농의 평균 노동력 규모가 2.2인(AK)으로 소규모이고 그 중 가족 노동력이 1.4인으로 비중이 높은 것과 대조적으로 법인은 평균 노동력 규모가 21인에 이르지만 가족노동력은 없음
 -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주업농은 31%인 데 비해서 법인은 71%로 훨씬 높으며, 부채 중 대(對)금융기관 부채의 비율은 각각 84%와 80%로 큰 차이가 없음
 - 단위 면적당 동물사육밀도는 주업농의 절반 수준으로 동독지역 법인의 중점이 토지집약적 농산물 생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자와 ha당 세금 공제전 경영수지는 주업농은 770유로인 반면 법인은 99유로에 불과하여 후자는 전자의 13%에 불과했고, 자산총액 대비 경영수지 비율도 주업농은 7.1%인 데 비해 법인은 1.8%에 불과했음

- 반면, ha당 조세부담은 주업농이 17유로이고 법인이 15유로이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음
- 따라서 경영수지 대비 세부담(소득과 수입에 대한 세부담) 비율은 주업농이 2.2%이고 법인이 15.2%로 법인의 부담이 훨씬 크게 나타남

<표 II -13> 독일의 주업농과 법인 비교(2016/2017)

	주업농(개별경영과 인적회사)(A)	법인(B)	B/A
경지면적(ha)	88.5	1165.6	13.2
임차지(ha)	50.4	792.0	15.7
노동력(AK)	2.2	21.0	9.5
가족노동력(AK)	1.4	0.0	0.0
동물사육밀도(VE/100ha)	136.1	74.6	0.5
시설자산(유로/ha)	9817	3818	0.4
동물자산(유로/ha)	618	331	0.5
유동자산(유로/ha)	1,075	1,406	1.3
자산총액(유로)	959,939	6,315,526	6.6
자산총액(유로/ha)	11,584	5,593	0.5
자기자본(유로/ha)	8,633	3,074	0.4
부채(유로/ha)	2,693	2,190	0.8
對금융기관부채(유로/ha)	2,259	1,743	0.8
경영수지(유로/ha)	770	99	0.1
경영비용(유로/ha)	3,350	2,579	0.8
이자수지(유로/ha)	-62	-49	0.8
조세(유로/ha)	-17	-15	0.9
세후 이윤(유로/ha)	690	35	0.1

자료: 독일 연방 농식품부²²⁾

- 이상을 볼 때 동독지역의 농업생산자들은 조세 등 부담에도 불구하고 토지집약형 대형농장의 경영에 더 적합한 법적 형태로 법인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임
 - 단, 법적 형태의 선택에는 순수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려 이외에도 1990년 이전까지 구동독 시기에 대형 국영농장(VEB) 및 협동농장(LPG)이 존재했던 역사적 조건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2) 독일연방 농식품부,

<https://www.bmel-statistik.de/landwirtschaft/testbetriebsnetz/testbetriebsnetz-landwirtschaft-buchfuehrungsergebnisse/archiv-buchfuehrungsergebnisse-landwirtschaft/buchfuehrungsergebnisse-landwirtschaft-201617/>, 검색일자: 2018.8.8

나. 농업인에 관한 일반적 조세특례

- 독일의 조세체계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토지세, 상속증여세, 자동차세, 에너지세 등에서 농림업에 대한 특례조치를 두고 있음

〈표 II -14〉 독일의 농업 관련 조세특례

세목	특례
소득세	- 농림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특별공제(1인 900유로, 부부 1,800유로) - 소규모(농용지 20ha 이하) 농업경영체 대한 표준율에 의한 소득계산 - ‘농업적’ 축산의 경우 그 손실을 다른 종류의 소득과 상계 가능
법인세	- 농림업 경영체에 대한 용역제공만을 행하는 협동조합은 법인세 면제 - 협동조합 또는 협회 형태의 농업생산단체(Produktionszusammenschluss)에 대해서는 설립연도와 그 후 9개년에 걸쳐서 15,000유로 공제
영업세	- 농림업에 대한 서비스 또는 회원이 생산한 농림산물의 가공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영업세를 면제 - 공동축산을 행하는 인적회사들과 협동조합에 대해서 면제 - 농림업 경영만을 행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면제
부가가치세 ¹⁾	- 대부분의 농산물은 7%로 저율과세됨(기본세율은 19%) - 농업경영체는 평균치에 근거하여 간이과세의 대상이 됨. 통상 10.7%가 적용됨
토지세	- 농업경영체에 자기책임이 아닌(예: 가뭄 또는 홍수 등의 사유) 상당한 조소득(Rohertrag) 감소가 있는 경우 세액감면(50% 이상 생산 감소의 경우 25% 세액감면, 100% 생산 감소의 경우 50% 세액감면)
상속증여세	- 농업경영체는 상속 후 15년간 농업경영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경영수익 또는 임차료를 자산화하여 과세표준으로 함(통상적인 거래가액 기준에 비해서 우대되는 결과가 됨)
자동차세	- 농업전용 동력이동기 및 부속기(Anhänger)는 면제
에너지세	-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기에 대해서 전기세 면제 - 제조업과 농림업에 대해서는 전기세율 감면(기본세율 MWh당 20.5유로를 15.37유로로 인하) - 제조업과 농림업에 대해서는 난방유, 가스, 액체가스에 대해서 저율과세 - 디젤유에 대해서는 저율과세
보험세	- 보험가액이 4,000유로를 넘지 않는 경우 가축보험에 대해서 면제 - 우박, 폭풍, 서리, 폭우, 범람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세금감액

주: 이태호 외(2016)의 자료를 업데이트 함.

- 1) 부가가치 평균율과세제도에서 내수면어업(Binnenfischerei)활동은 농림업과 같이 취급한다(부가가치세법 제24조 (1). 1항). 또한 소득세법상 내수면어업은 농림업 소득으로 취급한다(소득세법 제13조 1호의 2).

자료: BMEL,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18

□ 소득세 개요

-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며 과세대상 소득(Einkünfte)은 다음의 7가지로 분류됨
 -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자영노동(자유직업)소득, 비자영 노동(근로소득)소득, 자본소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 농림업 소득
- 농림업소득, 사업소득, 자영노동 소득의 경우 과세대상 소득은 ‘이윤(Gewinn)’이며 이것은 영업자산의 증가로 산정하거나 경영수입에서 경영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산정함
- 세율은 다섯 개 구간에 걸쳐서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두 번째와 세 번째 구간에서는 한계세율이 계단형이 아니고 과세표준에 대한 선형함수임

<표 II -15> 독일의 소득세액 결정세액

구간(유로)	세액
~9,000	0
9,001~13,996	$(997.8 y + 1,400)y$
13,997~54,949	$(220.13z + 2,397)z + 948.49$
54,950~260,532	$0.42x - 8,621.75$
260,533~	$0.45x - 16,437.7$

주: $y=(\text{과세표준} - 9,000)/10,000$, $z=(\text{과세표준} - 13,996)/10,000$, $x=\text{과세표준 총액}$
 자료: 독일연방 법무부²³⁾

□ 법인세 개요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며 법인세 징수 후 법인의 사원에게 배당된 이윤은 다시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됨
- 법인세율은 15%임

□ 부가가치세 특례

- 농림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7%로 일반세율(19%)보다 낮음

23) 독일연방 법무부,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BJNR010050934.html>, 검색일자: 2018.8.11

- 경영체는 일반적 과세와 ‘평균율’(농업 10.7%, 임업 5.5%) 방식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후자를 선택하면 농림산품 공급자는 세부담이 없게 되며, 공급받는 자는 평균율에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됨

□ 소득세

- 개인 또는 민법상의 조합(GbR)의 사원은 농림업 소득에 대해서 개인당 900유로의 공제를 받음
 - 이 공제는 농림업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소득종류까지 합산 소득의 총계가 30,700유로를 넘지 않아야 함
 - 부부가 합산하여 신고할 경우에는 앞의 공제액과 소득한계가 두 배로 적용됨(소득세법 제13조 3항)
- 소규모 농업경영체(개인 및 민법상의 조합)의 경우 평균율 소득계산의 적용이 가능함(소득세법 제13조 a)
 - 350유로/ha를 기본으로 하되 동물단위(VE)가 26을 넘으면 300유로/VE를 추가
- 위의 평균율 소득계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납세의무자가 법령에 의한 기장의무를 지고 있지 않음²⁴⁾
 - 5월 15일 기준으로 경영되는 농용지가 있고 그 면적이 20ha를 초과하지 않음
 - 동물사육 규모가 50단위 이하
 - 임업적 사용 경영 면적이 50ha 미만
 - 특별이용(Sondernutzung)되는 경영 면적이 일정규모를 넘지 않음(예를 들어 포도주용 포도 재배 0.66ha)

□ 축산업 손실의 상계

- 농업경영체는 축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종류의 소득(Einkunftsarten)과 상계(相計)할 수 있으나, 기업적 축산경영으로부터의 손실은 상계하지 못함(소득세법 제15조 4항)
 - 농업경영체와 기업적 축산경영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앞에서 언급한 ‘농업소득’의 정의에 언급된 면적당 가축사육두수임

24) 독일의 Abgabenordnung에 따르면 기장의무는 매출액이 60만유로를 초과하거나, 평가법에 따른 농지의 경제가치(Wirtschaftswert)가 ha당 25,000유로를 초과하거나, 이윤이 연 6만유로를 초과할 경우 발생함

다. 농업관련 조합, 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영업세 특례

□ 법인세 관련

- 법인세 납세의무는 자본회사(주식회사(AG), 유한회사(GmbH)), 등록조합(eingetragene Genossenschaft) 및 민법상의 법인들이 지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 결합인 민법상의 조합(GbR), 합자회사(KG, OHG) 등은 납세의무를 지지 않음(법인세법 제1조)
- 농림업경영체에 대해서 다음에 열거한 서비스만을 행하는 협동조합(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은 법인세를 면제받음(동법 제5조 1. 14항)
 - 농림업용 경영시설의 공동이용
 - 조합원의 경영체의 농림산물의 생산을 위해서 서비스 또는 작업계약방식으로 제공하는 용역(예: 기계공동이용조합(Maschinenring))
 -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농림수산물에 대한 농림업의 범주에 속하는 가공 및 판매
 - 조합원의 경영체가 생산한 농림산물의 생산과 판매에 대한 컨설팅
- 농업 또는 임업생산 활동만을 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농업생산 생산협업체(Produktionszusammenschluss)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설립 당해 연도와 그 후 9년 동안 연간 15,000유로를 공제받을 수 있음(동법 제25조)
 - 단, 조합원이 조합에 농용지나 농용지의 이용에 필요한 건물을 양도한(überlassen) 경우에 한하며, 각 조합원의 지분이 양도한 농용지나 건물의 지분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함

□ 영업세 관련²⁵⁾

- 영업세 납세의무는 자본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짐(영업세법 제1, 2조)
- 인적회사(GbR, OHG, KG)가 농림업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업세를 면제받음(동법 제1, 2조)
 - 인적회사가 농림업 이외의 영업활동을 행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는 전체로서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개인과는 달리 영업부문을 분리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음

25) 기초자치단체(Gemeinde)에 귀속되는 가장 중요한 세금임. 2016년 기준 세수가 약 501억유로로 기초자치단체 세수의 76.7%, 독일정부 전체 세수의 7.1%였음. 참고로 같은 해 다른 주요 세목 세수는 임금소득세 1,848억유로, 법인세 274억유로, 부가가치세 2,171억유로였음.

- 농림업 경영체에 대한 서비스, 조합원이 생산한 농림산품을 가공 및 판매 (Verwertung)하는 일에 집중하는 협동조합은 영업세를 면제받음(동법 제5조 1. 14항)
- 인적회사(GbR, KG, OHG) 및 협동조합은 공동 축산(gemeinschaftliche Tierhaltung)을 하는 경우에 영업세를 면제받음(동법 제3조)
- 농업 또는 임업생산 활동만을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에 농용지나 농용지의 이용에 필요한 건물을 양도한(überlassen) 경우에, 영업세를 면제받음(동법 제3조)
 - 단, 조합원이 조합에 농용지나 농용지의 이용에 필요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 한하며, 각 조합원의 지분이 양도한 농용지나 건물의 지분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함

4. 영국

- 영국의 농업경영체 규모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크지만, 법적 형태 중 법인의 비율은 2016년 기준 3% 수준이며 대부분의 경영체는 사적 파트너십 형태로 조직되어 있음²⁶⁾

<표 II -16> 영국의 농업경영체 숫자와 경영규모

연도		2005	2007	2010	2016	비율(2016)
경영체 수 (개)	전체	286,750	226,650	185,200	185,060	1.00
	자연인	274,040	214,470	177,840	179,430	0.97
	법인	12,700	12,180	7,370	5,500	0.03
평균 농용지 (ha)	전체	56	72	91	90	
	자연인	49	65	78	79	1.00
	법인	197	206	401	248	3.14
평균 생산액 (유로)	전체	65,197	76,344	105,588	137,271	
	자연인	54,876	65,231	96,638	131,319	1.00
	법인	320,895	272,026	321,431	334,431	2.55
평균 직접고용자 (연간노동단위)	전체	1.18	1.35	1.43	1.54	
	자연인	1.09	1.24	1.39	1.5	1.00
	법인	3.21	3.35	2.61	2.9	1.93

자료: 유럽연합 통계청 연감²⁷⁾

26) Van Der Veen et al.(2007)

27) 유럽연합 통계청 연감, <http://ec.europa.eu/eurostat/web/agriculture>, 검색일자: 2018.8.12

- 전체 경영체 숫자가 2005년 28만 6천개에서 2016년 18만 5천개로 감소하는 가운데 법인의 숫자는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서 전체 경영체 중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4%에 비해서 2016년 2.97%로 감소하였음
 - 법인은 농용지, 생산액, 고용자 등 측면에서 개인보다 크지만, 특히 농용지가 2016년 기준으로 개인경영체에 비해서 3배 이상으로 큼
 - 생산액은 33만파운드로 2.55배, 직접고용자 수는 2.9명으로 1.93배임
- 이상에서 볼 때 영국은 생산요소 부존 면에서 법인과 개인의 격차가 독일이나 일본만큼 크지는 않지만, 역시 토지집약도가 높은 분야에서 그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득세 개요
- 중요한 공제로는 자영자 소득 기본공제(1천파운드), 임대소득 기본공제(1천파운드), 배당금 공제(2천파운드) 등이 있음²⁸⁾
 - 세율은 아래의 표에 보인 바와 같이 누진세율을 가짐

<표 II -17> 영국의 소득세 세율체계

소득구간	과세대상 소득(파운드)	한계세율(%)
기본공제구간(personal allowances)	~11,850	0
기본세율(basic rate)	11,851~46,350	20
고세율(higher rate)	46,351~150,000	40
추가세율(additional rate)	150,000 초과	45

자료: 영국 정부²⁹⁾

- 배당금 기본공제 액수를 넘어서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한 소득금액이 속하는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차별화된 세율로 과세됨
 -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소득세의 세율에 비해서 기본세율 구간에서는 매우 낮으며(20% 대비 7.5%) 고세율 구간 및 추가세율 구간에서도 각각 7.5%p 및 6.9%p씩 낮음

28) 영국 정부, <https://www.gov.uk/income-tax>, 검색일자: 2018.8.12

29) 영국 정부, <https://www.gov.uk/income-tax-rates/current-rates-and-allowances>, 검색일자: 2018.8.12

<표 II -18> 영국의 배당소득 세율(배당소득 공제 초과분)

과세구간	세율(%)
기본세율	7.5
고세율	32.5
추가세율	38.1

자료: 영국 정부³⁰⁾

- 농업과 관련하여 중요한 규정으로는 다년간에 걸친 소득 균분(averaging relief) 과세가 있음³¹⁾
 - 2년 또는 5년 중 택일하여 균분과세를 신청할 수 있음
 - 2년에 걸친 균분과세 신청을 위해서는 2018년도의 경우 2개년도 소득 차이가 소득이 더 높았던 해의 소득에 비해서 25%를 초과해야 함
 - 2018년의 경우 5년 균분과세 신청은 2016/2017년도 소득과 그 이전 4년간 소득의 평균 간의 격차가 그 중 더 큰 것 대비 25%를 초과해야 함
 - 평균소득계산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해의 소득은 0으로 처리함
- 농업에만 국한되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작은 농업생산자들에게 중요한 제도로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가 있음³²⁾
 - 투자에 대해서 매년 일정한 한도까지 전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2008년도 도입되었음
 - 이 제도는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파트너, 그리고 회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음
 - 대상이 되는 지출은 장비, 기계, 업무용 차량 등임
 - 한도액은 제도 도입 이래 여러 차례 바뀌었으며, 원래 법정액수는 2012년 2.5만 파운드였으나 그 후 임시로 25만파운드, 50만 파운드로 상향 운용되다가 2016년에 법정액수가 20만파운드로 정해졌음

30) 영국 정부, <https://www.gov.uk/tax-on-dividends>

31)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farmers-and-market-gardeners-hs224-self-assessment-helpsheet/hs224-farmers-and-market-gardeners-2017>, 검색일자: 2018.8.12

32) 인베스토피아, <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nnual-investment-allowance-aia.asp>

<표 II -19> 영국의 연간투자공제 한도액

자영자/파트너	유한회사	한도액(파운드)
2008.4.6. - 2010.4.5	2008.4.1. - 2010.3.31.	50,000
2010.4.6. - 2012.4.5.	2010.4.1. - 2012.3.31.	100,000
2012.4.6. - 2012.12.31.	2012.4.1. - 2012.12.31	25,000
2013.1.1. - 2014.4.5	2013.1.1. - 2014.3.31.	250,000
2014.4.6. - 2015.12.31	2014.4.1. - 2015.12.31.	500,000
2016.1.1. -	2016.1.1. -	200,000

자료: Hawsons Chartered Accountants³³⁾

영국 정부³⁴⁾

□ 법인세(corporation tax) 개요³⁵⁾

- 법인세는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 영국에 지점이나 사무실을 둔 외국 회사, 단체(club), 협동조합, 기타 조합(uncorporated association) 등이 부담함
- 납세의무자의 사업, 투자, 자산매각으로부터의 이윤(profit)에 부과됨
- 세율은 19%로 단일함
- 중요한 공제 항목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투자공제 이외에 연구개발, 특허소득, 비법인 조직으로 전환, 자산 감소 및 재산소득 감소(capital and property income losses) 등이 있음

5. 프랑스

가. 프랑스의 협동조합

- 2015년도 매출액 기준 전 세계 상위 협동조합 10개 중 4개가 프랑스 기관일 정도로 협동조합이 발달한 국가임
- 2016년 기준 약 22,500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합원 수는 약 2,750만명으로 프랑스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하고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프랑스 전체 근로자의 약 5.5%에 해당함³⁶⁾

33) Hawsons Chartered Accountants, <https://www.hawsons.co.uk/tax-opportunities-for-uk-farmers/>

34) 영국 정부,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annual-investment-allowance-permanent-increase-to-200000>

35) 영국 정부, <https://www.gov.uk/corporation-tax>

36) Coop FR 홈페이지, <https://www.entreprises.coop/>, 검색일자: 2018.4.5

- 프랑스는 법제적으로 협동조합 전체에 적용하는 공통법(Loi n° 47-1775 du 10 septembre 1947 portant statut de la coopération)과 각각의 협동조합 활동 분야 관련 일반법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함
 - 예를 들어, 모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공통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동시에 은행 형태의 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 소매업협동조합은 상법 일부, 농업협동조합은 농촌법 일부, 건설업협동조합법인 및 공공주택조합은 건축법 일부를 근거로 관리함
 - 상대적으로 공통법의 적용을 더 많이 받는 조합은 은행 형태의 협동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이며 나머지 기관은 설립 목적과 조합원 조건, 배당 관련 규정 등이 관련 일반법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 일반법의 적용을 더 많이 받음

나. 프랑스 협동조합 관련 세제

- 협동조합이 벌어들인 수익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협동조합이 개인 회사의 형태인 경우 개인소득세, 법인의 형태인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³⁷⁾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조합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를 면제함
 - 즉, 비조합원과의 거래는 과세대상이며 전체 매출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투자조합원의 지분이 50%를 넘으면 조합원 간의 거래에 의한 소득이라도 과세면제가 취소됨
- 협동조합에 투자한 자에 대한 세제혜택 중 일부만이 조세지출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
 - 프랑스 세법 중 유동자산의 소득에 대한 면세 관련 항목에서 농업 관련 상호 신용기관과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이자 등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를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조세지출로 분류되지 않음
 - 농업협동조합 지분에 투자한 금액 자체에 대하여 소득공제하는 특례만을 조세지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음

37) 손원익·송은주·홍성열,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다. 조세지출이 아닌 특례제도

1) 농업 관련 기관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

- 농업 관련 상호신용기관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채권 또는 지분에의 투자를 통해 얻게 된 자본소득금액은 과세소득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함
 - 원칙적으로 채권이자와 예금이자를 포함한 이자소득 형태의 자본소득은 10%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지만 위에 명시한 농업 관련 기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받은 이자는 소득세가 면제됨

- 프랑스 일반세법 소득세 부분에는 농업 관련 기관만을 명시하고 있어 다른 분야의 조합을 포함한 기관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농업 관련 기관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조합에 투자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농업분야 투자 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라. 조세지출로 분류·관리되는 특례제도

1)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에의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농업분야 지원을 위해 1986년 관련법이 신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에의 투자를 포함하여 농축산물 생산액 또는 구입액에 대하여 소득세 산정 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임
 - 납세자인 농민을 수혜대상자로 하며 관련 협동조합의 지분을 취득한 경우 또는 다년생인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구입한 경우 해당액에 대하여 연간 소득공제 한도 27,000유로 내에서 5년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2016년 기준 약 40,800개의 관련 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협동조합 지분을 취득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수혜자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협동조합은 농산물 생산 및 치즈 가공, 와인 제조 협동조합과 임업협동조합, 각 협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을 포함함

**<표 II -20> 농업협동조합 등 지분예의 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의 연도별
조세지출규모 추이**

(단위: 백만유로)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소득세	260	150	100	78	nc	nc
합계	260	150	100	78	nc	nc

주: nc는 수치화 불가능함을 나타냄

자료: République Française, *Évaluation des Voies et Moyens: Dépenses Fiscales*, 각 연도

6. 시사점

- 앞에서 일본, 독일, 영국의 경우 모두 인적회사 및 법인 형태의 조직들은 개인경영체에 비해서 큰 요소부존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토지 부존이 많음
 -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족농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규모 경영체가 형성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인적회사 및 법인 형태의 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법인 형태의 경영체들이 개별경영체에 비해서 조세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농업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전제조건이라 판단됨

- 앞에서 살펴본 일본, 독일, 영국은 우리와 같이 소득세법상 작물재배를 비과세로 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법인 형태를 취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 비법인 농업경영체에 비해서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별도의 특례를 필요로 하지 않음

- 그러나 각국의 일반 경제정책 또는 농업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농업법인 또는 농업관련 협동조합에 다양한 조세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일본은 법인세제상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세 유인을 두고 있음
 - 이러한 특례들은 대부분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농업분야의 특징을 반영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 예컨대 농업경영기반강화준비금제도의 경우 정부의 경상적 지원금(직접지불금)을 투자적 용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는 ‘기업적 농업’에 대비되는 ‘농업적 생산’에 대해서 조세지원을 집중하고 있는 점이 중요한 특징임
 - 이것은 특히 축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 즉 소득세법상의 농림업 소득공제, 축산경영 손실의 다른 소득과의 상계 등의 규정에서 나타남

- 또한, 독일은 조세상의 특별대우를 농업생산 또는 농업생산을 위한 서비스 제공만을 전적으로 하는 조직에 집중한다는 특징이 있음
 - 법인세법상 농업경영체에 대한 서비스만을 행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면세, 농업경영만을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장기(9년)에 걸친 공제를 허용함
 - 영업세법상 농림업만 수행하는 인적회사, 협동조합에 대한 면세, 농업경영체에 대한 서비스만을 행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면세 등을 시행하고 있음

- 영국은 유럽 국가 중 농업경영체의 대형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나라이므로 농업분야에서 법인을 육성하여 규모화를 이룬다는 정책목표는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농업법인에 대해서 특별한 조세 유인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일정한도액 이하로는 장비, 기계투자액 모두를 간단히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 사업 일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 단, 가격과 작황에 따라서 소득이 불안정한 농업의 특징을 반영하여 2년 또는 5년의 이익을 합산평균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Ⅲ. 타당성 평가



Ⅲ. 타당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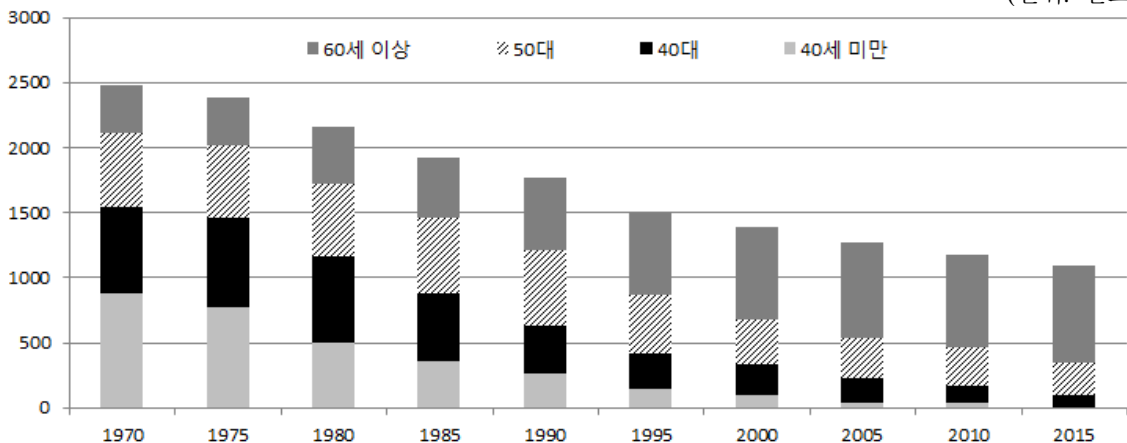
1. 정부 개입의 정당성

가. 산업여건

- 농어업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와 그에 따른 구조적인 노동공급 부족으로 해당 산업의 저생산 구조가 고착화됨
 - 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구조적인 노동공급 부족, 저생산성 구조가 농어촌 지역 생산기반 구조의 일반적인 특성임
 -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연령인구(생산가능연령인구)의 절대수 및 비중의 감소와 (특히 젊은 세대의)향도이농 등으로 인한 농어촌 공동화 현상 등이 지적됨
 - 인구 감소가 인당 생산면적의 확대에 전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인구 감소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으나([그림 Ⅲ-1] 참고), 1990년대 이후 농가 경지규모는 대규모 경지(3ha 이상) 비율과 소규모 경지(0.5ha 미만) 비율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어 양극화 양상이 나타남([그림 Ⅲ-2] 참고)

[그림 Ⅲ-1] 연령별 농가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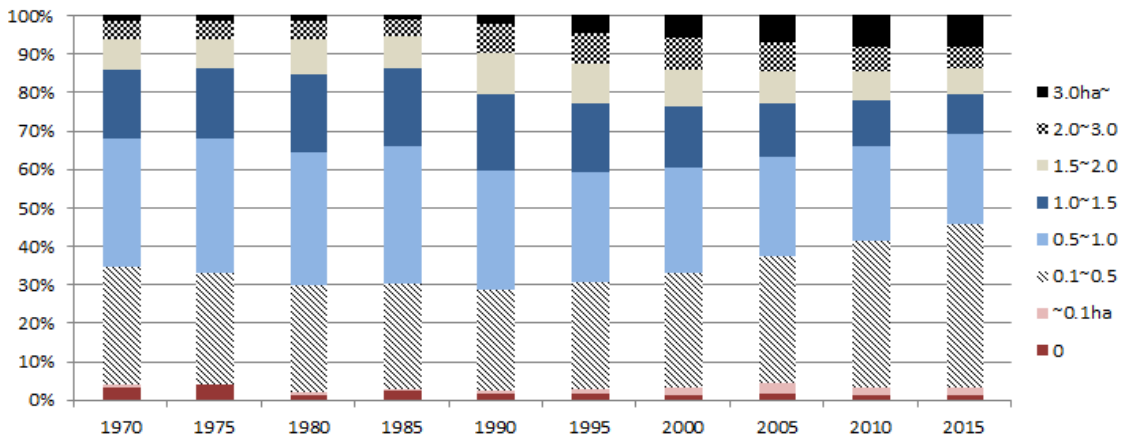
(단위: 천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소규모 영세농어업 방식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현대식 장비를 이용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커서 산업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여건임
- 고령의 경작인은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대식 장비를 들여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이는 농업부문의 낮은 생산성 및 그로 인한 농가소득의 부진 요인으로 귀결됨

[그림 III-2] 경지규모별 농가호수 비중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시장 인프라(market infrastructure)의 미성숙으로 인해 시장의 불비성, 즉 시장 불완전성(imperfect market)이 존재함
 - 전근대적인 소규모 농어업 생산·유통구조의 성숙도 미흡 및 선진화 부진
 - 복잡한 유통 구조와 경로 등에 따른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로 채널이 미성숙되어 농어촌 지역발전이 미흡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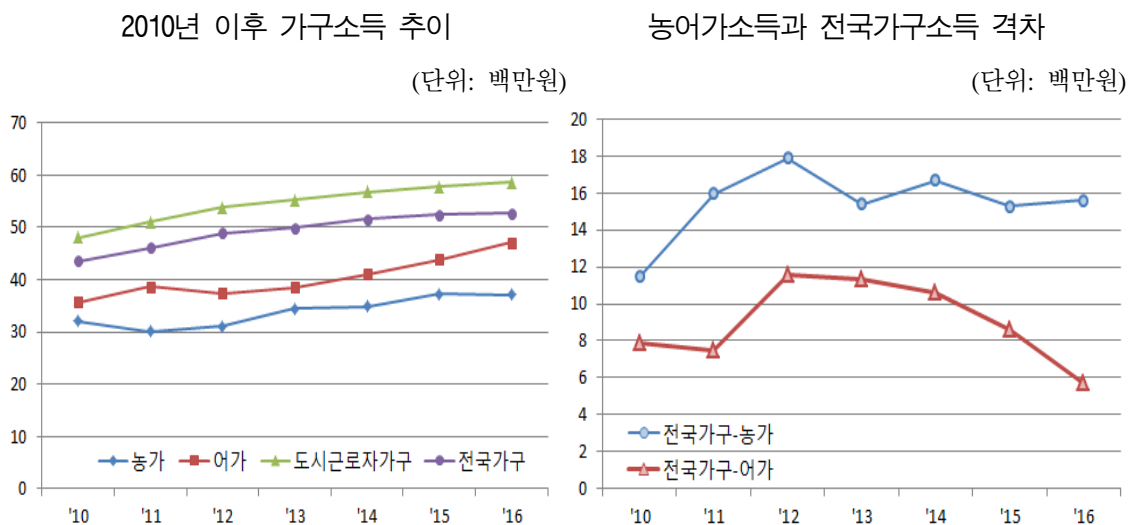
- 또한, 농어업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결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 경로 채널 미성숙의 배경에는 말단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의 사이에서 정보 비대칭성과 정보력의 차이 등이 존재함
 - 생산자의 유통 경험이나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여 이를 활용한 유통단계의 높은 마진이 지속됨

- 생산자 단계의 한계생산비용(marginal cost)과 최종수요(소비자) 단계의 한계수입(marginal revenue) 사이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함
 - 양자 사이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데에는 높은 유통마진과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침
-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가 모두 사회적으로 극대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농어가소득은 여전히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농가의 경우 전국 평균과의 격차가 꾸준히 1,600만원 수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다만, 여기는 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으며, 전국가구와의 소득격차도 최근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보다 구체적인 가구소득 비교분석 결과는 제Ⅳ장 효과성 평가를 참고할 것
 - [그림 Ⅲ-3]은 통계현황을 그대로 옮긴 결과이며, 이에 대해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제Ⅳ장에서는 2000년부터의 미시자료에서 2인 이상 가구만으로 조건을 동일하게 놓고 분석을 진행함
 - 또한, 제Ⅳ장에서는 소득분위별 분석 및 연령 분석, 가구원 수 분석 등을 함께 진행함

[그림 Ⅲ-3] 가구소득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통계청

나. 농업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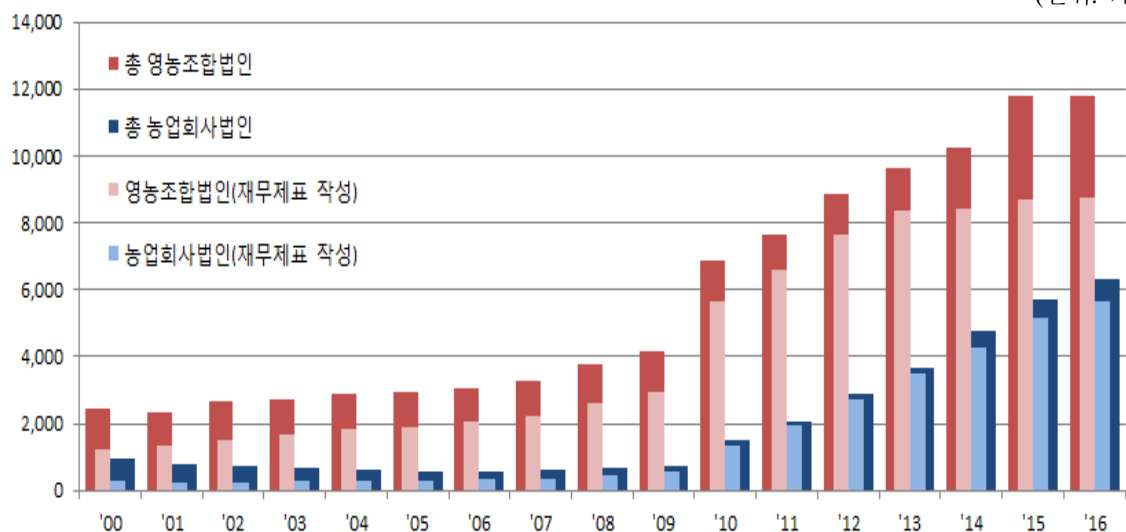
-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모두 2009년도 이후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은 총 1만 1,779개이며, 농업회사법인은 총 6,309개임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80%가량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어 농업부문의 회계 투명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
 - 2016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74.1%인 8,727개 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89.3%인 5,634개 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인 농민들이 재무제표 등의 회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에서 법인화가 농업이라는 산업의 재무적 정보를 보다 풍부하게 축적할 수 있는 토양과 기반이 될 수 있음

- 참고로, 어업법인의 경우도 2000년에는 496개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에는 영농조합법인 946개, 어업회사법인 138개 등 총 1,084개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통계청, 농어업법인조사, 해양수산부, 어업법인조사)
 - 그렇지만 농업법인의 증가세에 비하면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낮으며, 총법인 수도 농업법인의 6% 수준(2016년 기준)에 불과함

[그림 III-4] 2000년대 농업법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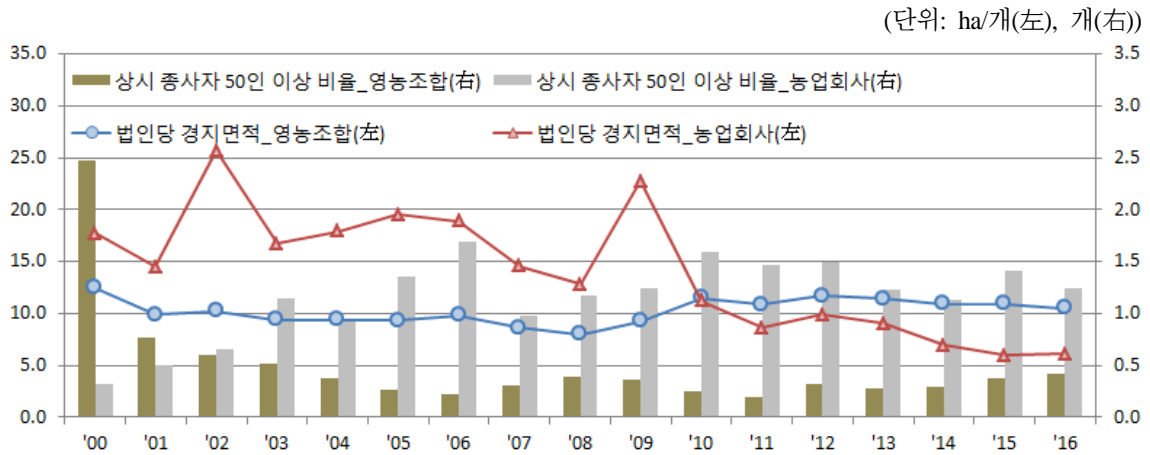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

- 한편, 농업법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농업법인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2010년 이후 상시 종사자 50인 이상 농업법인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법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큰 변동이 없음
 -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법인도 2011년에는 영농조합법인이 179개, 농업회사법인이 129개였으나, 2016년에는 영농조합법인 196개, 농업회사법인 346개로 증가
 - 2010년 이후 법인당 경지면적은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감소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농업법인들의 사업에서 농업생산보다 가공·유통·농업서비스 등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지면적 비교로는 규모화를 평가하기에 한계

[그림 Ⅲ-5] 농업법인의 규모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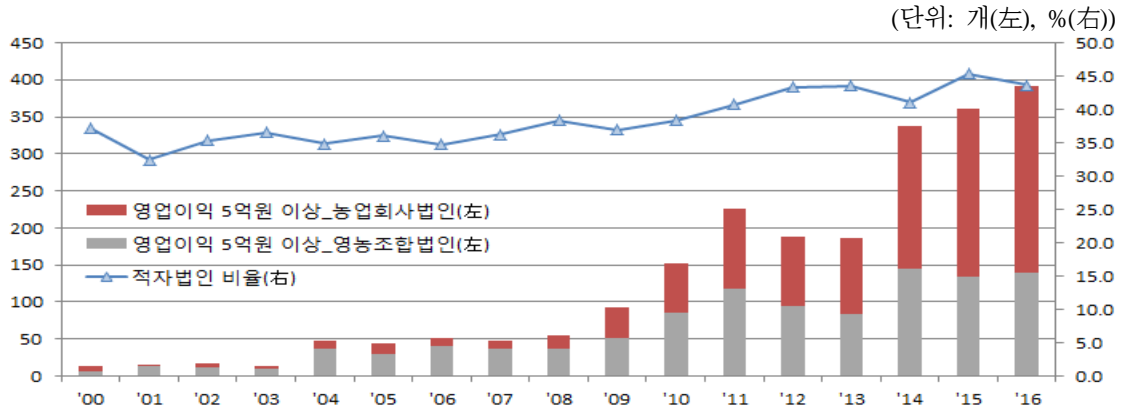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

- 농업법인의 영업실적은 평균적으로는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규모 법인의 증가로 5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법인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
 -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모두 40% 내외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법인의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임
 - 적자법인 비율의 증가는 특히 영농조합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음
 -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수는 최근 6개년(2011~2016년) 동안 영농조합법인은 179개에서 196개로, 농업회사법인은 129개에서 346개로 증가함
 - 영업이익 5억원 이상 법인의 비율은 농업회사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 2016년 기준으로 영농조합에서는 1.6%가, 농업회사에서는 4.5%가 영업이익 5억원 이상을 기록함

- 자료들을 종합해 보건대, 농업회사법인이 영업실적상 규모화가 영농조합법인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III-6] 농업법인의 영업실적 추이



주: 결산법인(재무제표 작성법인) 기준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

<표 III-1> 농업법인 중 매출액 100억원 이상 법인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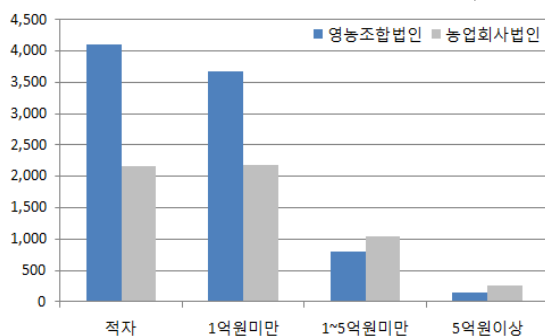
연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011	179	129
2012	197	166
2013	205	208
2014	208	260
2015	186	316
2016	196	346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

[그림 III-7] 농업법인 영업이익 분포(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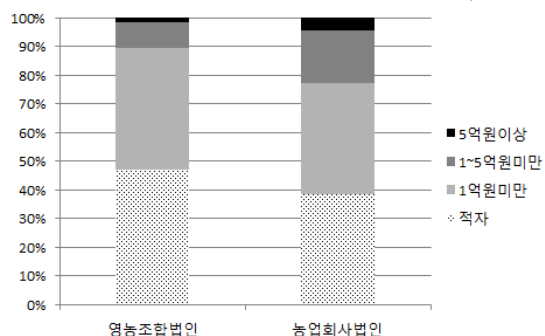
농업법인 영업이익 규모별 분포

(단위: 개)



농업법인 영업이익 규모별 비중

(단위: %)



주: 결산법인(재무제표 작성법인) 기준
 자료: 통계청 농업법인조사

다. 시장의 실패

- 농어촌 지역의 생산기반이 전근대적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시장의 실패’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은 인구구조 변화, 정보 부족(비대칭성), 소규모 생산방식 고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미실현 및 이로 인한 가격경쟁력 등의 약화 현상 등이 있음
 - 상기의 요인들이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음

- (참고) 교과서적 의미에서의 시장실패 원인의 종류
 - 공공재, 시장진입장벽(규제,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등), 외부성, 정보부족/비대칭성, 불확실성, 시장여건의 불비성/불완전성, 기타 요인 등
 - 이상의 일반적 요인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 각 경제주체들의 비합리적 행태 등도 ‘시장의 실패’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예

- 인구구조의 변화
 -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결과 도시화가 급진전되고, 농어촌 지역의 인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 인구의 지역 간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 및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
 -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만성적·구조적인 농어촌 지역의 인구·노동력 부족 현상을 더욱 촉진

- 특히 고령화와 젊은 연령층의 극심한 이농·이어 현상에 따라 만성적·구조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노동력(경제활동연령 인구) 부족 현상이 심화된 것이 가장 큰 요인
 - 다수의 소규모 영세 농어가를 중심으로 인구·가구분포가 형성되어 있음
 - 가구고령화로 인한 짧은 잔여생존기간 등으로 인한 미래생산의 현재가치가 낮아, 생산방식의 자본화·대형화가 원활하지 않고 부진한 근본 요인 중 하나

- 정보 부족(비대칭성), 소규모 생산방식 고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 미실현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유통단계의 부가가치 대비 생산단계의 부가가치가 낮은 것이 농어가의 소득 증대가 부진한 주요 요인 중 하나임
 - 그 결과, ‘낮은 생산성 → 저소득 → 저생산성 → ...’의 악순환 고리가 반복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소득 증가가 더디고, 점증적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저생산·저소득 구조의 고착화가 우려됨

- 종합해 볼 때, 농어업 부문은 현재 ‘시장의 실패’ 영역에 놓여 있다고 평가되며, ‘시장의 실패’ 현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부 개입을 통한 ‘시장의 실패’ 해소가 정당화된다고 판단됨
 - 이런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어촌 현대화를 지원하는 정부 개입(축매제, 또는 조세지원 등)이 필요함

2. 지원수단의 적절성

가. 이론적 접근

- 외부불경제(또는 외부경제)로 인해 ‘시장의 실패’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조세 부과(또는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 한계비용과 사회적 한계편익을 일치시킴으로써 가격기능을 활성화하여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정책 방안 중 하나임
 - 비록 발생원인은 다르지만, 인구구조 변화, 정보 비대칭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도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 대응방법과 경제이론 및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동질적인 원리라 할 수 있음

- 지원정책의 종류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 가능함
 - 경제적 유인제도의 활용방안
 - 인·허가 제도, 쿼터제, 배분제, 배급제 등의 규제정책을 통한 조정

- 경제적 유인제도의 경우 최적화(예: 효용 극대화) 행동에 기초하여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경제행위를 통해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서 일반적으로 왜곡된 자원배분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음
 - 반면에 쿼터제, 배급제, 배분제 등과 같이 강제성을 지닌 자원배분 정책은, ‘한계효용=한계비용’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결과를 초래함
 - 강제배분 방식의 규제를 통한 지원정책은 최적화 행동의 결과와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됨

- 현행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정책은, 시장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것에 대응하여 경제적 유인(economic incentives)을 제공해 줌으로써 시장기능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이 있음
 - 조세이론상 조세감면을 통해 투자재원의 용처별 세후수익률 구조를 변화시켜 상대가격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자원배분구조를 변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결과적으로 상대가격구조 변화를 통해 농어촌 생산방식의 선진화, 대형화·법인화 등을 촉진하여 농어가 소득을 증진하는 등 시장의 실패 현상을 보정하거나 해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과 기능임

- 조세지원정책은 인위적인 배급·배분정책 등과 달리 가격기구를 통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각 경제주체들의 자발적 최적화(또는 효용 극대화) 경제행위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본 목적이 있음
 - 규제 및 강제적 자원배분·할당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상호대사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는 최적의 자원분배 및 재배분 상태가 보장되지 않아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이에 반해 조세지원정책은 ‘시장의 실패’ 교정을 목적으로 상대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기구의 가격조정 기능을 통해 효용 및 이윤극대화 등의 최적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 그러므로 ‘시장의 실패’ 교정을 위한 조세지원정책의 도입은 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됨
 - 시장의 실패 교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방안 중에서 가격유인효과를 통해 정책 효과를 발현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 가격유인효과를 도모하는 것은 일방적인 규제정책 등에 비해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국민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나. 제도상의 장단점 비교

- (장점)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농어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정책은, 인구구조 변화, 시장의 불완전성, 인프라 및 정보 부족 등에 의해 초래된 ‘시장의 실패’ 현상의 완화에 일조함
- ‘시장의 실패’ 현상은 일반적으로 자생적·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거나, 치유속도가 매우 더딘 것이 일반적임
 - 조세지원정책을 전개하는 경우 세후수익률의 상승을 통해 투자의 한계효율을 높여주는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수익성 향상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 (단점) ‘동일소득-동일세금’의 조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농어업소득 감면·면제 등은 다른 산업과의 수평적 과세형평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 있음
 - 그러므로 원론적 측면에서는 상기 조세지원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지역 간 인구이동, 저출산·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소득증가가 부진하고, 대형화·기업화 등이 부진하여 생산성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장의 실패’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
 - 이 경우 형평성 원칙보다 자원배분 왜곡현상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보정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특히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일부나마 관련 법인세나 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지원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 고령가구의 기대수익률의 현재가치가 젊은 가구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비록 대형·기업형 생산방식의 생산성이 월등히 높아도 경영방식의 전환이 저조한 것이 일반적 상황임
 - 이에 따라 농어업 경영방식을 소규모·영세 자영방식에서 대형·기업형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
- 이는 고령가구의 경우 미래수익의 현재가치가 충분하지 않고 기대여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 현상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고령가구의 경우 잔여생존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래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고령의 특성상 시간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미래기대수익의 현재할인가가 낮은 것이 특징임
 - 즉, 노인가구의 개인적 관점에서 볼 때 잔여생애기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생애수익률 현재가치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잠재적 기대수익률(현재가치 기준)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임

다. 기타 고려사항

- 일견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농어업 소득 등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이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불평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전자의 경우 ‘시장의 실패’로 인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감안할 때 동 정책의 적정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농어촌 지역에서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므로 각각의 환경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
- 비농어가 또는 비농·비어부문 법인들보다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과 농어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실효세부담률이 낮아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농어촌과 비농어촌 모두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동일한 환경하에서만 성립하는 논리로 볼 수 있음

- 소규모·영세규모의 자영방식에서는 원천적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생산성 제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및 농어촌지역의 산업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소규모·영세 자영방식에서 대형화·기업화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함
 -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 ‘시장의 실패’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자생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감면정책이 시행 중 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법인세 및 소득세의 면제·감면은 기본적으로 세후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자원유입을 유인·유도하는 효과를 지니므로, ‘시장의 실패’를 완화하고 교정하는 데에 효과적임
 - 그러므로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교정을 위한 정책으로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들에 지원정책으로서의 의미와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시장의 실패’에 대한 보완·교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들이 최적 또는 최선의 정책인지의 여부는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

- 한편, 조세특례제도는 세금을 납부할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많은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한계기업인 실정을 감안할 때, 농어업인 입장에서는 조세지출보다는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이 더 절박한 상황임
 - 농업법인은 지원요건을 만족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다양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2016년 신고기준 법인세 감면을 신청한 농어업법인은 영농조합 3,221개, 농업회사 1,179개, 영어조합 472개로 영업이익이 난 법인 중 영농조합은 69.8%, 농업회사는 33.9%만이 해당됨

3. 지원규모의 적정성

- 농업인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 규모의 경제를 위한 법인전환을 유도하려면 농어민이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세 부담이 최소한 불변하거나 개인소득세 수준 이하이어야 전환유인이 존재함(수평적 과세형평)
 - 이미 개인의 농·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있으므로 법인도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비과세혜택이 보장되어야 함(조세상의 무차별)
 - 법인전환에 의한 사회적 편익이 매우 크다면 개인소득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과세함으로써 법인전환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유인을 강화할 수도 있음
 - 교정효과의 수준에 따라 조세의 수평적 형평에서 벗어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음
- 수평적 과세형평의 측면에서 볼 때,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및 부업소득에 대한 감면기준이 개인보다 낮은 수준임
 - 기타 작물재배업소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이나 영농조합에서는 조합원 1인당 수입금액 6억원까지만 비과세
 -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비농업인도 있으므로 인당 기준이 아닌 총액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이는 아래 부업소득에 대해서도 유사함)

〈표 III-2〉 사업자별 농업활동 소득세 감면범위

	개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전액 비과세	전액 비과세	전액 비과세
기타 작물 재배업 소득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조합원당 6억원/수입금액)×소득금액 한도	(50억원/수입금액)×소득금액 한도
농가부업 소득	연 3천만원 이하 비과세, 농가부업규모 축산업 소득 비과세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	최초 소득 발생 후 5년간 50% 감면

주: 굵은 글씨에 대해서는 어업에서도 동일하게 소득세 감면한도가 적용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7)

- 농가부업소득도 개인은 3천만원까지 비과세지만, 영농조합에서는 조합원 1인 당 1,200만원 한도로 비과세

- 그러나 평균의 관점에서는 현행 제도의 한도를 무조건 낮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예를 들어, 농업인 2명의 수입금액이 한 명은 1억원이고 다른 한 명은 11억원 인 경우 수입금액이 높은 농업인은 다른 한 명과 조합을 통해 농업생산활동을 하는 것이 감면혜택 측면에서 오히려 더 유리함
 - 즉, 현행 조세특례제도상의 영농조합법인의 감면한도가 수입이 동질적인 농업인들에게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한도보다 더 불리하지만 이질적인 농업인들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제도는 수입 수준이 이질적인 농업인들이 모여 법인으로 전환하기에 상대적으로 유인(incentive)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대한 평가는 일률적이기 어려움
 - 수입 규모가 큰 농업인을 중심으로 수입 규모가 작은 농업인이 함께 경작하는 것이 효율적인 영농법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동시에 세금감면의 추가적인 수혜는 수입 규모가 큰 농업인에게 돌아감으로 분배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음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감면한도 기준 자체가 달라 개인사업자나 영농조합법인과 직접비교는 곤란함
 - 다만, 2016년 기준 농업회사의 법인당 농업인 출자자가 평균 6.3명이라는 점에서 기타 작물재배업소득의 감면한도는 농업인 출자자당 약 8억원의 수입금액 수준으로 볼 수 있어 평균적으로 영농조합보다 다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이는 평균값에서의 비교이며 개별 법인별로는 유불리가 제각각임
 - 부업소득에 대해서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자에 비농업인도 있으므로 인당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준용함
 -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수준은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수평적 과세형평성을 저해할 요인은 없는 것으로 평가됨

- 농업회사법인은 그 설립조건상 농업인의 참여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감면한도 수준보다 감면혜택의 제공 자체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음

- 현행 설립요건에는 농업인의 출자율이 10% 이상이거나 출자금이 8억원 이상이면 되므로 실질적으로 비농업인 위주의 법인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함
 -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경우, 농업인의 출자율이 10%에 미치지 않더라도 출자금이 8억원만 되면 요건을 만족함
 - 이에 따라 대규모 농업회사법인일수록 농업인의 참여가 거의 없더라도 농업법인으로서의 자격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임
- 한편,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감면혜택은 영농조합법인의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감면혜택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에 대한 형평성은 명확하지 않음
- 과세 측면에서 어업생산에 대한 별도의 혜택 없이 농업생산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형평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함
 - 예를 들어, 농업에서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토끼 1,500마리, 닭 15,000마리 등) 소득은 전액 비과세이나 양어 등의 어업생산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전혀 없음
 - 그러나 농업은 사유지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데에 반해 어업은 공유지에서 생산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산업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 또한 농업생산활동은 수확단계 전에도 재배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있으나 어업생산에 의한 수확에는 양어가 아닌 한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은 없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영어조합법인의 감면혜택이 낮다고 주장하기에는 동등성을 비교할 객관적 수치가 부족한 한계가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은 조특법 개정과정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이슈는 없는 것으로 판단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기준인 8년 이상 자기경작 조건과 대등한 조건(현물출자 전 자경기간과 현물출자 후 양도시까지의 기간 합산으로 8년 이상) 전제
 -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자영기간을 현물출자 전 자영기간과 현물출자 후 보유기간의 합이 8년 이상 되도록 함으로써 제도 간 형평성을 고려함

4. 타 제도와 의 유사중복성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를 제외하고는 조세지출의 형태로 농어업법인을 지원하는 사례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있으나 지원 세목이 달라 조세지출제도 간의 유사중복성과 관련해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음
 -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을 지원하는 세금감면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조특법 제66~68조) 외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3호)가 존재함
 - 그러나 해당 제도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지원대상 세목이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소득세, 법인세)와 다름

-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복지원의 배제를 명문화(조특법 제127조)하고 있어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에 따른 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일부 다른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제도 이외에의 조세지출제도에서도 농어업법인을 별도로 지원하여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와 중복성 검토가 필요한 사례를 찾지 못하였음
 - 개별 세법상의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조세지출제도에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등(「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영농상속공제(「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등이 있으나 이들 제도는 모두 법인에 대한 지원이 아닌 농어민이나 영농상속자를 위한 제도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와는 중복성의 대상이 되지 못함

- 한편, 재정사업 중에서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등 일부 사업이 농어업법인의 육성과 관련되어 있음

-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생산유통지원 세부사업의 하나로, 들녘단위 공동생산 관리 확대를 통해 농작업 노동 및 농업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재정지출사업임³⁸⁾

- (사업의 목적) 50ha 이상 들녘에 대해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들녘경영체를 육성
- (정책대상자) 들녘경영체를 조직화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조직 등
- (지원내용) 50ha 이상 들녘에 대해 규모화·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등을 지원
- (총지원규모) 2018년까지 380개소 들녘경영체 선정 계획

<표 III-3>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개요

	세부사업 내용
사업명	들녘경영체 육성
사업내용	(조직화 촉진) 50ha 이상 들녘을 대상으로 규모화·조직화된 공동농업경영 조직 육성을 위한 교육·컨설팅, 시설·장비를 지원 (사업다각화) 들녘경영체의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생산된 쌀·타작물 등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하여 신(新) 소득원 창출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
사업기간	2009년~계속
지원대상	농업법인, 농협, 정부지원 미곡처리장 등
신청자격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육묘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공동농업경영체
지원형태	민간 / 지자체보조
지원한도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영농면적에 따라 4천만원 이내 시설·장비 지원: 공동영농면적에 따라 4억원 이내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기간 2년, 10억원 이내
지원조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지원: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사업다각화 지원: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시행주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자체

주: 지원조건은 지원비용
출처: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성과계획서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38)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도 성과계획서(대한민국 정부, 2018)를 참고하여 기술함

- 이외에 재정사업 중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수협경제사업 활성화 사업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사업 등이 농어업 경영과 관련된 사업이지만 이들 사업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농어업인 전반에 대한 지원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와의 유사성 내지 중복성의 우려는 전혀 없음

-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과 가장 관련이 큰 재정사업은 상술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보이나, 지원내용을 감안할 때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와의 중복 이슈는 없다고 판단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는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감면이지만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은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지원항목의 차이가 명백함
 - 비록 동일한 법인이 양쪽 제도(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와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모두 적용될 수는 있으나 동일한 내용에 의한 지원이 아니므로 지원사업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상술한 내용으로 볼 때,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개별세법에 의한 다른 조세지출제도와도, 재정사업과도 유사중복성 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판단됨

IV. 효과성 평가



IV. 효과성 평가

1. 법인 및 농어민 소득에 대한 효과(정책효과 분석: 미시분석을 중심으로)

가. 효과성의 종류와 분석자료·범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의 조세지원제도는 관련법인 및 농어가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하고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등을 통한 사회후생 증진이 주된 정책목적
- 정책의 효과성은 가처분소득의 증대(직접 효과)와 그에 따른 분배구조 개선효과, 그리고 법인화 또는 기업형·대형 영농·영어방식의 확산(간접효과 또는 2차적 효과) 등
- 첫 번째 효과는 제도 도입에 따른 농어가의 가처분소득 증가 여부 및 증가분의 크기로 측정 가능
 - 다만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직접적으로 제도 효과를 추정하는 실태분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 대안적·현실적인 추정방법으로서, 비농어가(주로 가계동향조사자료)와의 가구 소득 변화추이 비교 및 농업·어업소득 등의 변화효과 추정 등을 통해 동 제도의 효과성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
- 두 번째 효과는 영농·영어방식의 고도화를 통한 기업형·대형 영농·영어방식의 도입·확산을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전후의 영농·영어법인 및 기업형·대형조합 등의 확산속도의 차이로 측정 가능
 - 다만 농어촌 지역의 인구고령화가 크게 진전되어 대형화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 이는 인구구성 인프라 문제로 인해 일종의 ‘시장 실패’를 초래

-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및 생산방식의 고도화·규모화 등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
- 그러므로 ‘시장의 실패’에 대응한 정부의 개입(incentive 제공)에 대한 타당성·당위성을 제공

□ 안타깝게도 ‘시장의 실패’ 현상을 정량적으로 관찰·측정하기 어려운 만큼, 동 현상을 교정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비용적 관점에서의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potential economic loss)의 축소분에 대한 추정은 현재 매우 어려움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농어가 등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분배효과 등의 추정·분석이 현실적으로 분석 가능한 분석범위의 상한

□ 농업·어업소득과 관련하여 본연의 구조조정 기능(도시화, 농업시장 대외개방 등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어가 소득 감소를 보전 등)을 일부 수행

- 외형상으로는 세경감(소득세·법인세 감면)을 통해 직접적으로 농어가 등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 목적인 듯 보임
- 근본적인 관점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대형화·기업화·법인화 등을 유도하여 생산성 증가와 새로운 부가가치·일자리 창출을 통한 간접적·이차적인 효과에 더 큰 주안점이 있으나, 정보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분석의 범위는 상기의 것으로 한정

□ 본 절에서 효과성은 농가·어가소득 증대효과와 그에 따른 분배(또는 재분배) 효과를 구분하여 추정·분석

- 이들 효과는 지원대상인 농업·어업가구 내부의 소득 증감(계층별 및 전체 증감)과 분배효과, 그리고 (농어가와 비농어가를 아우른)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우의 전체 소득계층별 소득변화 및 분배(재분배) 효과를 분석
- 법인에 대한 제도효과는 종국적으로 농가와 어가의(가처분)소득 변화로 귀결되므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의 주된 분석대상은 농어가의 소득효과 및 재분배 효과 추정·분석에 초점을 맞춤
- 분배(재분배) 효과는 세제지원 전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변화율(증감률)을 기준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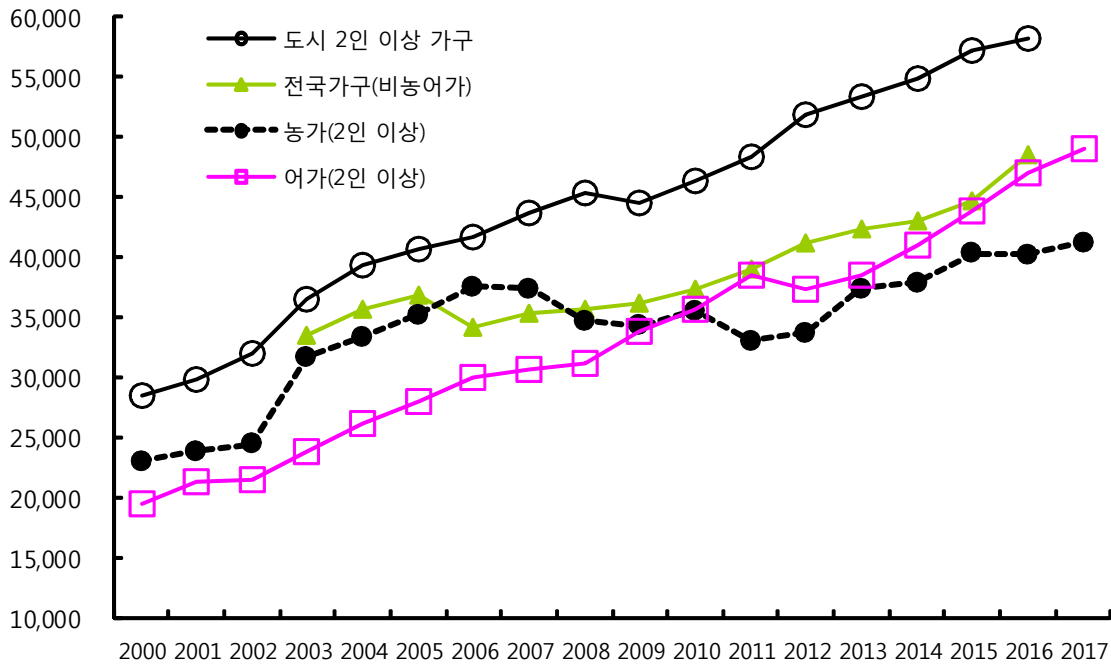
- (분석자료) 분석을 위해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자료(농가 대상), 어가경제조사자료(어가 대상) 및 가계동향조사자료(비농어가 대상)의 원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
 - 시계열비교를 통한 추이분석은 2000년부터 최근까지
 - 미시원시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등의 정량분석은 2003년, 2008년, 2015년의 3개년을 대상

나. 농어가·비농어의 (총)소득 변화추이 비교

-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자료 기준) 대비 농가·어의 소득비중 변화추이(가구 총소득 기준)(그림 IV-1) 및 <표 IV-1>의 첫 번째 구역 참조
 - 도시가구는 물론이고 농가와 어가 모두 가구총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시현 중
 - 2009~2010년 기간 이전에는 농가소득이 어가소득보다 높았으나 동 기간을 경계로 역전되기 시작

[그림 IV-1] 비농어가·농가·어가 총소득 변화추이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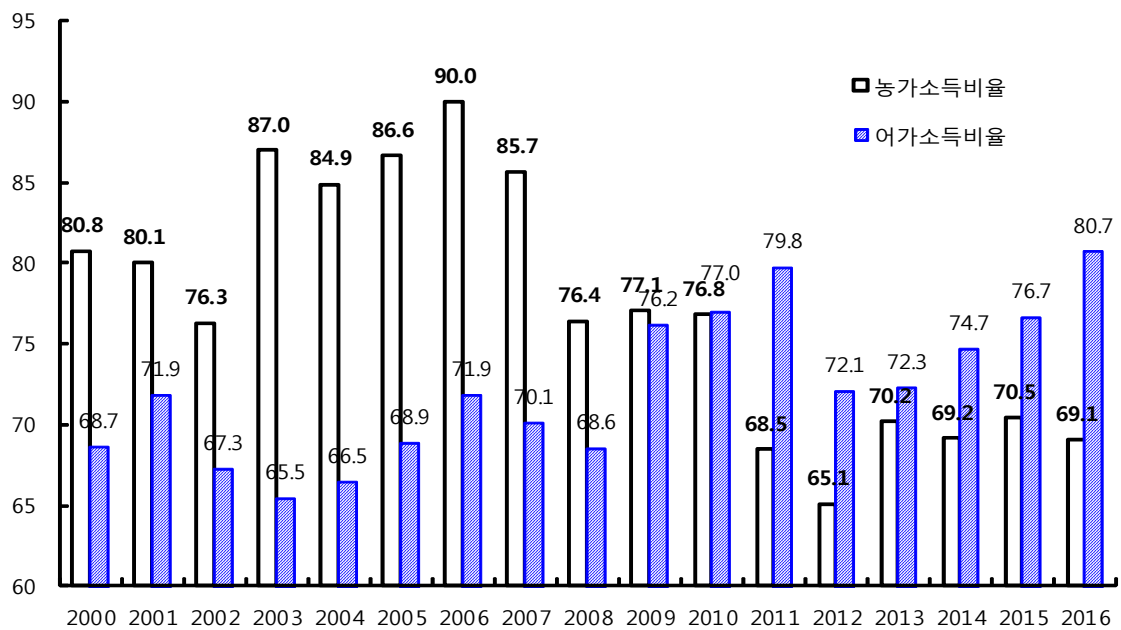


주: 비농어가(도시가구 포함)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이고, 농가와 어가는 각각 통계청의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 기준

- 상기의 추정결과를 이용하여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비농어가 소득을 기준으로 농어가의 상대소득 비중을 추정한 결과는 [그림 IV-2]와 같음
-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농어가의 총소득 평균 수준은 2000년대 초에는 도시가구의 약 80% 수준이었다가 2000년대 중반 90% 수준으로 상승하였다가, 최근에는 70%대로 크게 하락
 - 어가소득 수준은 2010년경 다소 등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소득비율이 2000년대 초 60%대 후반에서 최근 70%대 중·후반~8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시현
- 전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등의 감면은 직·간접적으로 농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효과
 - 그러므로 최소한 평균적인 관점에서는 동 제도로 인해 도시가구(비농어가)와 농어가 사이의 상대소득격차가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림 IV-2] 비농어가 대비 농·어가의 소득상 대비

(단위: %[비농어가=100])



주: 비농어가(도시가구 포함)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분석한 저자 추정치로 도시 거주 2인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함. 농가와 어가는 각각 통계청의 『2017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작업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로 2인 이상 가구 기준임

- 최근 농어가의 소득 상대비율이 하락하였더라도 동 정책을 통해 농어가 소득 중 일부가 보전되었을 것임을 유추할 수 있음
 - 만약 동 지원제도가 없었다면 도시가구 대비 농어가의 총소득 상대비율은 조금 더 낮아졌을 것임도 유추 가능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와 농가경제조사·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소득계층(소득10분위 기준)별 (총)소득 및 주요 인적특성 변수에 대한 분포 추정결과는 <표 IV-1> 및 [그림 IV-3]~[그림 IV-7]과 같음
 - 단, 소득계층(분위)은 비농어가와 농가·어를 각각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양자의 분위수가 동일하더라도 실제적인 양자의 소득수준은 서로 상이함에 유의하기 바람

-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 수준은 (2인 이상 도시거주) 비농어가의 약 3/4 수준(약 75~78% 수준)이며 비교대상 3개 년도 동안 동 비율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그림 IV-3] 참조)
 - 그러나 (2015년 기준의) 횡단면 소득분포를 보면, 하위 20% 이내의 최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두 가구유형 사이에 평균소득수준이 거의 비슷
 - 그렇지만 3분위 이상부터는 비농어가의 평균소득이 농가소득을 크게 상회하는 분포 차이를 시현하는 것이 특징적인 차이 중 하나([그림 IV-4] 참조)

- 어가의 가구당 (총)소득 수준은 2003년 현재(2인 이상 도시거주) 비농어가의 약 2/3 수준이었는데, 이후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여, 2008년에는 약 80% 수준, 2015년에는 90.7%에 이를 정도로 비농어가의 소득수준에 빠르게 근접([그림 IV-3] 참조)
 - 특징적인 점은 횡단면 소득분포(2015년 기준)를 보면, 최상위소득계층(최상위 10%)의 경우에는 농가와 어가 모두 비농어가보다 평균소득 수준이 높게 나타남
 - 물론 비농어가의 경우 초고소득층의 응답거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표본추출 오차에 의한 차이도 있겠지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소득 농·어의 소득이 비농어가보다 높은 것은 매우 특징적
 - 특히 어가의 경우 초고소득가구의 평균소득수준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남 (이상 [그림 IV-4] 참조)

<표 IV-1> 농가, 어가 및 비농어가(2인 이상 도시가구)의 총소득·가구주 연령·가구원 수 분포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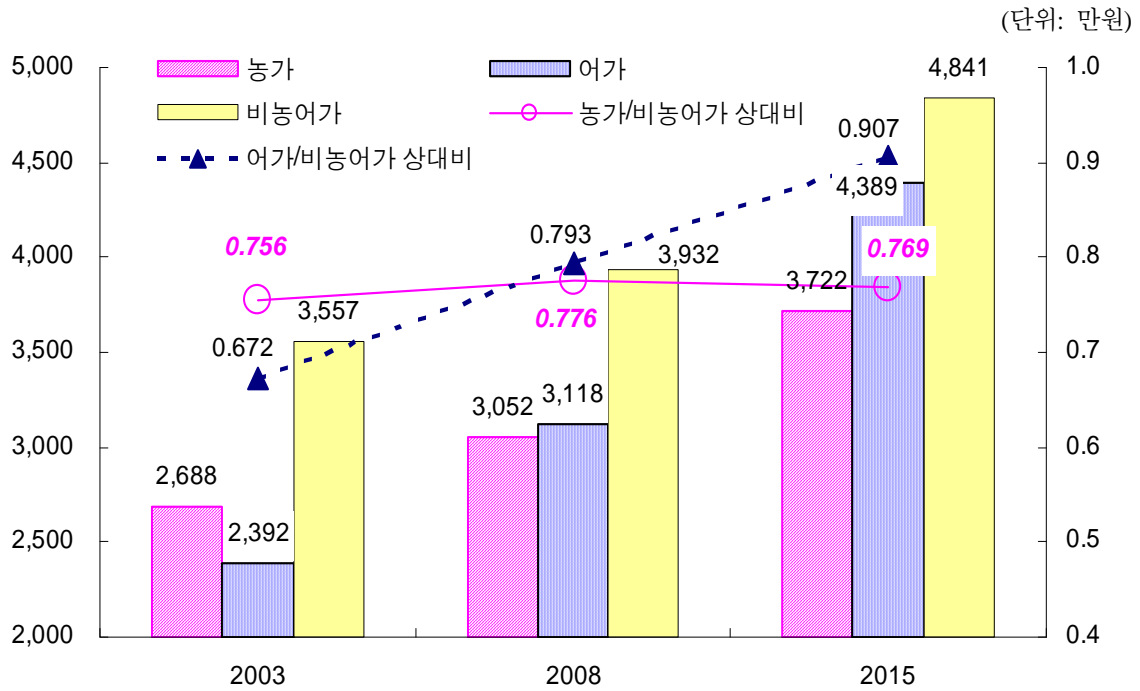
(단위: 만원, 세, 명)

	농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총 소 득	2003	-158	969	1,335	1,660	2,018	2,421	2,897	3,516	4,539	7,679	2,688
	2008	369	1,115	1,465	1,766	2,157	2,608	3,114	3,795	4,989	9,135	3,052
	2015	482	1,231	1,627	2,010	2,483	3,026	3,743	4,740	6,177	11,703	3,722
	어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171	835	1,121	1,466	1,786	2,086	2,471	3,036	3,821	7,133	2,392
	2008	-340	1,000	1,428	1,812	2,225	2,728	3,340	4,063	5,209	9,718	3,118
	2015	-788	1,271	1,672	2,119	2,615	3,218	4,199	5,551	7,279	16,818	4,389
	가계동향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1,161	1,794	2,234	2,618	3,013	3,404	3,876	4,483	5,272	7,708	3,557
	2008	883	1,513	2,099	2,649	3,192	3,747	4,371	5,154	6,277	9,441	3,932
	2015	581	1,288	2,108	2,987	3,783	4,587	5,442	6,473	8,023	13,142	4,841
	가 구 주 연 령	농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2003		60.88	64.99	63.86	61.47	59.75	58.87	57.55	56.65	55.26	52.71	59.20
2008		65.88	68.25	68.44	67.04	64.89	62.61	63.15	60.40	59.44	58.18	63.83
2015		71.57	72.95	71.52	70.06	69.48	67.42	66.04	63.05	61.18	59.11	67.24
어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56.79	59.90	55.24	55.26	55.88	52.41	53.98	53.85	52.77	52.20	54.82
2008		58.45	60.45	61.57	59.24	57.85	58.52	56.93	56.96	54.96	54.53	57.95
2015		66.26	68.13	68.47	67.08	65.78	64.85	61.63	60.31	60.73	56.03	63.93
가계동향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55.28	47.59	44.33	43.76	42.49	42.69	44.92	43.53	43.75	46.06	45.44
2008		65.77	57.78	50.60	49.18	47.59	45.68	46.11	45.21	46.00	47.27	50.12
2015		68.95	63.87	55.25	50.81	48.37	46.81	47.20	47.17	48.48	48.67	52.56
가 구 원 수	농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2.76	2.47	2.69	2.89	2.93	3.29	3.22	3.45	3.84	4.04	3.16
	2008	2.37	2.26	2.33	2.44	2.62	2.67	2.76	2.89	3.60	3.64	2.76
	2015	2.33	2.54	2.46	2.34	2.33	2.56	2.69	2.93	3.09	3.24	2.65
	어가경제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2.72	2.96	3.04	2.93	3.12	3.44	3.41	3.06	3.66	4.10	3.24
	2008	2.71	2.55	2.66	2.77	2.84	2.78	3.03	2.94	3.12	3.42	2.88
	2015	2.32	2.04	2.47	2.65	2.33	2.77	2.91	2.81	2.74	3.37	2.64
	가계동향조사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2003	2.56	3.12	3.33	3.41	3.55	3.64	3.84	3.82	3.89	4.00	3.52
	2008	1.39	1.85	2.27	2.79	3.13	3.29	3.50	3.54	3.62	3.75	2.91
	2015	1.26	1.54	1.90	2.34	2.79	3.05	3.20	3.42	3.48	3.43	2.64

주: 1.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자료, 어가경제조사자료 및 가계동향조사자료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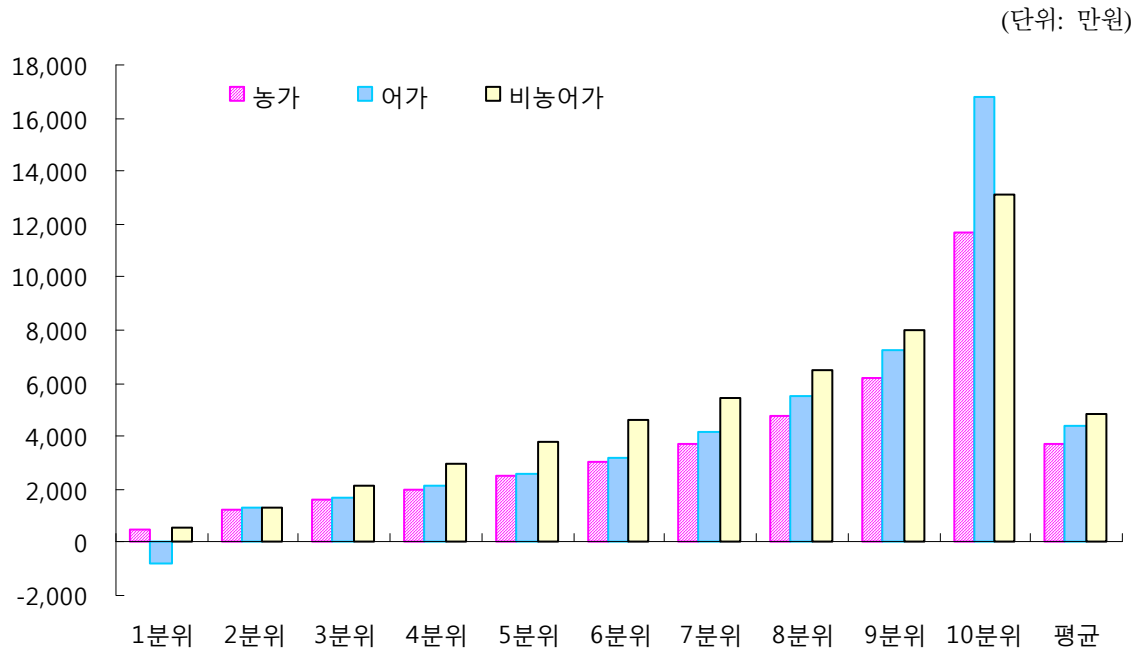
2. 가계동향조사자료의 경우 2003년 자료는 2인 이상 도시지역 거주 가구 대상이며, 2008년과 2015년은 1인 단독가구까지 포함한 전국 단위 기준임.

[그림 IV-3] 농가·어가·비농어가의 가구당 (총)소득 평균 변화추이



주: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그림 IV-4] 소득 10분위별 농가·어가·비농어가의 가구당 평균 (총)소득 비교(2015년)



주: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 농가·어가(2인 이상)와 비농어가(도시가구)를 비교하면, 농가·어가의 가구주(거의 대부분이 동시에 경영주) 연령이 비농어가보다 월등히 높음(<표 IV-1>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농가·어가의 가구주 연령은 60세를 훨씬 상회하는 반면, 도시가구는 50대 초로서 농가와 도시가구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
 - 농가의 가구주 연령이 어가의 경우보다 조금 더 높음

- 고령화 속도와 관련해서는, 가구주 연령은 농가 기준 59.2세(2003년) → 63.8세(2008년) → 67.2세(2015년), 비농어가 기준 45.4세(2003년) → 50.1세(2008년) → 52.6세(2015년)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를 시현([그림 IV-5] 참조)
 - 어가의 경우 54.8세(2003년) → 58.0세(2008년) → 63.9세(2015년)

- 절대연령의 차이가 있지만, 인구고령화로 인한 가구주 연령의 급상승 추세는 가구유형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관찰
 - 특히 2003~2008년 동안 농가, 어가, 비농어가의 가구주 연령이 각각 4.6세, 3.2세, 4.7세씩 상승하여 고령화 속도가 시간 길이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빠른 것이 두드러진 특징

- 2015년 현재 농가와 어가의 가구주(주로 경영주) 연령은 각각 평균 67.2세와 63.9세로 비농어가의 52.56세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
 -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이뤄진 향도이농·이어 현상과 인구고령화 현상이 복합되어 농촌지역의 고령화도가 매우 높음을 시사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였던 경제활동연령인구가 대거 도시지역으로 이동하였고
 - 농어촌 잔류 인구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함께 고령화되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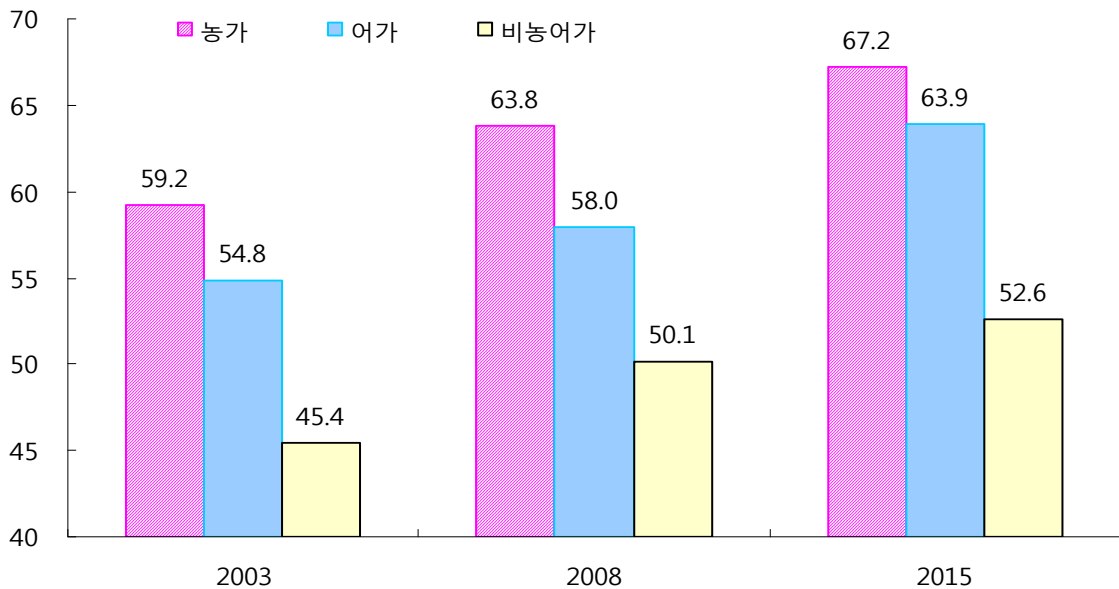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의 횡단면 분포를 보면, 농가, 어가, 비농어를 불문하고 저소득분위일수록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고소득분위일수록 낮아지는 특성을 시현([그림 IV-6] 참조)
 - 농가와 어가의 경우에는 하위 10~20% 정도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고소득분위일수록 평균연령이 낮아지지만,

- 비농어가의 경우에는 6분위까지는 평균연령이 빠르게 감소하지만, 7분위 이후에는 소폭 상승하여 농어가와 약간의 차이 존재
 - 46.8세(6분위) → 47.2세(8분위) → 48.7세(10분위)

- 상기와 같이 소득분위별 연령분포의 특징적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연령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생애주기상 중장년기(40대~50대 초)의 연령대의 평균소득수준(경상소득 기준)이 가장 높고, 그 이후 연령대로 이행할수록 평균소득수준이 낮아지는 분포 특성을 지니기 때문
 - 노년층에 비해 중년층 또는 그 이하 연령대일수록 더 왕성하게 경제활동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생산성도 더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 연령층이 중·고소득층에 귀속되는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높기 때문
 - 반대로 노년층일수록 생산성 하락 또는 은퇴, 파트타임 등으로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들 연령층이 중·저소득층에 귀속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

[그림 IV-5] 농가·어가·비농어가의 가구주 연령 변화추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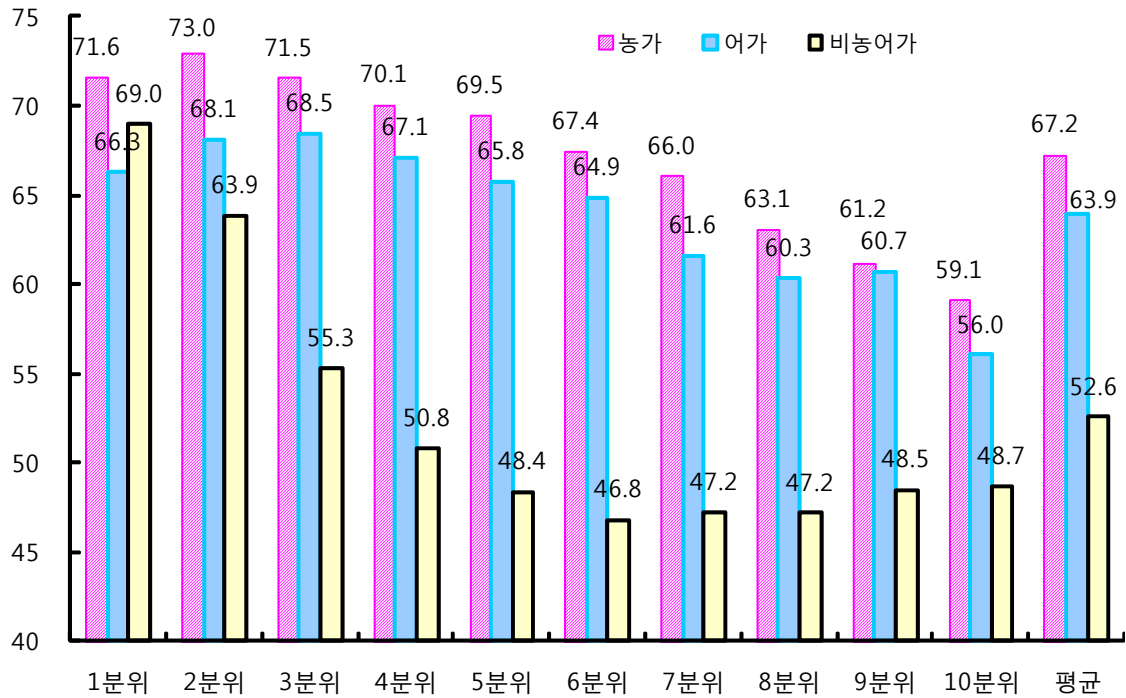
(단위: 세)



주: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그림 IV-6] 소득분위별 농가·어가·비농어의 가구주 평균연령 비교(2015년)

(단위: 세)



주: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 2003~2015년 동안 농가, 어가, 비농어가 모두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시현(<표 IV-1>의 세 번째 단락 및 [그림 IV-7] 참조)

○ 농가: 3.16인(2003년) → 2.76인(2008년) → 2.65인(2015년)

○ 어가: 3.24인(2003년) → 2.88인(2008년) → 2.64인(2015년)

○ 비농어가: 3.52인(2003년) → 2.91인(2008년) → 2.64인(2015년)

○ 농가와 도시가구(비농어가) 사이에는 농가의 가구규모(가구원 수)가 비농어가보다 작았는데, 최근에는 양자 사이의 격차가 크게 축소되어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

○ 2015년에는 농가, 어가, 비농어가 모두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가 2.65인 내외로 거의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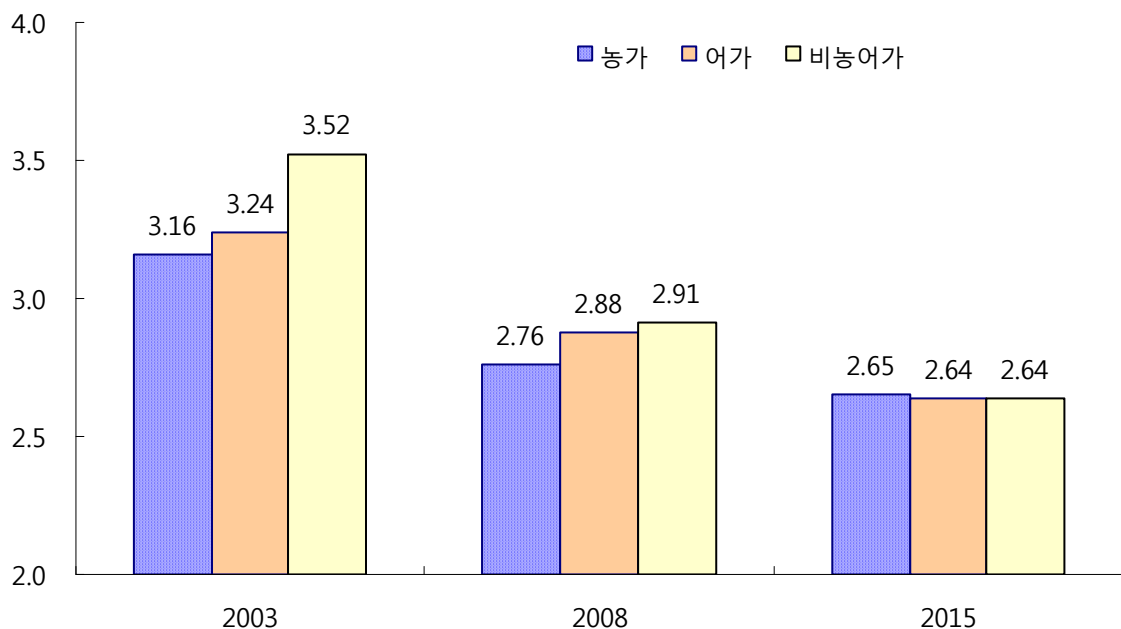
□ 평균 가구원 수의 감소 현상은 핵가족화와 저출산 심화로 인한 자녀 수 감소 등이 주요인인 것으로 추정

○ 아울러 고령화·장수화가 진전되면서 (배우자 사망 등에 의한) 독거노인가구의 빠른 증가 현상도 가구원 수 감소에 일조

- 소득계층별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가구원 수가 작아지는 것이 특징
- 이는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가구당 평균 취업인 수도 많아지면서 평균 소득 또한 함께 증가하기 때문
- 아래의 <표 IV-2>의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구원 수의 계수 추정치가 정(+)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게 나타난 것도 이런 사실을 뒷받침

[그림 IV-7] 농가·어가·비농어가의 평균 가구규모(가구원 수) 변화추이 비교

(단위: 명)



주: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저자 추정치 기준

다. 가구소득 결정식 추정결과

- 2003년, 2008년, 2015년의 농가경제조사자료, 어가경제조사자료,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가구소득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하였음(<표 IV-2> 참조)
- 회귀분석의 기본 목적은,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 그리고 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 소득격차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만약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면 격차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있음

- 두 가지 차이 가운데 전자는 농가더미의 계수, 후자는 어가더미의 계수값으로 측정 가능
- 회귀분석을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비농어가)와 농가경제조사(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어가) 원시자료를 합쳐(pooling) 단순회귀제곱법(OLS; ordinary least squares)을 시행
 - 회귀분석은 2003년, 2008년, 2014년, 2015년의 4개년도 자료를 사용
 - 피회귀변수는 가구별 총소득으로 하였고, 설명변수는 농가더미(농가=1, 비농가=0),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및 직업, 가구주 성별더미(남자=1, 여자=0) 및 교육수준(각급 학교수준별 더미) 등
 - 교육수준 더미를 사용하기 위해 배제조건(exclusion condition)을 충족하기 위해 무학을 교육수준 더미에서 제외함
 - 비록 회귀분석은 단순회귀제곱법을 시행하지만, 오차항의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염두에 두고, 계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시하는 z-값은 강건표준오차법(robust standard error)을 이용하여 추정
 - z-값은 각 계수의 모수값이 0이라는 전제(귀무가설)하에서 계수추정치를 계수추정치의 표준편차로 나눈 값임
 - 이들 설명변수의 계수는 거의 모두 추정치의 z-값(절댓값)이 2를 상회하여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의한(significant) 것으로 추정됨
 - 다만 2015년의 경우에는 여타 기간과 달리 농가더미의 계수가 유의하지 않고, 가구원 수 계수값이 크게 추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농가더미를 제외한 경우 또는 가구원 수의 직업을 포함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모두 4가지 경우(specifications)를 대상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함
- 농가와 비농어의 소득수준 차이는 <표 IV-1>과 [그림 IV-3]~[그림 IV-4]에서 보듯이 외견상 명확해 보임
 - 그렇지만 그 차이가 본질적으로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또는 양자의 다른 특성(예: 연령, 학력, 가구규모, 성별 등)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분해)이 필요
 - 여타 요인들에 의한 소득결정 교란요인(noises)을 적절히 통제해야만, 농가더미

와 어가더미의 계수값 추정치로부터 농가·비농어가, 그리고 어가·비농어가 사이의 순수한 소득격차를 구분해낼 수 있음

○ 회귀분석을 시행하는 이유는 바로 위와 같은 교란요인을 통제하기 위함

□ 회귀분석 결과, 가구소득은 대체로 농가 또는 어가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비농어가)보다 가구소득이 낮은 것으로 추정

○ 다만 2003년과 2008년의 경우에는 농가더미와 어가더미의 계수가 모두 음(-)의 값을 가지는 동시에 z-값(절대치 기준)도 상당히 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

○ 이는 농가 또는 어가인 경우 비농어가에 비해 가구평균소득이 계수값(만원 단위)만큼 차이가 있음을 의미

- 농가더미의 계수는 2003년과 2008년 각각 -311.957과 -387.226로 나타나, 비농어가보다 각각 가구당 평균 약 312만원과 387만원 정도 총소득이 작음을 의미

- 같은 기간, 어가더미의 계수는 각각 -654.994와 -352.731로 나타나, 비농어가보다 각각 가구당 평균 약 655만원과 353만원 정도 총소득이 작음을 의미

□ 그러나 2015년에는 농가더미·어가더미의 계수 모두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을 통제한 경우 농가·어의 소득이 비농어가보다 더 높음을 시사

○ 다만 농가더미 계수의 경우 z-값이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통계학적 관점에서 0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하지 않음

○ 그러나 어가더미의 경우에는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면서 z-값도 매우 커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 특징적

○ 가구원 수의 제곱을 통제변수에 추가하거나, 또는 농·어가더미를 제외할 경우, 가구원 수의 계수값만 크게 변화할 뿐, 나머지 설명변수의 계수값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볼 때, 2015년의 경우 농가·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에는 본질적인 가구소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크게 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지만, 연령의 제공향이 음수(-)이기 때문에 체감적으로 증가하다가 50대 중반 이후 감소추세로 반전
 - 설명변수 중 연령과 연령제공의 계수 추정치를 연령에 대한 2차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경우 동 2차 방정식의 꼭짓점의 X-좌표 값은 2003년과 2008년 각각 53.6세, 53.1세
 - 다만 2015년(A)의 경우 연령기준 2차방정식의 꼭짓점 연령이 36.3세로 추정되어, 이전 기간과 큰 차이를 보임
 - 2015(B),(C),(D)의 경우에도 2015(A)와 대동소이하게 꼭짓점 연령이 30대(각각 35.2세, 38.5세, 37.4세)로 추정되어, 이전 기간에 비해 꼭짓점 연령이 매우 낮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
 - 명확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만, 최근(2015년)에는 30대를 지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지만 소득감소율이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는 구조로 바뀌었음을 시사
 - 다만 연령제공의 계수값이 모두 이전기간에 비해 0에 현저하게 가까운 값으로 변화한 것을 볼 때, 연령에 대한 2차 곡선의 곡률이 매우 완만하게 바뀌어 꼭짓점 연령을 경과한 이후에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가구소득 감소분이 매우 완만하게 나타나는 구조로 변화했음을 시사

- 가구주 더미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져, 가구주가 남성인 경우의 가구소득이 여성인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추정

- 교육더미의 계수는 대부분 양수(+)인 것으로 나타나 학력이 무학인 가구보다 가구소득이 더 높음
 - 학력더미 계수값의 차이는 고학력으로 갈수록 대체로 더 커지는 경향을 보임
 - 이는 학력과 가구소득 사이에 상당히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시사

- 결론적으로 말해 여타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농가 여부의 차이로 인한 농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는 가구당 평균 300만~400만원 수준(2003년 및 2008년 기준)으로 추정
 - 즉, 농가 소득이 비농가 소득보다 낮고, 그 차이도 통계학적 관점에서 유의하게 큰 수준

- 다만 2015년의 경우에는 통계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양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 농가더미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z-값이 1.44, 양측검정(two-tail test)의 p-값이 0.150으로 유의성이 매우 낮으며,
 - 따라서 통계학적 관점에서 계수값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함

- 그러므로 소득결정식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여러 가지 요인(예: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인구학적 특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순수하게 농가 또는 여가 여부만을 기준으로 소득격차를 추정해본 결과, 종전에는 비농어가(주로 도시가구)에 비해 수백만원 정도 농가 또는 어가 소득이 낮았음을 확인
 - 이는 양자 사이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농가·어가 대상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감면(소득세, 법인세 등) 제도의 시행 필요성·당위성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최근에는 가구유형별 가구 구성원들의 인적 특성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를 제외하면 양자 사이에 실질적인 소득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비록 직접적인 증거자료는 아니지만, 회귀분석의 결과로서 상기 정책이 소기의 정책목적(농어가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 가능
 - 그러나 이는 상기 정책의 유효성·효과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뿐, 정책효과의 비가역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에 유의할 필요
 - 만약 상기 정책의 정책효과가, 동 정책의 폐기 후에도 비가역적으로 나타난다면, 상기 정책의 일몰 등이 바람직하지만, 상기 정책효과가 지속적인 주입효과에 의한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면, 반대의 결론도 도출 가능
 - 불행히도 정책효과의 비가역성 또는 일시성(즉, 가역성) 여부는 현실적으로 검증이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현재 시점에서는 해결이 어려움

〈표 IV-2〉 전체 가구(농가+어가+비농어가) 대상 소득결정식 회귀분석 결과(OLS)

대상연도	2003		2008		2015(A)		2015(B)		2015(C)		2015(D)	
	상수	t-값	상수	t-값	상수	t-값	상수	t-값	상수	t-값	상수	t-값
상수	-3797.75	(-6.946***)	-4969.63	(-13.788***)	271.663	(0.636)	80.90289	(0.222)	189.4629	(0.439)	1.4654	(0.004)
농가더미	-311.957	(-4.742***)	-387.226	(-5.056***)	191.4769	(1.740*)	175.480	(1.539)				
어가더미	-654.994	(-7.755***)	-352.731	(-3.263***)	503.3064	(2.782***)	506.5158	(2.822***)				
가구원 수	354.9905	(15.645***)	554.22	(20.140***)	1035.955	(18.875***)	1271.6	(3.370***)	1047.914	(18.713***)	1285.575	(3.412***)
가구원 수2							-36.4007	(-0.562)			-36.729	(-0.565)
(가구주) 연령	195.8505	(7.691***)	254.934	(19.317***)	30.64181	(3.687***)	27.76689	(2.340**)	32.82479	(3.894***)	29.86178	(2.461**)
연령2	-1.82696	(-7.184***)	-2.40141	(-20.047***)	-0.42179	(-8.104***)	-0.3948	(-4.517***)	-0.4260	(-8.151***)	-0.39928	(-4.560***)
성별(남자)	212.6427	(3.079***)	538.4714	(8.575***)	533.7877	(6.400***)	489.1719	(5.510***)	583.5633	(7.356***)	535.7815	(5.958***)
초등학교	266.4364	(2.803***)	-173.174	(-1.728*)	-191.361	(-1.598)	-201.45	(-1.674*)	-151.562	(-1.266)	-162.626	(-1.343)
중학교	452.392	(3.920***)	2.00847	0.017	326.1804	(2.398**)	311.8435	(2.271**)	349.1767	(2.572**)	334.9643	(2.436**)
고등학교	863.3158	(7.280***)	394.6075	(3.179***)	1050.392	(7.306***)	1027.928	(6.948***)	1013.837	(7.153***)	991.7218	(6.853***)
전문대	1440.295	(9.738***)	1066.024	(6.432***)	1165.085	(5.686***)	1138.538	(5.050***)	1100.293	(5.490***)	1074.403	(4.903***)
대학	1834.639	(14.214***)	1801.92	(12.039***)	1838.209	(10.256***)	1814.997	(9.828***)	1762.702	(10.072***)	1740.859	(9.759***)
대학원	3258.013	(14.480***)	3219.387	(11.042***)	2893.317	(10.639***)	2862.992	(10.355***)	2817.635	(10.409***)	2788.461	(10.198***)
표본 수	8,870		8,913		13,309		13,309		13,309		13,309	
R ²	0.19254		0.23568		0.20659		0.20708		0.20563		0.20613	

주: 1. 통제정 가계통향조사자료,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단순최소제곱법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임.
 2. () 안은 z-값을 나타냄. 단, 오차항의 표준편차는 강건표준오차법(robust standard error)으로 추정.
 3.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냄.

- <표 IV-3>에서는 농가, 어가, 비농어가의 예산제약조건을 나타내는 적자가구의 비율 추정결과를 보여줌
 - 적자가구란 가구 소비지출이 가구소득보다 많은 경우를 지칭
 - 일반적으로 적자가구는 저축 감소 또는 자산처분, 부채 등을 통해 소비지출을 영위

- 농가의 경우 적자가구 비율은 2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
 - 어가의 경우 적자가구비율은 2003년 31.2%에서 2008년 29.3%, 2015년 21.2%로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
 - 비농어가의 경우에는 농가·어가보다 적자가구비율이 매우 작음
 - 기본적으로 농가·어가는 비농어가보다 연령이 크게 높으며, 상당수가 은퇴기 이후의 고연령층임
 - 생애주기상 고령·은퇴 등에 따라 소득수준이 낮은 반면 소비지출은 항상소득의 함수로서 경상소득(주로 횡단면소득)보다 항상소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고령자가구비율이 높은 농가·어가에서 적자가구비율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남

- 비농어가(주로 도시가구)의 경우에도 최근(2015년) 적자가구비율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이 특징적으로서, 인구고령화 현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표 IV-3> 농가, 어가, 비농어가의 적자가구 비율 추이

(단위: %)

	농가	어가	비농어가
2003	24.72	31.22	6.37
2008	26.06	29.25	5.26
2015	27.39	21.17	13.39

주: 1.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가 분석한 추정치
 2. 적자가구란 소비지출이 총소득을 초과하는 가구로 정의함

- 가구 소비패턴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통해 소비함수를 추정(<표 IV-4> 참조)
 - 소득결정식에 대한 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2003년, 2008년, 2015년의 가계동향

조사,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단순 혼합(pooling)하여 단순최소
제공법으로 추정

- 설명변수는, 가구유형 차이를 식별하기 위한 농가더미, 어가더미, 가구규모, 연
령효과, 가구주 성별 효과, 교육수준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교육더미, 그리고
소득을 채택

□ 가구유형의 차이에 따른 소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농가더미, 어가더미를 설정
한 결과, 농가더미 계수는 일관되게 양(+)
의 값을 가지면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
하게 추정

- 이는 다른 요인이 일정(또는 동일)하다면 농가가 비농어가(도시가구)보다 소비
지출 수준이 더 높음을 시사
- 다만 어가더미의 경우에는 계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변화하여 소비패
턴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컸음을 시사

□ 소비지출은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다만 연령
제곱항의 계수가 절댓값이 크지 않은 음(-)
의 값을 가져, 일정한 연령이 경과한
이후에는 고연령가구로 갈수록 소비지출이 감소하지만 감소율은 완만한 것으로
추정

- 이는 생애주기가설에서 의미하듯이 생애주기 소비지출 패턴이 역U자 형태를
보인다는 것과 일맥상통

□ 2003년에는 가구주 성별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가지지 못하였지만, 2008년과 2015년에는, 절댓값은 작지만, 가구주가 남성일 경
우 여성가구주 가구보다 소비지출이 대략 50만~100만원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추정

□ 소득계수는 대략 0.2~0.26 정도로 매우 낮는데, 이는 다른 설명변수들과 정(+)
의 상관관계(비선형 상관 포함)가 있기 때문에 낮게 추정된 것으로 생각됨

<표 IV-4> 전체 가구(농가+어가+비농어가) 대상 소비함수 회귀분석 결과(OLS)

대상연도	2003		2008		2015	
상수	-1214.92	(-5.500***)	-1306.67	(-8.886***)	679.9119	(2.523**)
농가더미	10.83523	(0.480***)	104.2615	(3.738***)	378.204	(11.329***)
어가더미	-100.489	(-3.160***)	-67.3412	(-2.013**)	370.7299	(69.439***)
가구원 수	188.8947	(19.164***)	269.5473	(22.201***)	340.8163	(11.613***)
(가구주) 연령	63.76548	(6.199***)	70.23818	(12.407***)	2.38459	(0.545)
연령2	-0.62081	(-6.072***)	-0.69105	(-13.620***)	-0.09109	(-3.310***)
성별(남자)	-2.75727	(-0.098)	107.4565	(4.509***)	46.57537	(1.357)
초등학교	83.9889	(2.399**)	-62.5541	(-1.800*)	-183.516	(-1.705*)
중학교	228.245	(5.312***)	65.82014	(1.625)	-37.4284	(-0.302)
고등학교	346.0183	(7.889***)	238.2891	(5.484***)	167.6455	(1.156)
전문대	463.702	(8.161***)	462.5679	(7.113***)	253.4556	(1.505)
대학	624.6057	(12.055***)	618.8425	(10.592***)	423.7562	(2.454**)
대학원	979.1178	(9.452***)	837.5453	(8.070***)	574.981	(2.891***)
소득	0.2559	(20.337***)	0.2391	(18.035***)	0.20235	(9.455***)
표본 수	8,870		8,913		13,309	
R ²	0.51965		0.58013		0.37885	

주: 1.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원시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단순최소제곱법으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임. 단, 오차항의 표준편차는 강건표준오차법(robust standard error)으로 추정.

2. () 안은 z-값을 나타냄.

3. *, **, ***은 각각 유의수준 1%, 5%,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나타냄.

라. 효과성 분석: 세제지원 효과성 추정결과

□ 본 항에서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농가와 어가의 소득수준과 소득분배구조에 미친 효과를 추정

○ 2015년 현재 농가와 어가 대상 조세감면액은 총 440억원 및 29억원 수준

○ 농가경제조사자료와 어가경제조사자료에 의거할 경우 농가와 어가 가구 수는 각각 약 88만 7천가구와 5만 5천가구로 추정

○ 그러므로 가구당 조세감면액은 농가와 어가 각각 평균 49,589원과 52,861원으로 추정

- 상기 추정치는 조세감면액이 모두 농가에 배부된다는 전제하에서 추정

- 소득계층별로는, 농가 1분위가 가구당 평균 4,338원, 4분위 20,344원, 7분위 38,661원, 9분위 59,085원으로 증가하다가 10분위는 229,249원으로 급격히 증가(<표 IV-5> 참조)
 - 전반적으로 농가 내부적으로는 소득계층이 상승할수록 조세감면액이 누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
 - 이는 저소득 농가에 비해 고소득농가가 상대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에 관여하면서 취득하는 금전적 세금경감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 소득세 등의 누진과세 체계를 감안할 때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세 한계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경감액도 누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세경감 혜택을 통한 소득증대 효과는 농가 중 최상위 10%(10분위)가 절반에 육박하는 46.2%의 수혜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

<표 IV-5> 총소득 및 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농가 기준)

(단위: 만원, 원, %)

2015년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세제지원 전(A, 만원)	481	1,229	1,625	2,008	2,481	3,023	3,739	4,734	6,171	11,680	3,717
세제지원 후(B, 만원)	482	1,231	1,627	2,010	2,483	3,026	3,743	4,740	6,177	11,703	3,722
지원액=차이(B-A, 원)	4,338	12,297	16,908	20,344	25,751	28,336	38,661	61,258	59,085	229,149	49,589
지원액 비중	0.9	2.5	3.4	4.1	5.2	5.7	7.8	12.4	11.9	46.2	100.0

주: 농가경제조사자료 기준

- 어가의 소득계층별 가구당 평균 수혜액(소득증대 효과)은, 1분위 3,579원, 4분위 14,882원, 7분위 32,743원, 9분위 93,467원으로 증가하다가 10분위의 경우에는 263,737원으로 급증하여 농가의 경우와 유사(<표 IV-6> 참조)

- 어가의 경우에도 농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조세감면액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
 - 이는 저소득 어가보다 고소득 어가가 상대적으로 영어조합법인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세금경감혜택이 누적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
 - 아울러 소득세 누진과세 체계로 인해 고소득가구일수록 소득세 한계세율이 더 높으므로 세금경감액도 누적적으로 증가하기 때문
- 세경감 혜택을 통한 어가의 소득증대 효과는 최상위 10%(10분위)의 수혜점유비가 49.9%에 이를 정도로 절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
- 농가와 어가에 대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경감 제도는 공히 소기의 성과, 즉 소득증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
- 다만 농가와 어가의 내부적 계층별 형평성 측면에서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증대효과가 누적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생
 - 이는 본질적으로 주된 경감대상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구조가 소득에 대해 누진적인 구조를 지니기 때문에, 이들 세목의 감면을 통한 (가처분)소득의 증가효과가 누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
- 따라서 농가와 어가를 불문하고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경감 효과는 고소득층일수록 누적적으로 더 큰 소득증대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농가와 어가 내부적으로는 소득계층별 상대소득분배격차가 다소 확대
- 다만 소득증대 절대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소득격차의 확대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그렇지만 농어가의 소득수준이 비농어가보다 평균적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비록 농어가 내부적으로는 분배격차가 확대될 수 있지만, 평균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가의 소득이 증가되는 만큼 비농어가와 소득격차는 축소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내용은 <표 IV-8> 참조

<표 IV-6> 총소득 및 영어조합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어가 기준)

(단위: 만원, 원, %)

2015년 기준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세제지원 전(A, 만원)	-788	1,270	1,670	2,117	2,613	3,216	4,195	5,546	7,269	16,792	4,384
세제지원 후(B, 만원)	-788	1,271	1,672	2,119	2,615	3,218	4,199	5,551	7,279	16,818	4,389
지원액=차이(B-A, 원)	3,579	8,428	12,592	14,882	18,978	28,003	32,743	53,071	93,467	263,737	52,861
지원액 비중	0.68	1.59	2.38	2.82	3.59	5.30	6.19	10.04	17.68	49.89	100.0

주: 농가경제조사자료 기준

- 상기의 소득증대 효과를 농가 기준에서 전 가구(도시가구 및 1인 가구 포함) 기준으로 확대하여 추정된 결과는 <표 IV-7>과 같음
- 88만 7천농가와 5만 5천어가를 대상으로 할 때 2015년의 가구당 평균 세경감을 통한 소득 증대효과는 농·어가 각각 49,589원과 52,861원이었는데, 전 가구(2015년 통계청 추계가구 수=19,012,895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치로 환산하면, 가구당 평균혜택금액은 2,467원 수준
 - 이는 전 가구(농가·어가 포함) 대상 평균 가구소득(2015년 현재 4,789만원)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불과
- 동 제도의 가구당 평균혜택의 계층별 수혜비중은, 농가 가구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분류하였던 경우에 비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 다소 완화
 - 농가 대상 10분위 46.2%·어가 대상 49.9% → 전 가구 대상 10분위 38.3%
- 이는 상기 제도를 통한 농어가의 소득증대효과가 전체 가구 기준으로는 고소득층 집중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기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농가와 어가에 비해 비농어가의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
 - 즉,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농어가의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농어가 비중이 높은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농어가의 소득증대 효과도 전체 가구 기준으로는 고소득층 집중도가 낮아지고 중·저소득층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상승

<표 IV-7> 총소득 분포 및 영농조합·농업회사·영어조합법인 세제지원의 소득증대 효과
(전 가구 기준)

(단위: 만원, 원,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평균
세제지원 전(A, 만원)	582	1,282	2,060	2,909	3,701	4,516	5,370	6,407	7,957	13,103	4,789
세제지원 후(B, 만원)	582	1,282	2,060	2,909	3,701	4,517	5,370	6,407	7,957	13,104	4,789
지원액=차이(B-A, 원)	93	1,152	1,934	2,069	1,738	2,179	1,936	1,745	2,368	9,454	2,467
지원액 비중	0.38	4.67	7.84	8.39	7.04	8.83	7.85	7.07	9.60	38.32	100

주: 1. 2015년 가계동향조사 및 농가경제조사, 어가경제조사 통합자료 기준
2. 2015년 통계청 추계가구 수(19,012,895가구)와 농가(887,294가구; 농가경제조사 가중치 합 기준), 어가(54,861가구; 어가경제조사 가중치 합 기준)를 기준으로 통합하여 모의실험을 함.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경감 제도를 통한 형평 효과, 즉 소득(재)분배 효과는 <표 IV-8>에서 제도 변화 전후 소득의 지니계수 변화율로 측정하여 평가함
-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지니계수를 0.425477에서 0.425644로 소폭 상승(+0.0393%, 2015년 기준)하여 농가 내부적으로는 소득분배격차가 조금 확대
 - 그러나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한 편
- 어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지니계수를 0.490939에서 0.491094로 소폭 상승(+0.0317%, 2015년 기준)시켜 어가의 소득분배격차가 미소하게 확대
- 한편 전 가구 대상으로 분석범위를 확대하면 동 제도의 적용에 따라 가구소득이 증가하면서 전 가구 지니계수는 0.402969에서 0.402968로 매우 미미하게 소폭 감소(증감률 -0.00013%)

- 농가와 어가 기준으로는 동 제도가 미약하지만 농가와 어가 내부의 소득분배격차를 아주 미소하게 증가시키지만,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대로 매우 미미하지만 지니계수를 조금 낮추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비록 농가·어가 내부에서는 세경감에 따라 격차가 조금 벌어지게 함
 - 그러나 전 가구 중 농가와 어가가 점유하는 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층이 고소득층보다는 중·저소득 구간에 더 집중되어 있음
 - 따라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중·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계층점유비중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농·어의 소득증대 효과가 조금이나마 소득분배격차를 완화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IV-8〉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 조세 감면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5년 지니계수

	농가	어가	전체 가구
지원 전	0.425477	0.490939	0.402969
지원 후	0.425644	0.491094	0.402968
증감률(%)	0.039267	0.031673	-0.000130

주: 농가는 농가경제조사자료, 어가는 어가경제조사자료, 전체 가구는 농가·어가 및 비농어가(가계동향조사자료)를 풀링(pooling)한 경우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임.

마. 정책시사점

- 저출산·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어가 소득 창출방식의 구조조정(예: 대형화, 기업형 경영방식 확산 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농어가 증대라는 정책목적이 일정한 정도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개인의 농업소득 등이 사실상 비과세·면세(사실상 비신고대상)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마저 생산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
- 최소한 소득 관련 정보 등이 축적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소득세 과세로 전환하여 과세정보를 축적하되, 초고소득이나 기업형의 대형 영농·영어방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소득세·법인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게 함으로써 농어가 소득 창출환경의 구조변화를 유도하는 데 상기 정책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소득결정식에 대한 회귀분석결과에 의하면,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농가 또는 어가의 여부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본 결과, 2003년, 2008년에는 농가·어가가 비농어가(주로 도시가구)보다 소득이 낮음
 - 이는 농가·어가 소득증대 정책의 의의, 타당성, 정당성 등을 간접적으로 시사
 - 최근에도 농어가의 소득이 비농어가보다 여전히 작지만,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인적 특성(연령, 가구규모, 학력 등)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를 적절히 통제하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소득격차가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
 - 이는 농가·어가 소득증대 등이 주된 정책목적 중 하나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정책의 효과성이 발휘되어 농어가와 비농어가 사이의 소득격차가 축소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2. 경제적 파급효과 및 재분배 효과

가. 분석 개요

- 본 절에서는 심층평가 대상 제도의 효과성에서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로 인한 법인과세 인하 효과가 국민경제 및 계층별 전반적으로는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해당 제도가 농어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함
 - 법인과세 특례는 산업 간 연관성으로 인해 하나의 제도는 그 제도의 수혜산업뿐 아니라 비수혜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국민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함
 - 평가대상 특례제도를 기타 정책수단과 비교할 때, 만약 수혜대상에 대한 효과가 정책별로 유사할 경우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더 적절한 정책수단을 논할 수도 있음
 - 재분배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특례제도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재분배 효과, 일반소비자의 소득재분배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함
 - 농어민들이 모두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출자자)인 것은 아니어서 해당 법인들에 대한 지원은 조합원인 농어민과 그렇지 않은 농어민 간의 소득 격차를 가져올 수 있음

- 기획재정부의 특례별 소득세·법인세 감면액 합계('16년 실적, '17년 전망, '18년 전망)에 따르면 예상 감면액은, 연간 252억원(영농), 28억원(영어), 185억원(농업회사)(3년 평균)
 - 이 중에서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에서 주종을 이루는 법인세의 조세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농업부문 353억원, 어업부문 22억원으로 375억원임
 - 개별 특례당 조세지출액이 300억원 미만으로 의무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일몰예정인 유사한 조세감면제도의 감면액 합계가 300억원 이상으로 심층평가를 통해 일몰연장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제기
 - 농어업부문의 이러한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은 2017년 농업부문 393억원과 어업부문 23억원, 2018년 농업부문 402억원과 어업부문 24억원으로 다소 증가가 예상

〈표 IV-9〉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원)

조세지출내역		'16년 실적	'17년 전망	'18년 전망	3개년 평균
영농조합법인 (조특§66)	소득세	105	37	21	54
	법인세	200	198	196	198
영어조합법인 (조특§67)	소득세	4	5	6	5
	법인세	22	23	24	23
농업회사법인 (조특§68)	소득세	-	-	-	0
	법인세	153	195	206	18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 (분석자료) 국세청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기본 납세정보를 이용하여 각 법인의 세전이익과 세후이익, 영업이익, 조합원수 등의 세부담 혜택 정보 이용
 - 경제적 파급효과와 재분배 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국세청 납세자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통계청의 『농림어업총조사』의 농어촌 가구별 소득정보를 활용 예정

- 해당 법인의 국세청 납세자료,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등을 이용하여 법인 과세 특례 귀착의 일반균형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과급효과 파악
-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현황은 통계청의 『농어업법인조사』를 이용하여 분석 정리
- 현재 통계청의 『농어업법인조사』는 2014년 기준까지 통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농어업부문에서의 과세특례로 인한 법인세 인하 효과가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예정이며 법인세 인하와 다른 농어업 지원정책을 시행할 경우의 효과 검토
- 『농림어업총조사』에서 제공되는 농어민 가구당 소득을 이용하여 농어민 가구를 소득계층별로 분류하고, 조합가입 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와 과세특례 제도의 농어민, 일반소비자 등에 미치는 재분배 효과 파악
- 법인들의 세부담은 법인들이 부담한 총부담세액의 합계이며 『국세통계연보』에서 가용한 소득지표로 당기순이익, 흑자법인소득, 과세표준에서 과세표준을 이용함
- 국세통계자료에서 과세표준은 세법상 세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세법상 경제적 이익의 개념이며, 흑자법인들의 법인세 차감전 소득에 세무조정으로 조정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 비과세소득, 기타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계산

나. 법인과세 현황 분석

1) 법인세제 변화

- 우리나라 법인세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영리, 비영리)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법인의 형태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은 차이가 있음
 - 영리법인의 경우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지만 비영리법인은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이 과세대상임
 -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원천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임

<표 IV-10> 법인 구분별 과세범위

		각사업연도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모든 소득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과 세	과세
	비영리법인 국가·지자체		비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소득	비과세	과세
	비영리법인		비과세	과세

주: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은 2002년부터 과세, 주택은 2004년부터 과세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7

-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대상의 변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특별부가세제도임
 - 1974년 세제개편으로 도입되었고, 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였음
 - 양도소득은 이미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되므로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음
 - 우리나라는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 지가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부동산 관련 기업의 투기가 감소
 - 법인의 입장에서도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필요성이 낮아짐
 - 기업의 구조조정에 부동산의 매각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부가세의 존재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2002년 세제개편에서 특별부가세가 폐지됨

- 우리나라의 법인과세 제도는 그동안 적용세율·과표구간의 조정하고 법인 구분을 변경
 - 법인 구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일반법인(비공개)·공개법인·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
 - 공개법인은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세법상의 우대를 받음
 - 1982년 세법 개정으로 비공개와 공개법인 간의 구분이 사라짐
 - 대상의 구분도 영리법인·비영리법인·공공법인으로 분류하여 법인의 공개 여부보다 법인의 사업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세율을 적용구분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일반법인(비공개)·공개법인·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달리 적용

- 당시에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세율을 우대
- 1990년도 세법 개정으로 법인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가 사라졌고, 법인은 일반법인과 공공법인으로 구분되어 세율이 적용되었음
- 1997년부터는 공공법인의 구분을 폐지하여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는 등 법인세 세율구조를 단순화함
- 그러나 공공법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한편 다른 조세감면을 할 수 없었으므로 세수 측면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발생시키지는 않는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세율과 과표구간의 꾸준한 조정

- 1971년에는 공개법인의 경우 100만원과 500만원을 기준으로 16%, 20%, 27%의 3단계 초과누진세가 적용되었으나 1974년에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20%, 27%의 2단계로 축소함
- 1980년에는 5천만원으로 과표구간을 인상하고 세율도 25%, 33%로 인상하였지만, 이후 법인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1982년에는 20%, 27%가 적용됨
- 1980년에는 5천만원으로 과표구간을 인상하고 세율도 25%, 33%로 인상하였는데, 이후 법인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되어 1982년에는 20%, 27%가 적용됨
- 1988년에는 세율을 가르는 기준이 8천만원으로 높아짐
- 1990년도부터는 1억원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은 20%, 높은 세율은 34%를 적용하였고, 해당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5 사업연도부터는 13%, 25%가 적용됨
- 해당 세율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5 사업연도부터는 13%, 25%가 적용됨
- 2008년도 세제개편에서 따르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이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세율은 2008년 11%, 2010년 10%로 인하되었는데, 2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법인세율을 22%로 인하
- 2012년부터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3단계로 나누어 2억원 이하 법인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은 20%,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을 적용
- 2018년부터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4단계로 나누어 2억원 이하 법인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법인은 20%, 2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2%, 2,0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됨

<표 IV-11> 법인세율의 변화

	일반(중소)법인	공개(상장)법인	비영리(학교)법인
1971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100만원 이하 16% 1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100만원 이하 20% 1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35%
1974	300만원 이하 20% 300만원 초과 30% 500만원 초과 40%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1975	동일	500만원 초과 20% 500만원 초과 27%	500만원 초과 20(15)% 500만원 초과 27%
1976	동일	500만원 초과 20(25)% 500만원 초과 27(33)%	동일
1978	300만원 이하 20(15)% 300만원 초과 30(25)% 500만원 초과 40(35)%	500만원 초과 20(25)% 500만원 초과 27(35)%	동일
198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이상 40%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5%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1981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이상 38%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2% 5천만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일반법인 (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이상 30(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5%
1988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상 30(33)%	8천만원 초과 20% 8천만원 초과 27%	3억원 이하 10% 3억원 이상 15%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이상 34%		3억원 이하 17% 3억원 이상 25%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2%		3억원 이하 18% 3억원 이상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0%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25%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5%
1997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2001		1억원 이하 15% 1억원 이상 27%	
2005		1억원 이하 13% 1억원 이상 25%	
2008		2억원 이하 11% 2억원 이상 25%	
2009		2억원 이하 11% 2억원 이상 22%	
2010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상 22%	
2012		2억원 이하 10% 2백억원 이하 20% 2백억원 이상 22%	
2018		2억원 이하 10% 2백억원 이하 20% 2백억원 이상 22% 2천억원 이상 25%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각 연도

2) 법인세부담 결정 구조

-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만 다를 뿐 같은 소득과세이므로 법인세의 세금 계산 방식은 소득세와 거의 동일함
 - 법인세의 세금 계산 방식: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

- 먼저 소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소득세에 비해 특별히 복잡한 부분이 소득의 계산임
 - 개념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입 및 비용과 관련한 다수의 조정이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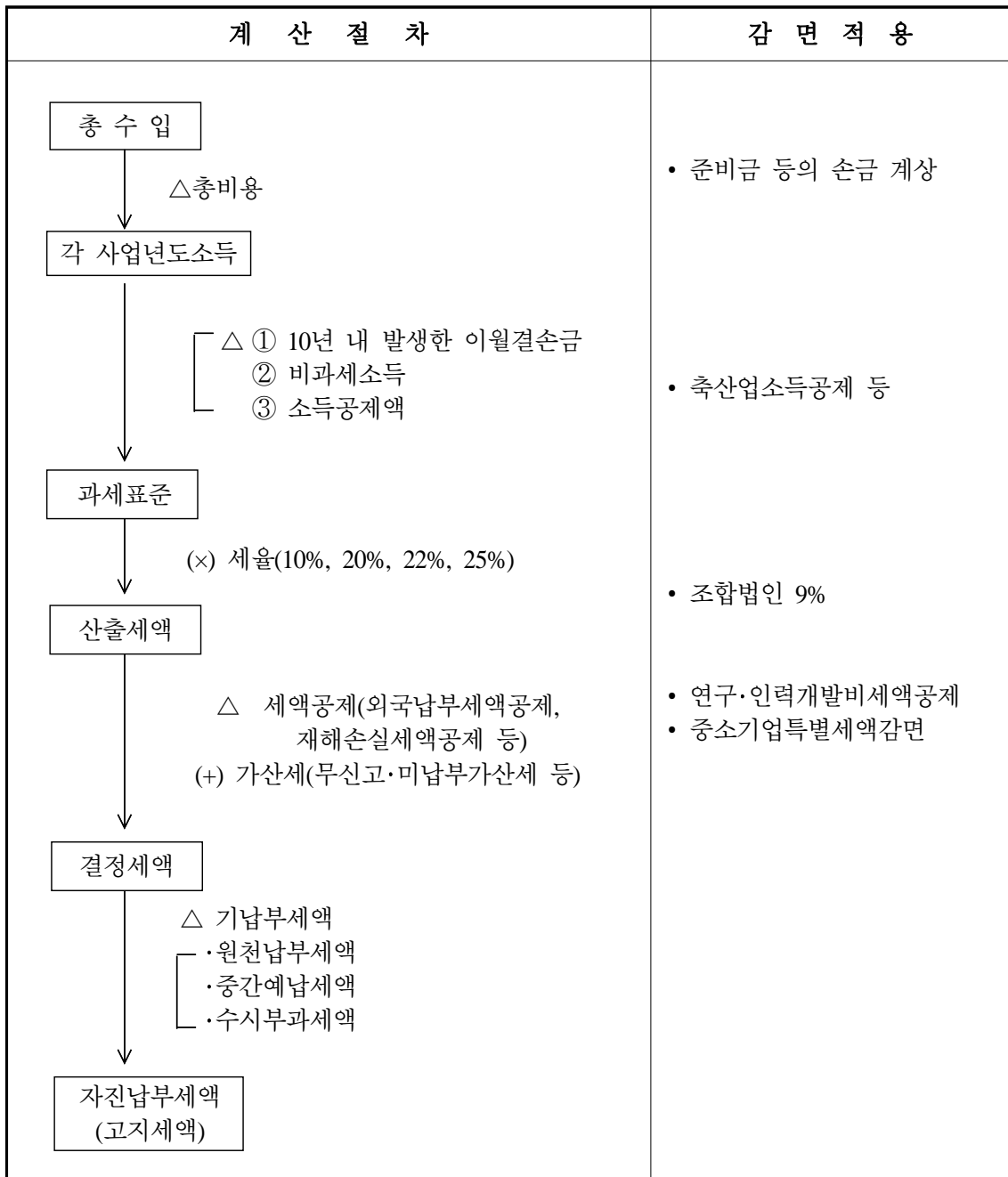
- 국세법에 따르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임(「법인세법」 제14 조①)
 -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뜻하고, 이는 기업회계상 수익과 유사한 개념
 - 손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기업회계상 비용과 같은 개념
 - 그러나 「법인세법」상의 익금 및 손금항목이 기업회계상의 수익 및 비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세무조정: 기업회계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에 대해 익금항목과 손금항목을 가감 조정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

- 결산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확정결산 과정에서 실시하는 것을 뜻함
 - 대표적인 결산조정항목으로는 준비금·감가상각비·충당금·대손금 등이 있으며, 동 항목들은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신고조정은 기업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 사항 중 특정 항목에 대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도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을 뜻함
- 신고조정항목으로는 퇴직보험료 등·법인세비용 손금불산입·기부금 및 접대비 손금불산입 등의 단순신고조정 항목과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이 있음

[그림 IV-8] 법인과세 결정 과정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2017

□ 법인세 결정세액의 산출

- 법인세 과세표준이란 산출된 세무조정에서 산출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10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임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앞에서 살펴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현재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미만은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분은 22%의 세율이 적용됨
- 산출된 과세표준에 앞에서 살펴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동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무신고·미납부가산세 등을 추가하면 법인세 결정세액이 산출됨
-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또는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음

다. 법인과세 파급효과 및 귀착의 이론적 기초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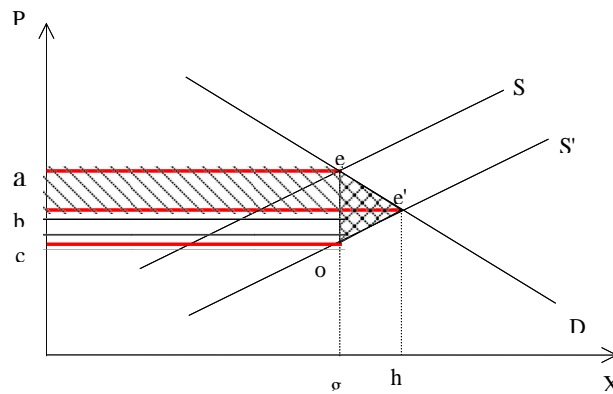
1) 법인세 귀착의 이론적 기초

- 법인세는 일반적으로 자본소득과세의 구성요소로서 자본소득 원천 측면의 가장 중요한 세금으로 해석되며, 즉 시장에서 자본의 수요자에 대한 세금으로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전가됨
 - 법인세의 변화는 시장에서 상품 가격의 변화를 야기하며, 상품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됨
 - 기업에서의 부담은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부담이 분리되며, 궁극적으로는 인건비의 변화와 기업 영업잉여의 변화로 나타남
 - 기업 영업잉여의 변화는 다시 배당되거나 투자 목적으로 유보되는데, 배당과 유보의 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의 영업잉여는 모두 자본의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배당되지 않은 이득은 주가에 반영되어 자본이득 형태의 소득이 됨
 - 예를 들어 특정부문의 법인과세의 감면은 단순히 세수 손실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효율비용(efficiency cost)을 감소시킴

39) 김승래(2006), 김승래·류덕현(20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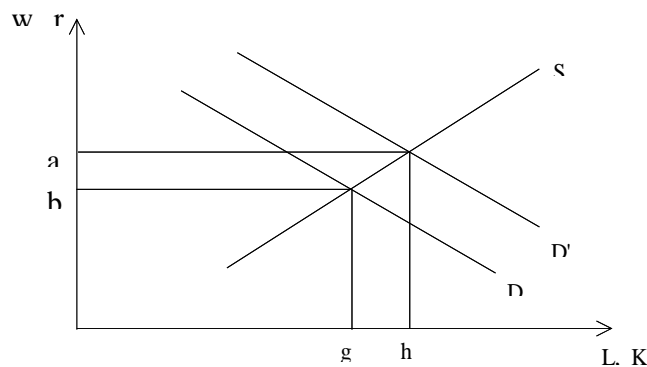
- 이를 이론적으로 상품시장에서의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의 변화로 살펴보면 이른바 하버거 삼각형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 소비자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여 효용이 증가하고, 생산자는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증가하는 형태임
- 따라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경우에는 경제 전반적인 효율 증가로 세수손실보다 더 많은 이득이 나타남
- 상품가격의 변화에 따라 법인의 자본과 노동의 수요가 변동하고 그 가격이 변화함⁴⁰⁾

[그림 IV-9] 법인과세 감면의 경제적 파급 효과



$$\text{세수 손실분}(aeoc) + \text{초과부담 감소}(eoe') = \text{소비자잉여 증가}(aee'b) + \text{생산자잉여 증가}(be'oc)$$

(a) 상품시장 ($S \Rightarrow S'$)



(b) 생산요소시장 ($D \Rightarrow D'$)

자료: 김승래(2006)

40) 영농부문 지원을 위한 법인과세 감면의 경우 영농제품뿐만 아니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여타 상품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파급 효과로 인하여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고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경제 전반의 노동과 자본의 이익인 임금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됨

- 소득 관련 과세의 귀착 분석의 이론적 핵심은 조세와 관련된 생산요소수급의 변화에 있음
 - 부분균형분석에서와 같이 세제개편의 귀착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조세에 의한 관련 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따른 세부담은 소득 형성이라는 소득의 ‘원천 측면’에 있어 노동이나 자본요소에 귀속되는 부분에 단순히 비례하게 됨
 - 생산부분에 있어 업종별로 차별화된 생산원가의 변화에 기인하게 되는 상품별 상대가격 변화를 무시한다면 소득의 ‘사용 측면’에서 세부담의 이동을 포착하지 못하게 됨
 - 기업의 자본요소에 대한 세금으로서 법인소득세의 세부담에 대한 변화는 그 귀착효과는 더욱 복잡함

- 법인세의 귀착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은 Harberger(1962)의 일반균형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론은 기타 모든 조세에도 적용될 수 있음
 - Harberger는 법인세를 경제 내 법인부분의 자본에 대한 부분요소세(가령 τ_{KX} : X부분의 K요소에 대한 조세)라는 점에서 출발하였음
 - Harberger의 모형은 당시 국제경제학자들이 사용하던 일반균형모형을 조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응용한 것임
 - 완전경쟁을 가정하고 두 개의 부문과 두 개의 생산요소가 있는 경제를 상정하여 그 중 한 부문에 고용된 두 가지 생산요소 중 한 가지에 과세할 경우의 상대가격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의 귀착(incidence)을 분석함
 - 이러한 분석은 경제의 법인과 비법인이라는 두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탄력성과 생산요소의 공급과 고용 등에 대한 가정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데, Harberger는 여러 파라미터들을 ‘그럴듯한(plausible)’ 값으로 가정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대체로 자본의 소유주에게 귀착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Harberger의 이 연구는 법인세 귀착과 관련한 어떤 결론보다도 일반균형 상황에서 법인세나 기타 조세를 분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기여가 컸다고 말할 수 있음⁴¹⁾

41) 예를 들어 법인세 인하의 경우 상품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동과 자본을 고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동과 자본의 이익인 임금과 영업잉여가 증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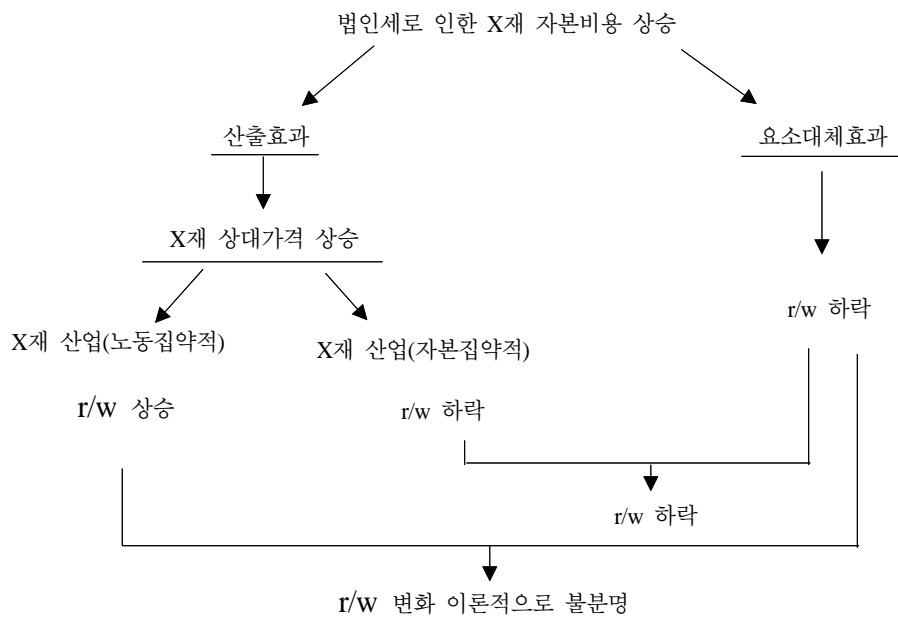
- Harberger의 이론모형은 법인세의 귀착분석뿐 아니라 자원배분 왜곡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며 조세 변화의 산출물 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그 핵심적 요소임
 - 산출물효과는 경제를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등 두 개로 나눈다면 법인세는 법인부문에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같은 자원배분 왜곡효과를 가져오게 됨
 - 상품의 수요자 쪽에서의 한계대체율과 공급자 쪽의 한계변형률의 차이 때문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 요소대체효과는 어떤 기업이 그 조직형태로서 법인형태를 취할 것인가 또는 비법인형태를 취할 것인가의 선택이 법인세로 말미암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임
 - 실제로 법인세는 법인부문의 자본에 대한 과세로서 법인부문과 비법인부문 간에 실제로 부담하는 자본과 노동의 상대가격을 달라지게 하고 이것은 요소집약도의 선택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두 가지 효과가 부분요소세인 법인세가 야기하는 가장 중심적인 왜곡요인으로 작용함
 - 두 가지 효과를 간단히 Harberger 모형에서 경제이론적으로 살펴보면, K 와 L 은 각각 자본과 노동, X 는 법인부문, Y 는 비법인부문, t 는 법인세율, r 과 w 는 각각 자본과 노동의 가격을 나타낸다고 가정함
 - 조세에 의한 왜곡이 없을 경우의 균형점에 비교하여, 먼저 산출물효과는 X 부문에 대한 법인세의 부과로 X 의 가격이 높아져서 이 재화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효과가 나타나고 이 효과만 있다면 균형은 아마도 에지워드상자(Edgeworth box)의 계약곡선(contract curve)상의 다른 점에서 이루어지게 되나, 법인세 때문에 두 부문의 기술적 한계대체율이 다르게 되는 요소대체효과로 말미암아 계약곡선으로부터 벗어난 또 다른 점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됨
 - 요소대체효과는 자본과세라는 부분요소세적인 성격 때문에 법인세는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 모두에서 왜곡을 가져옴

-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노동과 자본의 상대가격 (r/w)에 미치는 영향의 요인
 - X 재 산업의 자본에 부과되는 조세의 귀착 효과는 X 재 산업이 노동집약적이냐 혹은 자본집약적이냐 그리고 요소 간 대체효과에 따라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

- 요인들은 요소 간 상대가격(r/w)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X재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r/w 에 미치는 산출효과가 크게 되며, 이는 X재의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X재 산업에서 Y재 산업으로의 자원재배분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기 때문
- X재 산업과 Y재 산업 간 L/K비율의 격차가 클수록 산출효과가 크고, X재 산업 생산비 중 자본의 비중이 클수록 산업 간 상품의 상대가격의 변화폭이 클 것이므로 산출효과가 커지게 됨
- X재 산업과 Y재 산업에 있어서 생산요소의 대체탄력성이 낮을수록 산출효과는 커지는데, 요소의 대체탄력성이 낮으면 각 산업에서 일정규모의 L/K 변화시에 r/w 변화폭이 크기 때문

[그림 IV-10] 부분요소세의 귀착이론과 실증분석의 필요성



자료: 김승래(2006)

- Harberger의 조세귀착 이론은 McLure와 Mieszkowski 등 여러 경제학자들의 후속 연구에 의해서 더욱 발전함
- Harberger의 모형은 이론적인 분석을 위한 하나의 틀일 뿐 그 자체가 법인세 귀착에 관한 어떤 구체적 수치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이후 Shoven and Whalley(1972, 1975) 등에 의해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

용한 조세의 실증적 일반균형 귀착분석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 단순한 이론적인 모형에서는 모형에서 채택한 가정을 어떻게 완화하는가, 그리고 중요한 구조적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가정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세의 실제 귀착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Harberger 모형을 좀 더 현실적인 모형으로 발전시키고 파라미터들의 추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등 실증적인 분석을 필요로 함⁴²⁾

□ 경제에 단 한 사람만의 소비자가 존재하든, 다수의 소비자가 존재하든 차이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소득처분 측면에서의 귀착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

- X재 산업 자본에 부과되는 조세로 인해 X재 상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므로 X재 구입을 위한 지출이 가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가계일수록 이 조세를 많이 부담함
- 생산요소 공급이 가변적인 경우,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의 변화는 생산요소 공급을 변화시키는데, 노동공급이 가변적일 경우, X재 산업자본에 대한 과세는 r/w 를 하락시켜 노동공급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자본공급을 축소시켜, 이러한 효과는 원래의 r/w 의 하락을 완화시키고 자본가의 조세부담을 낮추게 됨
- 생산요소 공급의 가변성은 조세 변화로 인한 상대가격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반응하여 세후 요소상대가격의 변화를 복잡하게 하는 등, 단순히 Harberger의 이론 모형에서는 법인세부담의 궁극적 귀착효과에 대한 분석은 그 방향마저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생산기술 및 소비에 있어서 대체탄력성, 업종별 생산요소의 상대적 집약도 등 주요 계수에 대한 당해 경제의 실제 통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필요로 함

□ 법인세는 일차적으로 주주 또는 자본 소유자에게 귀착되지만 상품 소비자나 노동 공급자에게 일부 전가될 수 있어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 전가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함

42) 세부담의 귀착 효과를 분석하는 어떠한 이론적·실증적 모형도 그 모형의 구조나 가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는 각종 문헌에서 아직도 여타 세목과는 달리 법인세 부담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전가되고 귀착되는가에 대하여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이다.

- 부문 간 요소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 부담이 전가 가능하며 법인세 부과는 법인의 생산비용 및 상품가격 상승으로 전가되어 비법인부문이 생산한 상품으로 수요를 이동시키고 자본비용 상승과 자본수요 감소를 통한 요소대체 효과로 자본수익률의 하락을 가져옴
 - 동시에 노동과 자본의 불완전한 대체로 인한 산출량 변화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법인부문이 생산하는 상품가격의 상승은 상품의 소비자에게 전가됨
- 세부담의 궁극적인 귀착은 법인/비법인 부문의 요소집약도, 상품 수요의 가격탄력성, 요소 간 대체 탄력성, 자본공급의 이자율 탄력성, 자본수익률, 기업의 경쟁 정도에 따라 달라짐
- 자본의 공급탄력성이 비탄력적인(주로 단기) 경우에는 주주에게 법인세 부담이 귀착되지만 완전 탄력적인(주로 장기) 경우에는 노동자와 소비자에 부담이 귀착됨
 -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이전보다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짐
 - 자본공급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노동의 공급자와 상품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상품수요 가격탄력성이 작을수록, 요소 간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기업이 경쟁적일수록 노동자나 소비자에 대한 전가의 효과가 약화됨

2) 법인세 귀착의 기존 문헌

- M. Kryzaniak and R. Musgrave(1963)은 거시패널자료를 이용하여 Harberger 이론을 검증, 미국 제조업의 경우 법인세 부담은 세전 이윤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상품가격을 올려 100% 이상 소비자에게로 전가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들 연구는 수요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분석모형구조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비판이 있었음
- Gordon(1967)은 Harberger(1962)와 마찬가지로 완전경쟁과 1차 동차 생산함수 가정을 이용, 미국 제조업의 경우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M. Kryzaniak and R. Musgrave의 연구 결과와 상반됨

- Jorgenson, Dale W. & Kun-Young Yun(1993)은 미국의 경우 법인세의 초과부담이 다른 세목에 매우 더욱 큰 것으로 조사함
- Sebold(1975)는 단기에 제조업체에서는 법인세의 전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함
- McLure and Thirsk(1975), Bhatia(1982), Ballentine and Eris(1975)은 Harberger(1962)의 연구를 보다 정교화함
- Shoven & Whalley(1984), Kotlikoff & Summers(1987)는 추정된 파라미터에 따라 법인세 부담의 전가정도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함
- Herman et al.(1996)은 법인세 부담이 법인부문에서 비법인부문으로 자본이동을 발생시켜 비법인부문에 법인세가 전가되나 법인세가 자본소유자의 이윤의 35%를 감소시켜 자본소유자에게도 상당부분이 귀착된다고 주장함
- 이신일(1998)은- Krzyaniak and Musgrave의 모형을 근거로 산업별 전가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제조업은 35~270%, 건설업은 50~303%, 서비스업은 22~196%로 나타나 Krzyaniak and Musgrave(1963)과 마찬가지로 산업에 따라 상이하기는 하나 소비자에게 완전전가 혹은 과잉전가된다는 결론을 도출함
- 전영준(2003)은 세대중첩 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인하가 성장 및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법인세 폐지에 따른 소득계층별 효과에 따르면 법인세 폐지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하며 현행 법인세제가 저소득층의 후생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봄
- 지해명(2003)은 CGE 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 인하가 성장 및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법인세 인하가 수도권외 노동수요를 단기에는 0.03%, 중기에는 0.03~0.04%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법인세 인하가 노동수요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쳐 중장기적으로 법인세 인하가 노동자에게도 혜택을 주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고, 부가가치세의 인하는 수도권외의 경우 1.17~1.18%의 상대적으로 큰 노동수요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부가가치세 인하가 소득세나 법인세 인하보다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생산, 소득, 고용 등 모든 부문에서 균등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다른 세목의 인하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김성태 외(2003)는 미국 Ballard et al.(1985)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한 KOCGE모형을 이용하여 법인세율을 10% 인하하고 세수감소분만큼 이전지출을 줄일 경우 후생, 소득분배, 노동 및 저축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법인세율 인하는 적어도 단기적(일시적)으로는 고소득층·대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시간에 따라 그 효율 증진 효과가 노동 등 기타 요소들에 충분히 전가되어 장기적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경제에 매우 긍정적일 수 있음

□ 김승래(2006)는 최근 한국경제의 다부문·다소득계층·다세대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법인세 등 조세체계 개편의 생애주기 차원의 세부담 귀착효과를 추정

- 우리나라에서 법인세제 등 자본과세로부터 소비과세로 세원을 점진적으로 이동하면, 경제 전반의 동태적 효율성 향상(dynamic efficiency gains)을 통하여 대다수 경제주체의 생애후생이 증진
- 일반적인 단기적 인식과는 달리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동일세대 내의 계층 간 수직성 형평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함

□ 김승래·류덕현(2010)은 동태적 CGE모형을 이용하여 2008~2012년 추진 중인 이명박 정부의 5%p 규모의 법인세 감세(안)의 경제성장(GDP)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동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법인세의 적자감세는 향후 “보완조치의 수단이나 실행시기와는 상관없이” 모든 시나리오에 걸쳐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법인세 감세는 향후 정부의 이전지출 축소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2~3% 정도 촉진하고 GDP를 0.4~1.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향후 재정운용의 여건상 정부지출의 축소가 용이하지 않게 되어 보완증세(across-the-board tax increase)가 필요하다면 소득세보다는 소비세를 통한 증세 방식이 중장기 성장잠재력의 확충 측면에서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음

라. 분석모형의 설정

- 본 분석에서는 한국경제에서 법인세 부담 변화의 경제주체별 귀착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김승래·전영준·김진영(2015)에 나타난 Harberger-Shoven-Whalley형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함⁴³⁾
 - Harberger(1961), Shoven and Whalley(1984) 또는 Piggott and Whalley(1985)형의 일반균형모형을 한국경제에 적용한 모형으로서 주요 업종별 경제를 한국은행의 2012년 「산업연관표」의 대분류인 28개 산업부문과 통계청의 2015년 「가계동향조사자료」에 의거하여 연간소득 기준의 소득 수준별 10분위로 구분하고, 주요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나눔
- 이러한 분석모형의 기본 원리는 근본적으로 신고전파의 Arrow and Debreu(1954)의 일반균형 이론에 기초함
 - 경제 내의 생산자는 기술적 제약하에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예산제약하에 각자의 효용을 극대화함
 - 균형조건은 상품시장,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 완전히 청산되며, 기업은 균형에서 영(zero)의 정상이윤을 가지고, 가계와 정부는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는 조건을 만족한다고 가정함
- 농림어업 등 전체 경제의 산업별($i = 1, \dots, 28$)로 생산자는 노동 L_i 와 자본 K_i 이라는 본원적 생산요소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업종별 부가가치 Y_i 를 생산함
 - 업종별 부가가치는 불변대체탄력성(constant elasticity of substitution, CES) 생산함수로 구성됨

43) 이러한 모형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승래(2006) 또는 김승래·전영준·김진영(2015)을 참조할 수 있음

$$Y_i = \phi_i \left[\delta_i L_i^{\frac{\sigma_i-1}{\sigma_i}} + (1-\delta_i) K_i^{\frac{\sigma_i-1}{\sigma_i}} \right]^{\frac{\sigma_i}{\sigma_i-1}}$$

단, $i = 1, \dots, 28$

Y_i : 업종 i 의 부가가치

ϕ_i : 스케일 파라미터

δ_i : 분배 파라미터

K_i, L_i : 자본 및 노동 요소투입량

σ_i : 요소대체탄력성

- 업종별 본원적 투입요소인 노동과 자본에 대한 조건부 요소수요함수는 위 식의 생산함수하에서 비용극소화 조건을 통해 도출할 수 있음

$$L_i = \phi_i^{-1} Y_i \left[\delta_i + (1-\delta_i) \left\{ \frac{\delta_i P_K}{(1-\delta_i) P_L} \right\}^{1-\sigma_i} \right]^{\frac{\sigma_i}{1-\sigma_i}}$$

$$K_i = \phi_i^{-1} Y_i \left[\delta_i \left\{ \frac{(1-\delta_i) P_L}{\delta_i P_K} \right\}^{1-\sigma_i} + (1-\delta_i) \right]^{\frac{\sigma_i}{1-\sigma_i}}$$

단, P_L, P_K : 노동 및 자본의 세후 요소가격

- 각각의 업종별 기업의 총산출 X_i 은 위의 부가가치 Y_i 와 기타 j 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입물 X_{ij} 들을 이용하여, 각각의 업종별 생산기술 제약과 주어진 산출물가격 P_i 하에 다음과 같이 이윤 Π_i 을 극대화하도록 생산을 결정함
- 여기서 중간투입물들 간, 그리고 중간투입과 본원적 투입요소 간에 Leontief 고정계수를 가정해야 함

$$\max \Pi_i = P_i X_i - P_L L_i - P_K K_i - \sum_j P_j X_{ij}$$

- 경제의 10개의 소득계층별($h = 1, \dots, 10$) 효용함수는 다음의 CES함수로 나타냄

$$U_h = \left[\sum_i a_{ih}^c \cdot X_{ih}^{\frac{\sigma_c}{\sigma_c-1}} \right]^{\frac{\sigma_c-1}{\sigma_c}}$$

단, X_i^c : 대표적 소비자 h 가 소비하는 재화(i)의 수량

a_i^c : CES효용함수의 대체탄력성

- 그러면 소비자 예산제약 $\sum_i P_i X_i^c \leq P_L W_L^c + P_K W_K^c = I^c$ (단, P_i : 최종소비자가격, W_L^c, W_K^c : 소비자의 노동, 자본 요소부존, I^c : 소비자의 소득)하에 위 식의 소비자그룹별로 효용 극대화를 통해 소비자의 여러 가지 상품별 최종 수요 X_i^c 을 도출할 수 있음

$$X_{ih}^c = \frac{\sigma_i^c I_h^c}{P_i^{\sigma_i^c} \left(\sum_i \alpha_i^c P_i^{(1-\sigma_i^c)} \right)}$$

- 이상의 생산요소시장과 생산물시장의 균형조건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일치, 산업별 영(0)의 이윤 조건(zero profit conditions)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제의 일반균형으로서 연립방정식 체계를 구성함
- 본 연구의 정부부문 역할은 정부예산수지를 통한 모형의 종결(closure)과 관련됨
- 여기서 정부의 여러 가지 광범위한 활동들 중에 본 분석에서는 정부의 세제개편 관련 정책 변화에 의한 경제주체별 세부담의 귀착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정부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세입과 세출을 중심으로 단순화하기로 함

$$\sum_j \tau_{Lj} p_L L_j + \sum_j \tau_{Kj} p_K K_j + \sum_j \tau_{Yj} p_j X_{ij} + \sum_i \tau_{Ci} p_i C_i = \sum_i p_{Gi} G_i + \sum_h TR_h$$

- 위 식의 좌변은 각각 노동관련세, 자본관련세, 판매세, 소비세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각종 세수입을 의미
 - 정부의 수입은 우변에서와 같이 정부의 부문별 지출이나 민간 이전지출을 포함하는 재정지출에 사용된다고 가정함
- 조세체계 개편에 대한 일반균형 분석의 목적은 주로 조세의 부과, 전가 및 귀착으로 인한 상품별 자원배분의 변화와 소비자별 후생변화의 파악에 있음
-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각종 경제활동으로 인한 생산과 소비의 양에 초점이 맞춰지고,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가계동향조사자료 등의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CGE분석 모형을 구축하여야 함
 - 모형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분석경제의 중간부문 간의 거래를 포함하는 업종별 투입과 산출부문, 그리고 소비자그룹별 다양한 상품별 수요부문으로 구성함

- 모형 보정을 통해 조세체계의 조정 시 소비, 생산, 정부 등의 각 부문의 상호 작용과 환류효과라는 정책 변화의 직간접 파급효과를 반영
- 모형분석은 현재 경제가 기준상태에서 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하고 기준균형(benchmark equilibrium)을 구한 후에, 법인세의 개편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의 새로운 균형(counterfactual equilibrium)을 계산하고 이러한 두 가지 균형을 서로 비교하여 경제적 효율 변화나 소득재분배 등 소비자그룹별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파악함

1) 법인과세 감면 효과의 파급과정

- 농어업부문 법인과세의 감면에 따른 파급효과는 세수 손실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의 효율비용을 감소시킴
 - 소비자는 농어업부문 법인과세의 감면에 따라 파급되는 산업 전반의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여 효용이 증가하고, 생산자는 더 많은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증가하는 형태
 - 법인과세 감면으로 인한 경제 전반적인 효율 증가로 세수손실보다 더 많은 이득이 나타나게 됨
 - 이러한 상품가격의 변화에 따라 법인의 자본과 노동의 수요가 변동, 그 가격이 변화함

- 가령 Harberger(1962)의 이론 모형에서와 같이 한국경제에서 농어업 등 일부 산업의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소비자, 종업원, 주주, 정부 등 경제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분산되게 됨
 - 농어업부문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노동 및 자본 소유자에 대한 요소수익률 개선을 통한 실질소득 증가(소득효과)와 상품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력 증가를 통한 소비자잉여(가격효과)로 해석 가능함
 - 이러한 특정부문의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통한 세제개편의 귀착효과는 단순히 기업단계의 기업의 수익 자체에 대한 직접적 효과와 더불어 그 세부담 경감의 혜택이 소비와 생산의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파급됨
 - 즉 법인과세라는 기업단계의 세부담 변화의 귀착은 단순히 기업의 수익 자체에 대한 효과가 아니라 노동자, 자본가, 주주, 소비자 등 경제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파급되어 분산됨

2) 업종별 세부담 및 실효세율 분포

□ 국세청의 국세통계자료에 나타난 업태별 법인세 현황 및 세부담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5년 기준으로 법인세의 총부담세액의 합계는 39.8조원에서 농림어업 10,495개 법인들이 760억원, 제조업 130,432개 법인들이 16.7조원, 도매업 117,967개 법인들이 3.7조원, 운수창고통신업 32,439개 법인들이 1.1조원, 금융보험업 23,042개 법인들이 7.9조원, 서비스업 120,940개 법인들이 3.3조원으로 전체 법인세수의 구성에서 각각 0.2%, 42.0%, 9.2%, 2.9%, 19.9%, 8.2%를 차지하고 있음
-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소매업, 부동산업 등의 업태별 전체 법인세수 기여도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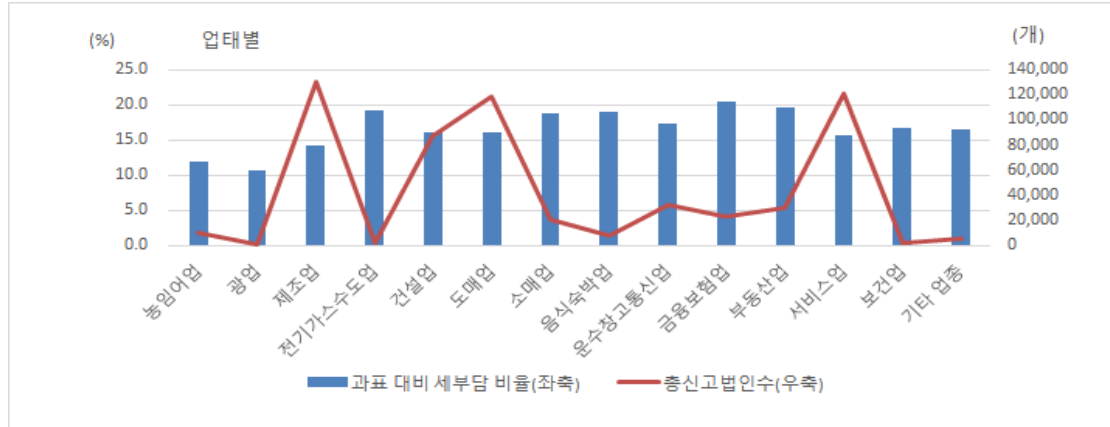
<표 IV-12> 기업 업태별 법인세 현황 및 세부담 분포

(단위: 개, 백만원, 2015년)

업태별	총신고 법인수	수입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총부담세액	세수 구성 비중
합계	591,694	4,468,472,742	274,581,731	247,368,711	39,770,375	1
농림어업	10,495	12,587,345	808,086	638,082	76,050	0.0019
광업	969	5,507,305	1,124,712	1,100,952	118,219	0.0030
제조업	130,432	1,779,607,921	122,896,638	117,579,098	16,716,332	0.4203
전기가스수도업	2,452	170,354,266	8,315,085	5,523,686	1,059,736	0.0266
건설업	87,091	418,818,170	22,205,614	18,732,970	3,020,314	0.0759
도매업	117,967	620,873,711	23,935,104	22,751,837	3,672,571	0.0923
소매업	20,397	171,686,426	7,909,587	7,532,683	1,405,436	0.0353
음식숙박업	7,752	31,411,123	1,666,036	1,553,837	295,202	0.0074
운수창고통신업	32,439	201,361,332	8,801,491	6,633,666	1,141,043	0.0287
금융보험업	23,042	697,146,961	45,445,845	38,864,778	7,943,854	0.1997
부동산업	30,024	56,075,630	7,212,540	4,872,857	956,122	0.0240
서비스업	120,940	268,280,850	23,358,537	21,035,241	3,273,789	0.0823
보건업	1,910	33,492,005	786,993	448,803	75,097	0.0019
기타 업종	5,784	1,269,697	115,463	100,221	16,610	0.00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자료, 2017

[그림 IV-11] 업종별 법인세 현황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자료, 2017

□ 2016년 국세통계자료에 나타난 법인들 중에서 일반기업 및 중소기업의 업태별 법인세 현황 및 세부담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법인은 업태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도매업의 각각 12만 5,839개, 11만 5,476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법인세의 총부담세액 7.8조원에서 세수구성은 각각 44.1%, 22.8%를 차지하고 있음

<표 IV-13> 업태별 법인세 부담: 일반기업 vs 중소기업

(단위: 개, 백만원, 2015년)

업태별	전체기업		일반기업		중소기업	
	법인수	총부담세액	법인수	총부담세액	법인수	총부담세액
합계	591,694	39,770,375	112,369	31,949,119	479,325	7,821,256
농림어업	10,495	76,050	1,568	32,420	8,927	43,630
광업	969	118,219	34	93,593	935	24,626
제조업	130,432	16,716,332	4,593	13,265,704	125,839	3,450,628
전기가스수도업	2,452	1,059,736	685	1,053,580	1,767	6,156
건설업	87,091	3,020,314	3,386	1,864,767	83,705	1,155,547
도매업	117,967	3,672,571	2,491	1,891,814	115,476	1,780,757
소매업	20,397	1,405,436	4,891	1,240,512	15,506	164,924
음식숙박업	7,752	295,202	1,882	233,366	5,870	61,836
운수창고통신업	32,439	1,141,043	10,282	846,256	22,157	294,787
금융보험업	23,042	7,943,854	20,874	7,933,004	2,168	10,850
부동산업	30,024	956,122	19,244	833,623	10,780	122,499
서비스업	120,940	3,273,789	35,974	2,596,567	84,966	677,222
보건업	1,910	75,097	734	47,414	1,176	27,683
기타 업종	5,784	16,610	5,731	16,499	53	111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자료, 2017

- 그다음으로 건설업, 서비스업 등이 각각 14.8%, 8.6%로 업태별 전체 법인세수 기여도 높은 편임

<표 IV-14> 농어업부문 법인세 조세특례의 업종별 실효세율 변화

(단위: 백만원, %, 2015년)

업태별	과세표준	법인세 부담총액		실효세율		
		변화 전	변화 후	변화 전	변화 후	차이
합계	247,368,711	39,810,942	39,770,375	16.09	16.08	-0.02
농림어업	638,082	116,617	76,050	18.28	11.92	-6.36
광업	1,100,952	118,219	118,219	10.74	10.74	0.00
제조업	117,579,098	16,716,332	16,716,332	14.22	14.22	0.00
전기가스수도업	5,523,686	1,059,736	1,059,736	19.19	19.19	0.00
건설업	18,732,970	3,020,314	3,020,314	16.12	16.12	0.00
도매업	22,751,837	3,672,571	3,672,571	16.14	16.14	0.00
소매업	7,532,683	1,405,436	1,405,436	18.66	18.66	0.00
음식숙박업	1,553,837	295,202	295,202	19.00	19.00	0.00
운수창고통신업	6,633,666	1,141,043	1,141,043	17.20	17.20	0.00
금융보험업	38,864,778	7,943,854	7,943,854	20.44	20.44	0.00
부동산업	4,872,857	956,122	956,122	19.62	19.62	0.00
서비스업	21,035,241	3,273,789	3,273,789	15.56	15.56	0.00
기타업	549,024	91,707	91,707	16.70	16.70	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7; 기획재정부, 2018

마. 심층평가 대상의 파급효과 및 재분배 효과

□ 여기서는 김승래·전영준·김진영(2015)에 나타난 Harberber-Shoven-Whalley형 일반 균형분석을 이용하여 심층평가 대상 제도의 효과성에서 농어업부문에 대한 조세 특례로 인한 법인과세 인하 효과가 국민경제 및 계층별 전반적으로는 어떠한 파급효과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해당 제도가 농어업부문에 미치는 효과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함

- 법인과세 특례는 산업 간 연관성으로 인해 하나의 제도는 그 제도의 수혜산업 뿐 아니라 비수혜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가져오므로 이러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모두 포함하는 국민경제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도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

○ 평가대상 특례제도를 기타 정책수단과 비교할 때, 만약 수혜대상에 대한 효과가 정책별로 유사할 경우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더 적절한 정책수단을 논할 수도 있음

□ 농어업부문의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에 따른 기업부문의 세부담 완화는 2016~2018년 최근 3개년 평균 406억원의 조세지출이 예상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어 개인에게 혜택이 전가되므로 법적 귀착이 아닌 경제적 귀착(economic incidence)의 개념을 이용하여 수직적 형평성 관점에서 동 제도가 소득계층별로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여기서 농어업부문의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에 따른 업종별 세부담 체계의 변화는 기업의 생산행위와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직간접 파급효과를 발생시킴

○ 2015년 기준으로 농어업부문의 법인세 관련 조세특례제도가 없는 기준상태의 균형을 먼저 계산하고, 이러한 제도 시행에 따른 새로운 균형을 계산하여 이를 서로 비교하여 경제주체별로 경제적 효율 변화나 소득재분배 등 소득계층별 파급효과를 추정함

<표 IV-15> 농어업부문 법인세 조세특례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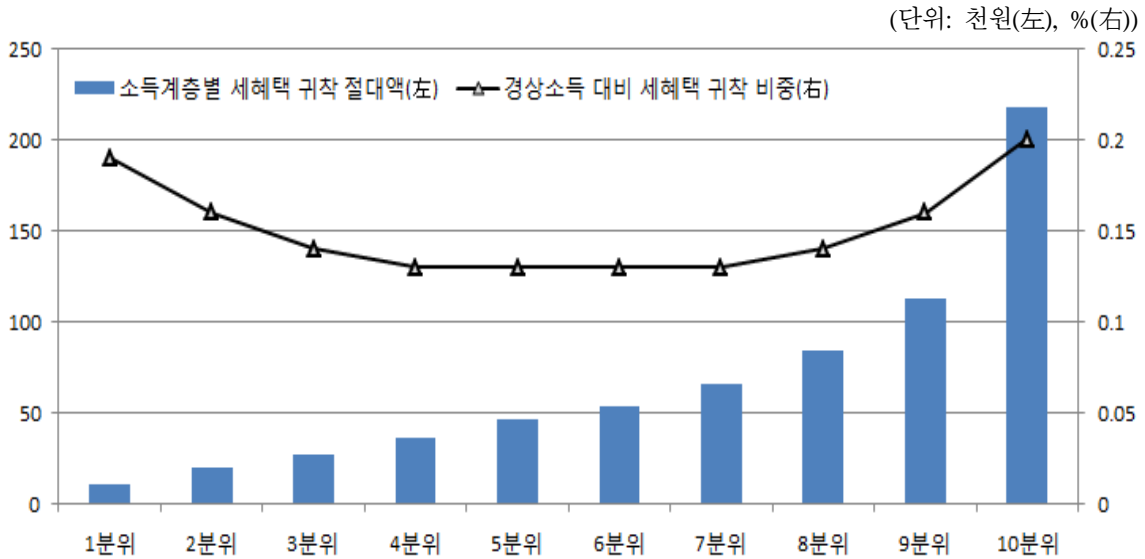
(단위: 천원, 2015년 기준)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경상소득	5,333	11,723	18,616	25,871	33,024	40,228	47,821	56,795	69,875	105,673	
근로소득	569	3,055	8,661	13,829	19,280	25,330	30,800	37,522	50,034	78,611	
비근로소득	4,764	8,668	9,955	12,042	13,744	14,898	17,021	19,274	19,842	27,063	
혜택 귀착	절대액	10.4	19.9	27.1	35.7	46.0	54.0	65.6	83.7	112.3	217.6
	소득 대비 비중(%)	0.19	0.16	0.14	0.13	0.13	0.13	0.13	0.14	0.16	0.20
	상대비	0.15	0.30	0.40	0.53	0.68	0.80	0.98	1.25	1.67	3.24
	지니계수 변화	0.0217%(감면 전 0.37933 → 감면 후 0.37941)									
	5분위 배수 변화	0.0104%(감면 전 10.2921 → 감면 후 10.2932)									

주: 여기서 '세혜택 귀착'은 농어업부문 조세특례에 따른 법인세 실효세율 하락으로 소비자부문에 궁극적으로 귀착되는 소득계층별 후생증진을 의미하며, '소득 대비 비중'은 경상소득 기준 % 비중, '상대비'는 전체 계층의 평균 세부담 귀착 대비 각 분위별 세부담 귀착의 배율; '지니계수'는 경상소득 기준, '5분위 배수'는 소득 최상위 20% 평균소득의 소득 최하위 20% 평균소득에 대한 배율

자료: 저자 계산

[그림 IV-12] 농어업부문 법인세 조세특례의 소득계층별 귀착효과 그래프



자료: 저자 계산

- 본 분석에서 가정한 농어업부문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라 2016~2018년 최근 3개년 평균 406억원의 조세지출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소득 10분위별 세부담의 일반균형적 귀착 효과와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농어업부문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직간접 과급효과를 포함한 소득분위별 후생 증가를 살펴보면 2015년 연간기준으로 소득 1분위 약 1.04만원, 소득 5분위 4.6만원, 소득 10분위 21.7만원으로 전체 평균 약 6.7만원 정도의 혜택이 예상되어 소득계층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과급효과를 보여줌
 - 또한 소득계층별 세혜택의 귀착효과를 소득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U자형으로 저소득층에서는 누진적이고 중산층에서는 비례적으로 작용하여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이거나, 고소득층에서는 다소 역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를 소득분위 전체에 대하여 종합하면 농어업부문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계수는 2015년 경상소득 기준으로 0.0217% 정도, 5분위 배수는 0.0104% 정도 증가하나 그 변화의 크기는 매우 미약하여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는 대체로 중립적으로 평가됨

V.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V. 종합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1. 종합평가결과

타당성 분석

- (산업여건) 저출산·인구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어가 소득 창출방식의 구조조정(예: 대형화, 기업형 경영방식 확산 등)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라는 정책목적이 일정한 정도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그렇지만 그 실효성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며, 세제지원보다는 재정지원이 농업인들의 행태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농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느냐가 불안할 정도로 열악한 여건인 농업인이 많다는 점에서 흑자규모가 클수록 효과가 큰 조세지출보다는 영업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정지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함

- (재무정보 확보) 농어업부문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보가 제대로 축적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제공을 통해 회계의 투명성 제고에도 일부 기여
 - 개인의 농업소득 등이 사실상 비과세·면세(사실상 비신고대상)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세정보마저 생산되지 않는 것은 큰 문제

- ‘시장의 실패’ 측면에서 정부 개입의 기본적인 정당성 존재
 -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교정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

- (시장의 실패 1: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함에도 시장에서는 이를 구현하지 못함
 - 인구구조(인구 감소 및 노령화)의 악화로 인해 소규모 영세농어업 방식 지속
 - 고령화 및 가족농의 경지 제약 등으로 현대식 장비를 이용하기에도 상대적으로 제약이 커서 산업의 효율성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여건

- (시장의 실패 2: 정보 비대칭) 농어업 생산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결기반이 미흡하여 시장의 실패 발생
 - 생산자의 유통 경험이나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여 이를 활용한 유통단계의 높은 마진이 지속됨
 -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가 모두 사회적으로 극대화되기 어려운 상황

- (수단의 적절성) 조세특례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지원정책으로 규제정책에 비해 비효율성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인정됨
 - 정부가 개입하는 수단(지원정책)을 크게 경제적 유인과 규제로 구분할 경우, 조세특례제도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지원정책에 해당
 - 조세특례제도는 정책대상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제약조건을 조정하여 사회후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대상자들이 행태를 변화하도록 경제적 유인 제공
 - 한편, 규제정책에는 인허가 제도나 쿼터제, 배분·배급제 등이 있으며, 자원배분의 원칙(한계효용=한계비용)이 실제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초래

- (수준의 적정성) 일부 논의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은 없으며, 그간의 개정을 통해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을 비교적 잘 교정해 옴
 - 개인사업자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의 감면한도가 절대적인 수치상 다소 낮은 측면이 있지만 수입 수준이 이질적인 농업인들이 연합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 오히려 이득인 측면도 함께 존재
 -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비하여 혜택의 수준이 낮다는 비판도 있지만, 산업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방적으로 어업부문이 혜택을 적게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유사중복성) 농어업법인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는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뿐이라는 점에서 조세지출상의 중복성 이슈는 눈에 띄지 않음
 - 재정사업 중 농업법인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으나 이는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와 서로 중복된다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효과성 분석(미시분석)

- 한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이 농가소득에 미친 효과를 모의실험으로 추정한 결과, 조세감면액은 농가 가구당 평균 49,589원으로 추정
 - 농가경제조사자료의 농가 가구수,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규모 추정액을 이용하여 조세감면액이 모두 농가에 배분된다는 전제하에 추정

- 소득계층별로는, 농가 1분위가 가구당 평균 4,338원, 4분위 20,344원, 7분위 38,661원, 9분위 59,085원으로 증가하다가 10분위는 229,249원으로 급격히 증가
 - 전반적으로 농가 내부적으로는 소득계층이 상승할수록 조세감면액이 누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
 - 이는 저소득농가에 비해 고소득농가가 상대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에 관여하면서 취득하는 금전적 세금경감혜택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함
 - 소득세 등의 누진과세 체계를 감안할 때 고소득층일수록 소득세 한계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경감액도 누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런 현상이 관찰되는 것으로 추정

- 소득증대 효과를 농가 기준에서 전 가구(도시가구 및 1인 가구 포함) 기준으로 확대하여 추정할 경우, 가구당 평균수혜금액은 2,314원 수준
 - 농가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분류하였을 때보다 전 가구 대상으로 분류할 때 10분위의 수혜비중이 일부 완화
 - 농가 대상 10분위 46.2% → 전 가구 대상 10분위 37.7%

- 조세특례제도로 인한 지니계수의 변화는 매우 작은 수준이나 농가만을 놓고 보면 소폭 상승하고 전 가구를 대상으로 보면 미세하게 감소
 - 농업부문 내에서는 감면제도로 소득격차가 미미하게 확대
 - 그러나 전체 가구에서 농업부문은 주로 중·저소득 구간에 더 집중되어 있어 전체 가구에서의 소득격차는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로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결과를 보임

효과성 분석(거시분석)

-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각 산업의 전후방효과를 반영한 소득계층별 소비자별 후생변화 분석결과, 직간접 파급효과를 포함한 소득분위별 후생 증가를 살펴보면 2015년 연간기준으로 소득 1분위 약 1.04만원, 소득 5분위 4.6만원, 소득 10분위 21.7만원으로 전체 평균 약 6.7만원 정도의 혜택 예상
 - 소득계층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보여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세혜택의 귀착효과를 소득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U자형으로 저소득층에서는 누진적, 중산층에서는 비례적으로 작용하여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이나 고소득층에서는 다소 역진적임

- 또한, 농어업부문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Gini계수는 2015년 경상소득 기준으로 0.0217% 정도, 5분위 배수는 0.0104% 정도 증가하나 그 변화의 크기는 매우 미약하여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는 대체로 중립적으로 평가됨
 - 미시분석에서는 전체 가구를 고려할 경우 Gini 계수가 미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시분석에서는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분석 접근법의 차이에서 발생한 결과이며, 두 분석 결과 모두 매우 미미한 변화만이 나타났다는 점을 볼 때, 실제 국민경제에서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실상 중립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⁴⁴⁾

- 조세특례제도로 인해 농어업부문의 법인세가 감면됨으로써 해당 부문의 세부담률도 변화
 - 농림어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조세특례제도가 없었다면 18.3% 수준이었을 것이나 조세특례제도로 인하여 11.9%까지 6%p 이상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음
 - 전 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에서는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0.02%p 감소하는 수준에 머무름

44) 미시분석에서는 전체 가구들 중 농어업부문의 가구만이 제도로 소득이 바뀌는 것을 가정하여 계산하였고, 거시분석에서는 동 제도로 인해 다른 산업까지 파급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부문의 가구들의 소득에도 영향을 미침을 일정한 가정 아래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가정에 따라 충분히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양쪽 접근법 모두 그 결과로 나타난 변화분이 매우 작다는 데에 오히려 그 정책적 함의를 찾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보인다.

종합평가결과

- 종합적으로 볼 때, 조세특례제도의 시행은 ‘시장의 실패’가 유지되는 한 당분간 계속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됨
 -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의 타당성이나 효과성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동 지원정책은 당분간 지속할 필요성이 인정됨
 - 농어가의 고령화 및 소규모 영세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지원이 계속될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

- 정책 시행기간은 농어촌 지역의 고령영농·영어가의 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하락하여 시장의 실패 현상이 수면 아래로 축소되는 시점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시점에서 위의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인구고령화와 장수화 경향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은 동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
 - 동 정책의 일몰 전환 또는 연장 여부는 동 정책의 비가역성·가역성 여부에 의존
 - 다만, 현재 시점에서 비가역성 여부에 대한 검증은 정보, 이론 및 분석모형상의 문제로 인해 분석이 어려운 실정
 - 비슷한 상황에 있는 영어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정책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 다만,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최저 출자 기준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설립요건을 조세특례제도에서 다룰 수는 없으므로 농업인의 혜택을 위해서 조세특례제도상에서는 농업인의 출자율에 따라 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 경우, 명목상의 농업인 출자율이 실제 농업인의 경영참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임

2.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 타당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평가한 내용으로는 제도의 유지가 적절할 것이라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제도의 내용 중 일부는 조정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가장 큰 부분은 감면혜택의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영농조합법인의 감면수준과 농업회사의 농업인 출자비율에 따른 차등지원이 대표적으로 논의할 만한 주제로 판단됨

-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감면수준은 영농조합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농업인 1인당 감면한도 측면에서 더 혜택이 낮음
 - 기타 작물 재배업 소득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나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어 1인당 감면한도는 영농조합법인이 더 낮음
 - 농가부업소득의 경우도 개인사업자는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1,200만원 한도로 감면한도가 더 낮음

- 이러한 감면한도의 차이는 제Ⅲ장의 제3절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1인당 평균적인 개념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 더 혜택이 낮지만 수입금액 수준이 이질적인 농업인들이 결합하여 법인을 만들 경우에는 혜택이 더 커질 수도 있음
 - 수입금액 수준이 이질적인 경우, 혜택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쪽은 수입금액이 개인한도인 10억원을 넘는 농업인임
 - 수입금액이 6억~10억원 사이에 있는 농업인은 조합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그 조합의 총수입금액과 조합원 수에 따라 혜택이 개인사업으로 할 때보다 더 줄어들 수 있음
 - 수입금액 6억원 이하의 농업인은 개인사업자로 영농을 하거나 조합법인으로 전환을 하거나 세제혜택상으로는 무차별함

- 따라서 현재의 감면범위는 정책입안자의 정책목적에 따라 향후 조정될 여지가 있음

-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혜택이 감소하는 사례를 아예 배제하고자 한다면 영농조합의 소득별 감면한도를 조정하여 개인과 동일한 수준까지 올릴 필요가 있음
 - 반면, 대규모 경작을 하는 농업인이 소규모 경작을 하는 농업인과 결합하여 조합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한다면 현재 방식의 감면한도 설정이 더 적절함
- 한편, 농업회사법인의 기타소득 중 시행령(「조특령」 제65조 제2항)에서 지정한 농업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세액감면과 동일한 감면방식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 축산업·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함
 - 이는 시행령에서 지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조특법」 제6조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업종에 유통업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농업과 관련된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등을 모두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임
- 그렇지만 현재의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 중 비농업인이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서 비농업인 위주의 기업에 대해서도 농업과 관련되었다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음
- 현재 농업회사법인은 총출자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농업인이 10% 이상을 의무출자해야 하며, 총출자액이 8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농업인이 8억원 이상을 의무출자해야 함
 - 총출자액이 8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율이 90%를 넘을 수 있음
 - 비농업인의 출자율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일반 유통업체와 실질적인 차이를 논하기 어려운 상황임
 - 농업인의 경영에 대한 혜택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조특법」 제68조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농업인의 출자 참여율이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농업인의 출자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야 세제혜택을 제공하거나, 농업인의 출자율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조정하는 등의 차등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실제 제도를 개정하려면 두 가지 측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하나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제한을 지금의 수준으로 완화한 것은 비농업인의 농업에의 투자를 보다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만큼 차등적 세제혜택을 적용할 출자 기준을 얼마나 정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 세제혜택을 위한 농업인의 출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을 경우, 비농업인의 투자가 위축될 소지가 있음
 - 다른 하나는 농업인의 출자율 조정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게 될지에 대한 의문임
 - 소위 바지사장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우회하여 출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차등적 세제혜택을 새로 적용하여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이외에도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수준의 적절성 등이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제1장의 조세지출 규모를 참고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혜택은 평가대상 조세특례제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낮아 보임

참고문헌

- 곽태원, 『법인소득 과세의 이론과 현실 - 국내외 연구성과 개관』, 한국조세연구원, 2005. 8.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조세개요』, 각 연도.
- 김성태·이인실·안종범·이상돈, 「한국 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 5월 제3호, 1999.
- 김승래, 『한국의 조세·재정정책 평가 모형: 조세의 일반균형 귀착효과』, 연구보고서 06-16, 한국조세연구원, 2006. 12.
- 김승래·류덕현,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연구보고서 10-04, 한국조세연구원, 2010. 12.
- 김승래·전영준·김진영, 「효율성-형평성 간 상충관계를 고려한 최적 조세조합」, 『경제학연구』, 제63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2015.3.
- 나성린·현진권, 『조세 및 사회부조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3.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2017.
- 대한민국 정부, 『2018년도 성과계획서』, 2017.
- 대한민국 정부, 『2018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7.
- _____,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6.
- _____, 『2016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5.
- _____, 『201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4.
- _____,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3.
- _____, 『201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2.
- _____,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1.
- _____,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10.
- 박기백·김진, 『법인세 부담연구 - 미시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4.
- 손원익·송은주·홍성열,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 13-1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윤충식·장태희·강지현, 『조세특례제한법 해설과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7.
 이신일, 「한국의 법인소득세 전가에 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13집 제1호, 1998.
 이준구·이상영,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경제논집』, 1996.
 이진순, 『재정학』, 조세통람사, 1990.
 이태호·이명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구 - 해외 사례 및 효과성 평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 2016.

Ballard, C.L., D. Fullerton, J. B. Shoven, and J. Whalley, *A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Tax Policy Evalua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BMEL, *Statistisches Jahrbuch über Ernährung und Landwirtschaft*, 2017.

Dammholz, G., 'Passt das Kleid?: Rechtsformwahl für landwirtschaftliche Unternehmen, Neue Landwirtschaft(2011/3), 2011, pp. 18~21.

Edmark, K and Gordon, R, "The choice of organizational form by closely-held firms in Sweden: tax versus non-tax determinant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ume 22, Number 1, 2013, pp. 219~243.

Fullerton, D., "Which Effective Tax Rate?," *National Tax Journal*, Vol. 37, pp. 23~41, 1984.

Fullerton, D. and G.E. Metcalf, "Tax Incidence," in A.J. Auerbach and M.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ic Economics*, Vol.4, 2002, pp. 1788~1872.

Fullerton, D. and D.L. Rogers,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3.

Gordon, R. H. and Y. Lee, "Do Taxes Affect Corporate Debt Policy? Evidence from U.S. Corporate Tax Return Data,"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82, 2011, pp. 195~224.

Harberger, A.C.,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1962.

Krzyzaniak. M. and R.A. Musgrave., *The Shifting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hns Hopkins Press, Baltimore, 1963.

Kotlikoff, L.J, and L.H. Summers, "Tax Incidence," In: A.J. Auerbach and M. Feldstein eds., *Handbook of Pubic Economics*, Vol.2, 1987, pp. 1043~1092.

McLure, C.E. Jr., "General Equilibrium Incidence Analysis: The Harberger Model After Ten Yea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 1975, pp. 125~161.

Quirnbach, H.C., C.W. Swenson, and C.C. Vines, “An Experimental Examination of General Equilibrium Tax Incidenc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61, 1996, pp. 337~358.

Rüdiger W., Ester-Maria P., *Rechtsformen landwirtschaftlicher Unternehmen*, a.i.d., 2014.

Sebold, F.D., “The Short-Run Shifting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A Simultaneous Equation Approach,”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1(3), 1979, pp. 401~409.

Shoven, J.B. and J. Whalley,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s of Taxa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n Introduction and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2, 1984, pp. 1007~1051.

Van Der Veen, H., et al., “Exploring agricultural taxation in Europe,” *LEI*, 2007.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농림축산식품부, www.mafra.go.kr

독일연방 농식품부,

<https://www.bmel-statistik.de/landwirtschaft/testbetriebsnetz/testbetriebsnetz-landwirtschaft-buchfuehrungsergebnisse/archiv-buchfuehrungsergebnisse-landwirtschaft/buchfuehrungsergebnisse-landwirtschaft-201617/>

독일연방법무부, <https://www.gesetze-im-internet.de/estg/BJNR010050934.html>

위키피디아(독일어), <https://www.wikipedia.de/>

야마구치현 지역 농업 전략 추진협의회, <http://y-ninaite.jp/>

영국 정부, <https://www.gov.uk/>

유럽연합 통계청 연감, <http://ec.europa.eu/eurostat/web/agriculture>

인베스트피아, <https://www.investopedia.com/terms/a/annual-investment-allowance-aia.asp>

일본 총무성 통계국, <https://www.e-stat.go.jp/>

일본 농림수산성, <http://www.maff.go.jp/>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

후쿠이현 지방정부, <http://www.pref.fukui.lg.jp/>

Coop FR, <https://www.entreprises.coop/>

Hawsons Chartered Accountants, <https://www.hawsons.co.uk/tax-opportunities-for-uk-farmers/>

